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국제협정 체결·비준시 국회 동의 대상 및
기준에 대한 연구
-관세·무역협정 위주로-

정명운 · 조소영

KLRI



한국법제연구원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국제협정 체결·비준시 국회 동의 대상 및 기준에 대한 연구 - 관세·무역협정 위주로 -

Study on the subjects and standards of National Assembly
consent to the conclusion and ratification of International
agreements

연구책임자 : 정명운(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Jung, Myong-Un

공동연구자 : 조소영(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Cho, So-Young

2019. 11. 15.

연구진

연구책임	정명운	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공동연구(원외)	조소영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심의회원	강승식	원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기평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류지성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연구협의(자문)위원	이재곤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정문식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진곤	광운대학교	교수
	허진성	대전대학교	교수
	이진수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연구보조원	이수진	부산대학교	법학석사

요 약 문

I. 배경 및 목적

- ▶ 국제경제질서에서의 보호무역주의 대두 및 WTO 체제 약화 등으로 인해 타국가와 다양한 형태의 관세·무역협정 추진 필요성 증대 및 가시화
 - 신시장 개척을 위한 필요성의 상존으로 인해 대상국가별로 구분이 가능한 관세·무역협정 추진 가능성에 대한 법적 검토 필요
 - 광범위한 FTA 추진 필요성이 낮은 국가를 상대방으로 하는 범위를 한정된 관세·무역협정 추진에 관한 검토 필요
 - 헌법 제60조 제1항 상의 중대한 재정적 부담 또는 입법적 사항에 관한 조약의 해당 여부를 어떻게 판단해야 할 것인가에 관한 정리된 해석 필요

- ▶ 국회 동의를 필요한 국제조약의 구체적 기준 분석·연구를 통한 헌법적 절차 준수가 필요한 국제협약의 대상 기준 확립의 필요성
 - 헌법 제60조 제1항에 규정한 국회의 동의 대상에 관한 헌법적 해석 정리
 - 국제경제질서의 흐름 속에서 FTA 체결 및 국가적 차원의 다양한 형태의 관세·무역협정 추진 및 체결에 있어 절차적 위헌성 시비의 위험성을 제거하기 위한 해석적 연구 필요
 -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정의 및 판단 기준·범위가 모호하여 정리된 해석이 필요

▶ 이미 체결된 국제협정의 국내 효력발생절차 및 국회 동의 여부(사유) 등에 관한 분석적 연구의 필요성

- 이미 체결된 여러 국제협정 목록별 국내 수용 절차 및 국회 동의 유무 분류
- 기존 관세·무역협정과 유사한 국제협정 등의 국회 동의 유무 분석

II. 주요 내용

▶ **헌법 제60조 제1항의 국회 동의권 대상조약의 범위: 규범적 접근**

- 헌법 제60조 제1항의 해석적 구조
 - 새로운 유형의 조약류의 등장에 따른 다양한 국제조약의 유형들을 분류
 - 국회의 동의를 요하는 조약의 범위 검토
 - 조약이 국내법적 효력을 갖기 위한 절차적 요건 검토
-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조약의 범위
 - 헌법 제60조 제1항에 규정된 국회 동의 대상 중 해석이 필요한 조약 분류
 -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의 해석과 사례
 -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해석과 사례

▶ **관세·무역협정 체결과 국회 동의 관행 검토: 구체적 사안 분석**

- 관세·무역 관련 조약 체결 현황 및 국회동의 관행
 - 관세·무역 관련 조약 체결 현황
 - 관세·무역 관련 조약 체결·비준에 대한 국회동의 관행 및 기준 수립을 위한 시사점

- 국제법적 분석과 문제점
 - 조약의 정의 문제
 - 조약체결의 국내법 절차
- 관세·무역 관련 조약 체결·비준시 국회 동의 대상 여부에 관한 심사기준 검토
 - 기 체결 조약의 국회 동의 요부 결과 분석
 - 국회 동의 대상 여부에 관한 심사기준 검토

Ⅲ. 기대효과

- 헌법 제60조 제1항의 적용대상 여부를 심사하기 위한 기준 정립에 관한 헌법적·국제법적 해석론의 정리에 기한 관련부처의 참고자료로 활용
 - 기존 관세·무역협정과 유사 국제협정 등의 목록 정리 및 국회 동의 요부에 관한 사유 분석을 통한 경험적 평가 자료의 구축
- ▶ 주제어 : 헌법 제60조 제1항, 조약 체결에 대한 국회의 동의권,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 관세·무역협정

Abstract

I. Backgrounds and Purposes

- ▶ Increasing and visualizing the necessity of promoting various forms of customs and trade agreements with other countries due to the rise of protectionism in the international economic order and the weakening of the WTO system.
 - Due to the necessity of developing new markets, it is necessary to review the possibility of implementing customs and trade agreements that can be distinguished by target countries.
 - Need to review the implementation of a limited scope of customs and trade agreements targeting countries with low need for broader FTAs
 - A need for a concise interpretation of how to determine whether a treaty on significant financial burdens or legislative matters under Article 60 (1) of the Constitution is applicable
- ▶ Necessity of establishing target standards of international agreements that need to comply with constitutional procedures through analysis and study of specific standards of international treaties requiring parliamentary consent
 - Constitutional interpretation of the subjects of parliamentary consent provided for in Article 60, paragraph 1 of the Constitution
 - Analytical research is needed to eliminate the risk of procedural unconstitutionality in the conclusion of FTAs and various forms of customs and trade agreements at the national level in the flow of international economic order

- Ambiguous interpretation of the definition, criteria and scope of “a treaty or legislation on legislation that places a significant financial burden on the state or people” is necessary
- ▶ Necessity of an analytical study on the domestic validity procedure of the international agreement already concluded and whether the National Assembly agrees (reason)
 - Classification of Domestic Acceptance Procedures and National Assembly Consent by List of International Agreements
 - Analysis of National Assembly's agreement such as international agreement similar to existing customs and trade agreement

II. Major Content

- ▶ The scope of treaty entitled to consent to parliament under Article 60 (1) of the Constitution: normative approach
 - Interpretive structure of Article 60, paragraph 1 of the Constitution
 - Classify various types of international treaties as new types of treaties emerge;
 - Review the scope of treaties requiring congressional consent;
 - Review the procedural requirements for the treaty to have national legal effect
 - Scope of treaties requiring parliamentary consent
 - Classification of treaties to be interpreted among the subjects of parliamentary consent provided for in Article 60 (1) of the Constitution

- Interpretation and example of a treaty that places a significant financial burden on the country or its people
- Interpretations and examples of the Treaty on Legislation

► Conclusion of Customs and Trade Agreements and National Assembly Agreements:
Analysis of Specific Issues

- Customs and Trade Treaty Agreements and National Assembly Building Practices
 - Agreement on Customs and Trade
 - Implications for Establishing Practices and Standards of the National Assembly on the Signing and Ratification of Customs and Trade Treaties
- International legal analysis and problems
 - Definition of the Treaty
 - Domestic legal procedures for the conclusion of treaties;
- Review of examination criteria on whether to agree with the National Assembly when entering into and ratifying treaties related to customs and trade
 - Analysis of the results of the National Assembly's consent of the existing treaty
 - Review of examination criteria on whether or not to be approved by the National Assembly

III. Expected Effects

- Used as a reference for relevant ministries for the purpose of arranging constitutional and international legal interpretations on the establishment of criteria for examining the application of Article 60 (1) of the Constitution

- Establishment of empirical evaluation data by organizing lists of existing customs and trade agreements and similar international agreements and analyzing the reasons for consent of the National Assembly

- ▶ **Key Words** : Article 60(1) of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Treaties which will burden the State or people with an important financial obligation, Treaties related to legislative matters, Approval power of the National Assembly to the Treaty-Making, Customs-Trade Agreement

목차

국제협정 체결비준시 국회 동의 대상 및
기준에 대한 연구
- 관세무역협정 위주로 -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요 약 문 5
Abstract 9

제1장 서론 / 15

I.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17
1. 연구 목적 17
2. 연구 필요성 18
II. 연구의 범위와 방법 20
1. 연구의 범위 20
2. 선행연구 현황 및 선행연구와 본연구의 차별성 21
3. 연구 방법 22

제2장 헌법 제60조 제1항의 국회동의권 대상조약의 범위 / 25

I. 序說 27
II. 헌법 제60조 제1항의 해석적 구조 29
1. 조약의 분류 29
2. 국회의 동의를 요하는 조약의 범위 30
III.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조약의 범위 33
1. 범위 해석을 위한 규정내용 분류 33
2.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의 해석과 사례 34
3.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해석과 사례 39
IV. 결론 43

목차

국제협정 체결비준시 국회 동의 대상 및
기준에 대한 연구
- 관세·무역협정 위주로 -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제3장 관세·무역협정 체결과 국회동의 관행 검토 / 47

- I. 서 론 49
- II. 관세·무역관련 조약 체결 현황 및 국회동의 관행 51
 - 1. 관세·무역관련 조약 체결 현황 51
 - 2. 관세·무역관련 분야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국회동의 관행 및
기준 수립을 위한 시사점 52
- III. 국제법적 분석과 문제점 70
 - 1. 조약의 정의 문제 70
 - 2. 조약체결의 국내법 절차 74
- IV. 관세·무역관련 국제협정 체결비준시 국회 동의 대상 여부에 관한 심사 기준 77
 - 1. 기 체결 조약의 국회 동의 요부 결과에 대한 분석 77
 - 2. 국회 동의 대상 여부에 관한 심사기준 검토 78

제4장 결 론 / 85

- 〈참고문헌〉 95
- 〈부 록〉 101

제1장 서론

I.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II. 연구의 범위와 방법

제1장 서론

I.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1. 연구 목적

우리 헌법은 합헌적으로 체결·공포된 조약에 의하여 국민의 권리와 의무가 규율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그 체결 및 비준에 대하여 엄격하고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다. 헌법 제73조에서는 조약의 체결·비준권을 국가를 대표하는 대통령이 행사하도록 하고, 헌법 제89조 제3호에서는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해서는 반드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으며, 헌법 제60조 제1항에서는 일정 범위의 조약에 대하여는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 헌법이 조약의 체결·비준권을 대통령에게 부여하면서 중요한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국회에게 준 것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 의한 통제권을 인정함으로써 대통령의 적정한 권한행사를 도모하여 합리적인 국가의사가 형성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이다).

국제관계의 긴밀화 또는 세계화·개방화의 진전에 따라 국가간 또는 국가와 국제기구간의 정치·경제·사회·문화적 협력이 질적·양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체결·비준되는 조약이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²⁾ 조약의 형식이 아닌 이른바

1) 이상훈, 헌법 제60조 제1항에 대한 고찰, 국제법 동향과 실무 제2권 제3호(2003), 93면.

2) 이상훈, 헌법상 조약의 법적 성격에 대한 고찰, 법제논단(2003. 10)(<http://www.moleg.go.kr/knowledge/publication/monthlyPublicationSrch?mpbLegPstSeq=130466>)

고시류 조약을 비롯한 관세·무역협정 등 여러 유형의 협정들까지도 다수 존재하고 있는 게 지금의 현실이다. 때문에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조약 등의 범위가 무엇인가를 검토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라고 할 것이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이 연구는 헌법 제60조 제1항에서, 국회는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중요한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 우호통상항해조약,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강화조약,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고 규정하였는데, 이 헌법 제60조에 명시된 국회의 동의대상 중 해석이 필요한 대상으로서의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및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해당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구체적 기준을 정립할 수 있을 것인가를 연구하기 위한 것이다. 국제협정에 대한 국회 동의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함으로써, 국제경제질서의 변화 속에서 우리나라가 대응해야 할 다양한 형태의 관세·무역협정 등의 국제협정을 헌법에 합치되는 절차 속에서 체계적으로 추진·검토할 수 있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2. 연구 필요성

(1) 국제경제질서에서의 보호무역주의 대두 및 WTO 체제 약화 등으로 인해 타국가와의 FTA체결 뿐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관세·무역협정 추진 필요성 증대 및 가시화

먼저 신시장 개척을 위한 필요성의 상존으로 인해 대상국가별로 구분이 가능한 관세·무역협정 추진 가능성에 대한 법적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변화하고 있는 국제경제질서에서 FTA는 시장개방과 자유교역을 위한 초국가적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대외적으로는 체결조건과 방식을 놓고 당사국 간에 치열한 경쟁과 대립·갈등과 불협화음에 대한 진정의 필요성을 발생시키고, 대내적으로는 FTA 체결의 효과에 직간접적으로 관련성을 갖는 이해 당사자 간에 심각한 갈등과 분열을 촉발함으로써 대내외적인 갈등과 대립을 가져오게 된다³⁾. 때문에 FTA 추진은 상대국가에 따라 구분될 필요가 있다는 점에

3) 조소영, 한미 FTA에 대한 헌법적 쟁점의 검토, 공법학연구 제8권 제3호(2017), 6면.

서, 광범위한 FTA 추진 필요성이 낮은 국가를 상대방으로 하는 ‘범위를 한정된 관세·무역협정 추진’에 관한 검토가 필요하다.

실제로 4.27 판문점 선언에 대한 국회 비준 동의 여부가 쟁점적 사항으로 논란이 되고 있듯이, 헌법 제60조 제1항 상의 중대한 재정적 부담 또는 입법적 사항에 관한 조약의 해당 여부를 어떻게 판단해야 할 것인가는 정리된 해석론이 필요한 국가현안 관련 사항이라는 점에서, 당해 연구는 진행되어야 할 필요성이 크다.

(2) 헌법(제60조)에 따른 국회 동의가 필요한 국제조약의 구체적 기준 분석·연구를 통한 헌법적 절차 준수가 필요한 국제협약의 대상 기준 확립의 필요성

헌법 제60조 제1항에서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중요한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 우호통상항해조약,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강화조약,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비준시 국회의 동의권을 규정하고 있으나, 상술된 경우와 달리 해석을 필요로 하는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정의 및 판단 기준·범위가 모호하여 정리된 해석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국제경제질서의 흐름 속에서 FTA 체결 및 국가적 차원의 다양한 형태의 관세·무역협정 추진하고 그 체결을 함에 있어서 절차적 위헌성 시비의 위험성을 제거하기 위한 해석적 연구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3) 이미 체결된 국제협정의 국내 효력발생절차 및 국회 동의 여부(사유) 등에 관한 분석적 연구의 필요성

이미 체결된 여러 국제협정 목록별 국내 수용 절차 및 국회 동의 유무를 분류하고, 기존 관세·무역협정과 유사한 국제협정 등의 국회 동의 유무에 대해서도 분석하며, 기존의 국회 미동의 국제협정 리스트를 마련하여 미동의 사유 등을 분석해 봄으로써, 조약 등에 대한 국회의 통제권의 범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II. 연구의 범위와 방법

1. 연구의 범위

(1) 규범적 접근: 헌법 제60조 제1항에 명시된 국회 동의권의 대상이 되는 조약범위에 대한 해석론 정리 및 분석

헌법 제60조 제1항에 규정된 국회의 동의권의 대상이 되는 조약의 종류 중 헌법 규정만으로는 불완전하여 형성적 해석이 필요한 부분인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에 관한 다양한 해석론의 비교검토를 통한 분석을 전개하였다. 그리고 규범적 해석론은 전공영역적 입장이 다를 수 있다는 인식 하에 헌법 제60조 제1항의 관련 부분에 대한 헌법적 해석론과 국제법적 해석론을 비교하여 살펴보고, 해당되는 해석론적 결과들을 조화롭게 정리해 보고자 하였다.

(2) 구체적 사안 분석: 기 체결된 국제협정의 국내수용절차 및 국회 동의 여부 분석

실제 해당되는 국제협정들로 이미 체결된 국제협정들을 2000년을 기준으로 하여 전수 조사를 위한 목록을 정리하고, 관련 자료를 통한 국제협정의 국내 수용 절차 및 국회 동의 여부 결과를 분석해 보았다. 특히 기존의 관세·무역협정과 유사 국제협정 목록을 정리하고 조사하여 각 협정에 대한 국회의 동의 적용 여부 및 그 사유를 분석하기 위해 노력했으며, 국회의 동의를 받지 않았던 국제협정 목록을 정리하여 그 사유 등을 분석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3) 헌법(제60조)에 따른 국회 동의를 필요한 조약의 구체적 기준 분석·연구

상술한 규범적 접근과 구체적 사안 분석을 통해서, 헌법 제60조 제1항에 규정된 내용 중 국회 동의 대상으로서의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에서 ‘중대한 재정적 부담’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구체적 기준과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에서 ‘입법사항’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구체적인 기준 등을 정립해 보기 위해 노력하였다.

2. 선행연구 현황 및 선행연구와 본연구의 차별성

구 분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연구목적	연구방법	주요연구내용
주요 선행 연구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제명: 대통령의 조약 체결·비준권과 이에 대한 국회의 동의권(헌법 제60조 제1항의 해석) - 연구년도: 2006 - 연구목적: 대통령과 국회 간의 권한배분을 배경으로 하는 현실적, 규범적 긴장관계를 검토하고자 함 	헌정사적 고찰 및 관련 자료 비교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약에 대한 국회의 동의권의 성격 및 효과 - 국회의 비준대상이 되는 조약: 조약의 종류에 따른 검토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제명: 헌법상의 외교권한 배분과 구체화 입법의 헌법적 한계 - 조약체결에 있어서 의회 참여권을 중심으로 - 연구년도: 2007 - 연구목적: 한국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외교권한 배분질서를 규명함으로써 조약체결에의 국회 참여권한을 구체화하는 입법의 헌법 허용가능성과 한계검토 	헌법상 외교 권한의 배분에 관한 규정인 제6조 제1항, 제60조 제1항, 제 73조, 제 89조의 헌법해석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교권한 특히 조약체결권한의 배분에 대한 헌법 해석의 문제 - 동의제도의 본질상 조약체결·비준에 대한 국회의 동의권한의 의의와 한계 - 조약체결에 대한 의회의 참여권을 구체화하는 입법의 헌법적 한계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제명: 조약체결에 관한 권한배분구조의 해석과 국회의 권한 	헌법 관련 규정에 대한 국회의 실질적 심사권 실현이라는 기준에서의 해석론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약체결권의 합수적 권력성 - 헌법상 대통령의 조약체결·비준권의 재해석

구 분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연구목적	연구방법	주요연구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년도: 2016 - 연구목적: 민주적 조약체결절차 확보 및 조약체결과정에서의 입법기능 실현을 위한 국회동의권의 범위 확장을 위한 검토 	전개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주적 조약체결절차의 확보를 위한 국회의 입법기능 회복
본 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협정 체결·비준시 국회 동의 대상 및 기준에 대한 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 체결된 국제협약 리스트 정리 - 관련된 헌법 및 국제법적 해석론의 조화적 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헌법 제60조 제1항 전체에 대한 검토가 아니라 ‘국가나 국민에 대한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및 입법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 - 기 체결된 국제협약 리스트 정리 및 분석을 통한 국회의 동의권 대상성 판단을 위한 기준 분석 및 정리노력 	

3. 연구 방법

(1) 이미 체결된 국제협약(관세·무역협정 중심) 목록 검색 및 정리

헌법 제60조 제1항 규정내용 중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이나 입법사항”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이미 체결된 국제협약들을 2000년 이후에 체결된 것들로 한정하여 검색하고 그 목록을 정리하였다. 특히 본 연구주제와 관련하여 기존 관세·무역협정을 비롯한 유사 국제협정 등의 목록을 검색하여 정리하였다.

(2) 헌법 제60조 제1항 규정의 적용범위와 관련된 해석론 비교검토를 위한 문헌 연구

헌법 제60조 제1항에 규정된 국회 동의권의 대상이 되는 조약의 분류와 국회 동의권의 법적 성격, 그리고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과 ‘입법사항’을 요하는 조약이 무엇인가에 관한 헌법적 시각에서의 관련 문헌 내용을 분석하고 국제법적 시각에서의 관련 문헌 내용을 분석하여 정리하였다.

(3) 연구대상으로서의 국제협약 목록 정리를 통한 국회 동의 여부 및 각 사유 분석에 관한 재검토 방법으로서의 관련 전문가와의 면담, 자문 및 교류

해당 연구주제에 관한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집하고 이를 바탕으로 면담 및 자문요청을 통한 검토적 의견교류를 진행했을 뿐만 아니라, 관련 부처와 기관 담당자 및 사이트 방문(법제처, 상임위, 법제연구원 등)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도 담아내기 위해 노력하였다.

제2장

헌법 제60조 제1항의

● 국회동의권 대상조약의 범위

I. 序說

II. 헌법 제60조 제1항의 해석적 구조

III.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조약의 범위

IV. 結 論

제2장

헌법 제60조 제1항의 국회동의권 대상조약의 범위

I. 序 說

조약이란 국가 간에 국제법상의 일정한 권리와 의무에 관해서 합의·약속한 사항을 정리 기록한 외교문서의 일종이다. 조약이 국내법적 효력을 갖기 위해서는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되어야 하는데, 그것은 조약의 체결·공포절차가 합헌적이어야 할 뿐 아니라 조약의 내용도 헌법에 위배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⁴⁾을 의미한다. 우리 헌법은 국제사회 내에서의 조약이 가지는 큰 의미는 물론이고, 헌법이 규정하는 일정한 조약은 국회가 제정한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된다는 점을 감안하여 조약의 체결·비준·동의에 관한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다⁵⁾. 즉 조약체결·비준권은 국가를 대표하는 대통령이 행사하지만⁶⁾ 반드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치도록 했으며⁷⁾ 특히 중요한 사항에 관한 조약을 체결·비준하는 데에는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⁸⁾하였다.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국회의 동의권은 1948년 헌법 이후로 현행 헌법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동일하게 헌법규정으로 유지되어 온 것으로서, 비록 조약의 체결·비준권이 대외적으로는 대통령에 의한 집행작용이지만 동시에 그 행위가 국가전체의 의사결정작용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 의한 통제를 규정함으로써 대통령의

4) 헌재 1998.11.26, 97헌바65, 판례집 10-2, 685(699면).

5) 조소영, 앞의 논문, 8면.

6) 헌법 제73조.

7) 헌법 제89조 3호.

8) 헌법 제60조 제1항.

헌법에 합치되는 적정한 권한행사를 도모하기 위한 뜻으로 해석)된다.

우리나라는 정부 수립 이래 다른 나라들과 경제·사회·문화·군사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조약을 체결해 왔다. 정부 수립 후 2018년 12월까지 우리나라가 체결·발효한 조약은 총 3,291건(양자 2,584건, 다자 707건)인데, 이 중 1960년 이전 13년간 발효된 조약은 102건(양자 66건, 다자 36건)에 불과한 반면 2011~2018년까지 8년 간 발효된 조약은 544건(양자 451건, 다자 93건)으로 2000년대 들어 조약 체결 건수가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이한 점은 일반 국민의 생활과 관련된 조약의 체결 건수가 증가 추세에 있다는 점으로, 특히 자유무역협정(FTA), 이종과세방지협정, 사회보장 협정, 투자보장협정, 형사사법 공조 및 범죄인인도조약 등의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때문에 국민의 생활과 관련이 되는 이러한 조약들의 체결 내용은 물론이고 그 과정에 대한 검토와 분석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정부수립 이후 조약체결건수 추세(발효기준)>¹⁰⁾

연도	48~60	61~70	71~80	81~90	91~00	01~10	11~18	소계
조약 체결 건수	102 (36)	292 (63)	422 (93)	445 (116)	666 (135)	820 (171)	544 (93)	3,291 (707)

※()는 다자조약

아래에서는 우선 헌법 제60조 제1항에 관한 헌법적·국제법적 해석을 정리하고, 그 해석을 전제로 국제협정 체결·비준시 국회 동의 대상 및 그 판단 기준에 대하여 논의한 후, 기 체결된 각종 관세·무역협정들의 대상 여부에 대하여 검토를 전개해 보기로 하겠다.

9) 이상훈, 헌법 제60조 제1항에 대한 고찰. 국제법 동향과 실무 제2권 3호(2003. 7), 93면.

10) 2018.12.31 기준, 외교부 조약과 게시 자료(http://www.mofa.go.kr/www/wpge/m_3832/contents.do)

II. 헌법 제60조 제1항의 해석적 구조

1. 조약의 분류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2조 제1항 (a)는 조약을 “단일의 문서에 또는 2 또는 그 이상의 관련문서에 구현되고 있는가에 관계없이 또한 그 특정의 명칭에 관계없이, 서면 형식으로 국가 간 체결되며 또한 국제법에 의하여 규율되는 국제적 합의”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조약의 요건은 간단히 말하자면 ‘서면형식’으로 ‘국가 간’ 체결되며 ‘국제법’에 의해 규율되는 국제적 합의인 것이다. 때문에 국가 간이 아니거나 구두합의이거나 사법상의 규율대상이 되는 국가 간의 합의는 조약으로 볼 수 없다. 또한 그 명칭이 협정(agreement), 협약(convention), 각서교환(exchange of notes), 의정서(protocol) 등 명칭 여하나 형식에 상관없는 총괄적 개념이다¹¹⁾. 그런데 조약은 여러 가지 형태로 분류해 볼 수 있고, 현대에는 외교실무관행상 장관의 전결로 체결하는 이른바 ‘고시류 조약’에 이르기까지 새로운 유형의 조약들이 등장해 왔다. 이에 이러한 조약들이 어떻게 분류될 수 있는가를 먼저 살펴보고자 한다.

조약은 여러 기준에 따라 분류해 볼 수 있는데, 우선 외교통상부 홈페이지상의 조약정보의 분류내용처럼 양자조약과 다자조약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이는 우리의 전통적인 분류방식으로써 조약체결의 상대방이 단수인지 복수인지에 따라 나누는 개념이다. 다른 기준으로는 조약체결절차에 관한 헌법 또는 법률규정 등에 의하는 것인데, 국회의 동의를 요하는 조약과 국회의 동의를 요하지 않는 조약, 외교통상부장관이 직권으로 체결하는 조약(이른바 고시류 조약)으로 나눌 수 있다. 이 세가지 유형들은 조약법협약 제2조상의 ‘국제법상의 조약’에 해당하지만, 국회의 동의를 요하는 조약과 국회의 동의를 요하지 않는 조약은 양자가 모두 헌법과 법률상 국무회의의 심의나 대통령의 재가 그리고 공포

11) 정인섭, 新국제법 강의, 박영사(2013), 249면.

등의 절차를 거쳐 효력이 발생한다. 하지만 이른바 고시류 조약의 경우에는 법률의 위임이나 관행에 그 근거를 둔 관행상의 조약 또는 법률의 위임에 따른 조약이어서 헌법이나 법률상의 절차를 따르지 않고, 외교통상부장관이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체결절차를 밟은 후 그 내용을 바로 관보에 고시하는 것으로 마무리한다¹²⁾. 고시류 조약은 모(母)조약의 실시·집행을 위하여 보충적으로 체결되는 시행약정이나 모조약의 일부내용을 수정하기 위한 각서 교환 등 복잡한 국내절차를 취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용된다. 국제법상의 명칭과 상관없이 동등한 법적 지위를 가지는 것이기 때문에 고시류 조약도 국제법상 다른 조약들과 같은 효력을 갖지만, 국내법적 지위에서 볼 때 고시류 조약은 별도의 논의가 필요하다¹³⁾.

결국 대상의 존재근거가 무엇인가에 따라 구분해 본다면, 우리나라의 경우 헌법상의 조약으로는 국회의 동의를 요하는 조약과 국회의 동의를 요하지 않는 조약이 있으며, 법률상의 위임이나 관행에 근거한 조약으로 고시류 조약과 기타 국제합의가 있다고 분류해 볼 수 있다¹⁴⁾.

2. 국회의 동의를 요하는 조약의 범위

대통령의 조약 체결·비준에 대한 국회의 동의권 규정은 제헌헌법에 규정¹⁵⁾된 이후로, 1962년과 1980년에 각각 개정된 바 있다. 제헌헌법상의 국회 동의권 근거 규정이었던 42조에 대한 유진오의 설명은 다음과 같았다. “본조는 국제조약의 비준과 선전포고에 대하여 국회가 동의권을 가지고 있는 것을 규정하였는데, 조약의 비준과 선전포고는 원래 헌법 제59조(현행 헌법 제73조)에 의하여 대통령의 권한에 속하는 것이나, 양자는 모든 국민의 권리의무나 이해관계에 지대한 영향이 있으므로 대통령이 그를 단독으로 행하지

12) 외교통상부, 알기쉬운 조약업무(2006), 39면.

13) 전종익, 조약의 국내법상 지위와 고시류조약, 서울국제법연구 제22권 제1호(2015), 231면.

14) 배종인, 헌법과 조약체결: 한국의 조약체결 권한과 절차, 삼우사(2009), 66면.

15) 제42조 국회는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 상호원조에 관한 조약, 강화조약, 통상조약, 국가 또는 국민에게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비준과 선전포고에 대하여 동의권을 가진다.

못하게 하고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동의를 얻게 한 것이다. 그러나 위에 열거한 조약의 종류는 대단히 광범하므로 국회의 동의를 요하지 않는 조약의 범위는 극히 국한되어 있는 것이다.¹⁶⁾” 라는 설명이었는데, 제헌 당시의 입법자들은 오히려 국회의 동의를 요하지 않는 조약의 범위를 좁게 생각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후 1962년 헌법 개정¹⁷⁾에서는 제헌헌법 규정에 비해서 국회 동의권의 대상이 되는 조약의 수가 늘어났지만, 1980년 헌법개정¹⁸⁾에서는 대상 조약수를 줄이고 ‘중요한’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으로 그 범위를 제한하는 문구를 추가하는 내용이 되어 결론적으로 국회 동의를 필요로 하는 대상 조약의 범위가 축소되었다. 1980년 헌법개정에서 이처럼 국회 동의를 필요로 하는 조약의 범위를 축소한 이유는 헌법연구반의 보고서에서 찾아 볼 수 있다¹⁹⁾. 이 보고서 내용에 의하면, 개헌과정에 참여했던 당시 헌법전문가들은 미국(6.2%)이나 일본(11.1%)에 비교해 볼 때 대한민국 정부가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조약의 비율(32%)이 상대적으로 높고 이러한 점은 국회 활동에도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고, 국제관계의 다변화 시대에 단순히 국제기구와 관련되어 있거나 국가의 재정적 부담이 연관되어 있다는 이유로 국회의 동의를 받게 하는 것은 행정적인 부담이 과중하다고 보았던 것으로 설명되어 있다.

그리고 1980년 개정헌법 조항은 현행 헌법에도 그대로 내용을 유지하며 규정되어 있는데, 제60조 제1항은 ‘국회는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중요한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 우호통상항해조약,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강화조약,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16) 유진오, 헌법해의(1953), 160-161면.

17) 제56조 ① 국회는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 통상조약, 어업조약, 강화조약, 국가나 국민에게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외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18) 제96조 ① 국회는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중요한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 우호통상항해조약,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강화조약,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19) 헌법연구반 보고서(1980년 3월 법제처 헌법심의자료), 280-287면[배종인, 앞의 책, 132면에서 재인용].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해서는 국회의 동의를 있어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헌법 제60조 제1항에 따른 국회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조약의 범위에 대해서는 열거적 규정설과 예시적 규정설로 나뉘어 해석되고 있다. 현행 헌법 제60조 제1항 규정의 본질적 의미를 정부에 대한 국회의 통제권으로 해석하는 입장²⁰⁾에서는, 국가가 주체가 되는 모든 조약의 체결에는 원칙적으로 국회의 개입이 인정되는 게 당연하며 그러한 통제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보아 예시적 규정으로 해석한다²¹⁾. 반면에 모든 조약의 체결과 비준에 있어서 국회의 동의를 필요한 경우와 필요 없는 경우를 구분하는 것이 쉽지 않고 헌법에 규정된 조약의 종류가 7개나 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규정은 열거적 규정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입장²²⁾이 그것이다.

하지만 실제 조약에 관한 이제까지의 관행을 살펴보면, 국회의 동의를 받았던 조약의 경우에도 조약·협정·협약 등 그 형식적인 명칭 여부와 상관없이 해당조약의 내용이나 성질로 대상조약성을 판단해 왔음을 알 수 있으며, 헌법 제60조 제1항 후문규정인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이라는 부분이 소위 '개방적' 규정으로서 포괄적일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경우에 개별적인 해석이나 판단을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당해 규정에 대한 열거설과 예시설의 구분적 논의는 실의 없는 논의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헌법 제60조 제1항에 열거된 중요한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해서 국회가 동의권을 갖는 것은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국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된 중요사항에 대한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본연적 사항인 국회의 입법기능에 속한다고 볼 것이며, 이는 동시에 조약을 체결하고 비준하는 것이 국가를 대표하는 대통령의 권한(헌법 제73조)이기 때문에

20) 김선택, 미국 헌법상 통상협정체결에 관한 정부·의회 간 권한배분, 미국헌법연구 제18권 제2호(2007. 9).

21) 제성호,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국회동의권, 국제법학회논총 제33권 제2호(1988), 290면; 박봉국, 최신 국회법, 박영사(2004), 678면.

22) 정종섭, 헌법학원론, 박영사(2015), 944면;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2010), 879면; 성낙인, 헌법학, 법문사(2019), 등.

국회가 그에 대한 동의권을 갖는다는 것은 국가기관 간의 견제와 균형이라는 측면에서의 국회에 의한 대통령의 외교권에 대한 통제라는 의미도 갖는 것임을 주목해야 한다²³⁾.

이렇게 볼 때, 헌법 제60조 제1항 후문에서의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이라 함은 당해 조약에의 가입으로 인해 국고에서이건 또는 별도의 재원을 마련하게 됨으로써 국가의 재정적 지출이 필요하게 되거나 결론적으로 국민에게 재정적 부담을 안기게 되는 조약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²⁴⁾, 관세나 세율에 영향을 주거나 주채무나 보증채무를 부담하게 하는 조약 등이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²⁵⁾. 또한 ‘입법 사항에 관한 조약’이라 함은 당해조약의 구체적 내용의 이행을 위해서는 관련된 국내 법률의 제정·개정이 필요한 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부분에 관하여는 다시 아래에서 살펴보기로 하겠다.

Ⅲ. 국회의 동의를 위한 조약의 범위

1. 범위 해석을 위한 규정내용 분류

헌법 제60조 제1항에 규정된 국회의 동의 대상이 되는 조약 중,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우호통상항해조약·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강화조약’의 경우는 조약 자체의 명칭이 고유명사로 사용될 만큼 특정성을 가질 뿐만 아니라 조약의 규율대상이나 주제에 따라 구분될 수 있는 조약인 반면, ‘중요한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경우에는 어떤 경우가 중요한 국제조직에 관한 것인지, 중대한 재정적 부담에 해당되는 것인지, 입법사항에 관한 것인지를 해석해야만 하고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례들을 분석할 필요가 있는 대상범위이다.

23) 김선택, 헌법상의 외교권한 배분과 구체화 입법의 헌법적 한계, 헌법학연구 제13권 제3호(2007. 9), 300-301면.

24) 조소영, 앞의 논문, 9면.

25) 정종섭, 앞의 책, 945면.

예를 들어, ‘중요한’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이 무엇인가에 관해서는 중요성의 판단이 중요하다. 국제조직의 중요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국제사회에서의 비중, 회원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독자성의 정도, 그 설립 목적·기능에 있어서 주권제한적인 요소의 존부와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다거나²⁶⁾, 국제기구가 해당 영역에서 일종의 입법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로 특히 개별 당사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모든 당사국을 구속할 수 있는 결의 등을 채택할 수 있는지 여부, 탈퇴가 자유로운지 여부 등도 판단의 기준이 될 수 있다고 해석²⁷⁾하는 것처럼 대상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 반드시 판단기준을 먼저 정립해야 하는 경우인 것이다. 그래서 이하에서는 사례분석과 해석이 필요한 대상조약 중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과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에 대한 해석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2.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의 해석과 사례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은 국가가 당해 조약에 가입함으로써 현실적으로 국고에서 재정지출을 해야 하거나 차관협정이나 차관지불보증협정과 같이 주채무나 보증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또는 관세 및 세율에 영향을 미치는 조약을 말한다고 할 수 있는데, 조약의 목적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일정한 재정적 지출이 필요한 경우·국제금융기구 설립협정 가입처럼 조약가입으로 인해 일정한 지분출자가 요구되는 경우·조약의 체결이나 가입으로 인해 회원국으로서의 회비(운영부담금)를 부담해야 하는 경우 등을 들 수 있다²⁸⁾. 따라서 당해 조약에의 가입으로 인해 국고와는 별도의 재원으로부터 재정적인 지출을 필요로 하거나 국민에게 재정적인 부담이 가게 하는 조약이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26) 박영태, 조약심사와 그 사례 소개, 법제 통권 473호(1997. 5), 112면.

27) 배종인, 앞의 책, 148-149면.

28) 정인섭, 조약체결에 대한 국회의 동의제도-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을 중심으로-, 서울대 법학 제43권 제2호(2004), 15면.

일단 재정적 부담이라는 면에서 수적 크기를 기준으로 판단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재정적으로 국가나 국민에게 상대적으로 큰 부담을 안게 하는 경우라면,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이 재산권 보장이라는 면에서 당연한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미 체결된 우리나라의 차관협정들의 예를 살펴보면, 단순히 수적 크기를 기준으로 한 차관액수의 규모에 따라 국회의 동의권 대상성을 인정했던 바가 아니었음을 보게 된다. 1974년 10월 25일에 발효한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 간의 농촌개발사업 및 대청댐 건설사업을 위한 차관에 관한 각서교환은 그 액수가 313억2천만 엔이었음에도 국회의 동의를 받지 않았으나, 1980년 1월 18일 발효한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 간의 교육 시설 확충, 국립의료 및 보건연구기관 장비 현대화 및 도시하수처리시설 사업을 위한 차관에 관한 각서교환의 경우에는 190억 엔이었음에도 국회의 동의를 받아 체결하였기 때문이다²⁹⁾.

결국 중대한 재정적 부담인가의 여부는 ‘우리나라의 경제력 규모, 재정부담으로 인하여 우리가 얻게 되는 이익의 정도, 조약가입에 따른 비용지출에 관하여 국회가 예산상 승인을 했는지 여부, 법률상 지출이 예정되어 있는지 여부, 이미 책정되어 있는 예산사업의 수행을 위한 부담인지 여부, 지속적인 재정부담 증가가 예상되는지 여부³⁰⁾, 재정 부담이 일방적인 것인지 계약에 의한 것인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³¹⁾하는 것이 타당하다.

‘국가나 국민에게 중요한 재정적 부담을 주는 조약’의 구체적 유형을 살펴보면, 차관공여협정이나 국제금융기구 설립협정의 가입 등을 들 수 있다. 그런데 실제 예를 보면, 기존의 주한미군지위협정³²⁾의 내용과 달리 일정한 경비를 우리나라가 예외적으로 부담해야

29) 이창열, 헌법상 조약체결권의 통제에 관한 일고찰-국회의 동의를 중심으로-, 미국헌법연구 제22권 제1호 (2011. 4), 272면

30) 박영태, 앞의 논문, 113면.

31) 배종인, 앞의 책, 150면.

32) 원래 명칭은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이하 “주한미군지위협정”이라 한다)”인데, SOFA(Agreement under Article IV of the Mutual Defense Treaty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regarding Facilities and Areas and the Status of United States Armed Forces in the Republic of Korea)라고 흔히

하는 규정을 두었던 2002년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³³⁾은 국회의 동의를 받았던데 반해, 2004년 용산기지 이전을 위한 합의서의 경우에는 국회동의를 구하지 않았었다. 양자 모두 실제로 국민에게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는 점에서, 후자의 경우에도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다.³⁴⁾

한편, 해외에 차관을 제공하는 여러 협정들이 체결되어 왔는데, 대외경제협력기금(EDCF)³⁵⁾에 기반한 협정들을 예로 살펴 볼만 하다.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와 세네갈간에 체결된 2018년에 이르기까지 여러 건의 대외경제협력기금차관에 관한 협정들이 있었는데, 이 협정들은 우리나라의 「대외경제협력기금법」³⁶⁾에 의거한 대외경제협력기금의 운

부른다. 동 협정은 1966년 7월 9일 서명되어, 1966년 10월 14일 국회의 비준동의를 얻었으며, 1967년 2월 9일 공포되었다.

33) 원래의 명칭은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5조에 대한 특별조치에 관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협정(2002. 4. 4 서명, 2002. 1. 1 발효, 조약 제1592호)’인데, 2002. 4. 19 제229회 국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국회동의 의결이 있었다(동 협정은 주한미군지위협정에 의하여 주한미군이 사용하는 공항, 항만 등의 시설·구역 및 그 통행권과 관련된 경비를 제외하고는 주한미군의 유지경비를 부담하지 않도록 하였던 것의 예외로 일정한 경비를 우리나라가 부담하는 규정을 담고 있었다). 이 외에도 그 후의 한미 방위비 협정의 경우에는 협정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특별한 경비가 추가되는 재정적 부담이 발생하는 것을 헌법 제60조 제1항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하여 국회의 동의를 받아 완료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 예를 들어, 2006년 한·미 방위비분담협정의 경우에도 기존의 「주한미군지위협정」에 의하면 미합중국측이 부담하여야 할 경비의 일부를 우리나라가 부담하도록 하려는 특례적 성격을 지녔다는 점에서 국회의 동의를 받았었다.

34) 최재천, 대한민국과 체결한 조약, 헌법위에 군림하는가? -법제처 조약심사의 문제점과 대안-, 2004년 정기 국회 정책자료집, 49면.

35) EDCF는 개발도상국의 산업화와 경제발전을 지원하고 우리나라와 개발도상국 간의 경제교류 증진을 위해 1987년 설치된 정책기금으로 우리나라 ODA 중 원리금을 상환받는 장기(40년 이내 만기), 저리(0.01~2.5%)의 양허성 차관을 제공하고 있다. EDCF의 운용주체는 기획재정부로 차관사업 지원방침 결정 등의 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한국수출입은행은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EDCF의 운용, 관리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고 있다. EDCF는 개발도상국의 교통, 수자원·위생, 에너지, 보건, 통신 등 경제·사회 인프라 건설 사업을 집중 지원하고 있으며, 급증하는 개발도상국의 대규모 인프라 개발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EDCF, 개발금융, 수출금융 등을 연계한 패키지 지원 추진, 다자개발은행(MDBs)과의 협조융자사업 확대 등을 통해 부족한 재원을 확보하는 한편, 대내외적인 개발협력 환경변화에 부응하여 개발도상국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우리나라와의 경제교류 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1987년 설립 이래, 2016년 12월말까지 53개 국가 총 375개 사업에 대해 총 15조 1,957억 원을 승인하였으며, 집행누계는 6조 5,469억 원에 이른다. 2009년 처음으로 연간 승인액 1조 원을 넘어선 이래, 2015년 1조 4,442억 원 상당의 사업을 신규로 승인하는 등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에 약속한 ODA 지원 규모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2016년 10월말 기준, 경제·외교적 중요도가 높은 아시아(66%)에 중점 지원하고 있으며, 신흥시장 인 아프리카(22%) 및 중남미(6%)등으로 원조를 다변화 하고 있다(2017 ODA 백서, 42-43면).

36) 법률 제8852호, 2008. 2. 29.

용대상사업에 해당되어 증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서 국회 동의를 필요하지 않은 양자조약으로 분류되어 왔다.³⁷⁾

2008년에 체결된 ‘대한민국 정부와 경제협력개발기구 간의 OECD/대한민국 정책센터 설립에 관한 양해각서’에 대해서도 법제처는 “그 동안 정부부처별로 각각 운영되어온 기존의 분야별 OECD 센터를 하나의 OECD/대한민국 정책센터로 통합·운영함으로써 업무 효율성 제고, 인력·예산의 절감 및 OECD와의 협력관계 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으로서, 「헌법」 제60조 제1항에 따른 국가나 국민에게 증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사항 등을 포함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조약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³⁸⁾

1992년 12월 발효된 「다자투자기금설립협정(AGREEMENT ESTABLISHING THE MULTILATERAL INVESTMENT FUND)」에 가입함으로써 우리나라 기업의 중남미 지역에서의 투자 및 진출을 확대하고, 동 지역에서의 경제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던³⁹⁾ 2004년 다자투자기금설립협정 가입안의 경우, ‘미주개발은행의 회원국들이 중남미 지역의 경제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미주개발은행 내에 다자투자기금을 설치하고 이에 자금을 공여’해야 하는 부분이 ‘재정적 부담’에 해당되고, 다자투자기금이 그 당시에 우리나라의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정부의 출연 대상 국제금융기구⁴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새로운 입법조치가 필요하여 헌법 제60조 제1항의 ‘입법사항’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서 국회의 동의를 받았다.

37) 2017 ODA 백서, 42면.

38) 법제처, 「한-OECD 정책센터 설립 양해각서안 심사보고」, (법제처 내부자료, 2008).

39) 동 협정 전문.

40)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은 정부는 국제통화기금, 국제부흥개발은행, 국제개발협회, 국제금융공사, 아시아개발은행, 아프리카개발기금, 아프리카개발은행, 상품공동기금, 국제투자보증기구, 유럽부흥개발은행, 국제결제은행에 해당되는 국제금융기구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출자(출연을 포함한다)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2항은 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한국은행으로 하여금 제1항에 의한 출자금을 납입하게 할 수 있으며, 동조 제3항은 정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제금융기구에 대한 출자금의 변동에 관하여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반면에, 무상원조를 부담하게 되거나 의무분담금을 출연해야 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서 우리나라의 재정적 부담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도, 이전에 이미 국회의 동의를 받아서 발효된 국제조약의 이행적 성격을 지니는 조약이거나 해당 조약의 근거가 되는 국내법이 있고 그 법률에 근거한 예산의 범위 내에서의 내용을 담고 있음에 불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국회의 동의를 받지 않았다. 예를 들어, 2008년 한·베트남 무상원조협정⁴¹⁾의 경우, 그 주요내용으로 한국정부는 연수생 초청·전문가 파견·봉사단 파견 등 베트남 정부에 무상원조를 제공하고⁴²⁾, 베트남 정부는 무상원조를 위하여 수입된 물품 또는 현지 구매 물품에 대한 조세 또는 그 밖의 부과금 면제⁴³⁾·베트남 내의 한국국제협력단 사무소 유지 및 직원 인정⁴⁴⁾·무상원조 수행을 위하여 파견된 전문가와 조사단원 및 봉사단의 안전 보장⁴⁵⁾하도록 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이 협정은 「한국국제협력단법」에 근거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었을 뿐 아니라⁴⁶⁾, 무상원조의 구체적인 규모의 결정도 예산 범위 내에서 이행하도록 되어 있다는 점에서 새로이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국회의 동의를 받지 않았다.

또한 협정을 체결함으로써 일정한 의무분담금을 출연하게 되는 경우라 할지라도, 2006년 국제열대목재협정⁴⁷⁾의 경우처럼 이미 이전에 국회의 동의를 받아 발효되고 있는 선조약이 있고, 그 조약의 이행을 뒷받침하기 위한 국내법이 입법되어 시행되고

41) 이 협정의 공식 명칭은 「2008년 대한민국 정부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 간의 무상원조에 관한 기본협정 (FRAMEWORK AGREEMENT ON GRANT AID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SOCIALIST REPUBLIC OF VIETNAM)」이다.

42) 동 협정 제3조.

43) 동 협정 제8조.

44) 동 협정 제10조.

45) 동 협정 제1조.

46) 한국국제협력단법 제7조 제1호는 전문인력, 해외봉사단의 파견, 물자·자금 및 시설의 지원 등 개발도상국가를 위한 사업을 할 수 있으며, 동법 제16조 제1항은 정부는 협력단의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협력단에 필요한 출연금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교부한다고 하고, 동법 제20조는 협력단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작성하여 외교통상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47) 이 협정의 공식 명칭은 「2006년 국제열대목재협정(INTERNATIONAL TROPICAL TIMBER AGREEMENT, 2006)」이다.

있는 경우에는 새로운 재정적 부담으로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라고 해석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⁴⁸⁾.

3.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해석과 사례

지구촌이라는 국제사회의 흐름 속에서 전적으로 국내문제라고 할 수 있는 영역이 점차 줄어들면서,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거나 국내법령과 중첩 또는 상충되는 조약이 생겨나고 있다. 기본적으로 입법사항이라 함은 헌법에서 반드시 법률로 정하도록 규정한 사항을 말한다고 정의되며, 흔히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이며 법률사항이라고도 한다. 즉 국회입법독점이 아니라 국회중심입법이 현대국가의 입법현실이고 행정입법 등 다양한 입법형태가 허용됨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경우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의결절차에 따라 법률로 정해야 함을 말하는 것이다. 따라서 ‘입법사항’에 관한 것이라 함은, 기본적으로 그 조약의 내용이 국민의 권리 및 의무와 관련되는 것이고, 관련되는 국내법이 아직 존재하지 않거나 존재하는 국내법의 내용을 조약내용에 따라 변경·폐지 등의 결과를 발생하게 하는 경우에 통상적인 입법절차와 같이 입법기관인 국회의 동의를 요하도록 하는 것이 헌법적 의미인 것이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 헌법에서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하여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한 취지를 고려할 때,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이란 해당 조약을 체결·비준

48) 이 협정은 국제열대목재기구의 발전 및 운영 목적 달성에 기여하여 안정적인 열대목재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이 협정이 조속히 발효될 수 있도록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국제기구 내 위상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 주요내용 중 재정적 부담 여부와 관련된 내용은 협정의 운용을 위한 운용계정은 의무분담금으로 충당되며, 이를 기본 행정비용과 주요 운영비용으로 재분류, 생산국과 소비국의 부담비율을 보유 투표수에 따라 계산한다는 부분(제19조.)으로, 우리나라가 부담해야 하는 의무분담금이 있었다. 이 협정내용은 우리나라에 일정 부분 재정적 부담이었지만, 이는 이미 조약 제1379호 「1994년 국제열대목재협정」(1997.1.1. 발효)에 따라 동일하게 부담해온 부분이고, 이는 「산림기본법」 제9조 및 제22조 제2항의 산림보전을 위한 국제협력 강화와 목재의 안정적인 공급기반 확보를 위한 국가의 노력의 일환으로 평가될 수 있다고 보았던 것이다.(정갑용 외, 조약체결과정에서 관계 정부기관의 역할 및 법제처 조약심사 강화를 위한 심사메뉴얼 정립에 관한 연구, 법제처, 2009.9월, 115면 등 참조)

함으로써 법률적 효력을 갖게 된 조약의 내용이 국회의 입법권 행사의 결과물인 현행 법률과 충돌되는 결과를 발생케 하는 조약을 의미한다고 해석해 볼 수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법규범 중에서도 특히 법률의 형식으로 규정되는 사항을 포함하는 조약으로서, 조약의 내용과 동일한 내용이 법률에 규정되어 있지 않거나 그 근거가 법률에 마련되어 있지 않은 조약의 경우, 조약의 내용이 국내 법률에 대한 특례를 정하여 국내 법률이 변경·수정되는 효과가 초래되는 경우 또는 국내 법률이 마련되지 않고는 조약을 시행할 수 없는 경우라면, 당해 조약은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⁴⁹⁾. 한편, 조약 준수 차원에서 국회의 입법권이 사실상 제약되는 경우는 조약의 체결·비준에 의해 국회의 입법권이 침해되는 경우와 구별해야 한다⁵⁰⁾.

생각해 볼 수 있는 유형을 살펴보면, 첫째, 조약내용이 국내법과 충돌됨으로써 국내법의 수정이나 변경을 요하게 되는 경우인데, 몇가지 예를 들어 본다. 우리나라와 쿠웨이트의 형사사법공조조약⁵¹⁾에서는 형사공조의 담당기관을 우리나라의 법무부장관으로 하고 있는데⁵²⁾, 이는 우리나라의 「국제형사사법공조법」⁵³⁾이 공조요청의 접수와 자료송부는 외교통상부장관으로 하고 긴급을 요하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법무부장관이 외교통상부장관의 동의를 얻어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⁵⁴⁾ 것에 대한 특례가 되기 때문에 ‘입법사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또한, 이중과세방지협약은 배당소득·이자소득·사용료 소득 등에 대하여 세율의 최고한도를 정하고 있고 일정한 자에 대한 면세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 내용은 우리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의 최고세율 보다 낮게 규정되어 있는 점과 우리 「소득세법」에서 국내에 원천소득이 있는 모든 자의 납세의무가 있음을 규정하고 있는 점과 상충되는 것이어서, 이들 협약은 국회의 동의권의 대상이 된다. 실제로 우리나라와 중국의 이중과세방지협

49) 도경옥, 투자보장협정의 국회 동의 대상 여부에 관한 검토, 서울국제법연구 제19권 제2호(2012), 114-115면.

50) 도경옥,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국회의 동의권, 서울국제법연구 20권 1호(2013), 97-128면.

51) 2007. 3. 26 서명, 2008. 2. 29 국회동의(제272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2008. 4. 8 발효, 조약 제1892호.

52) 동 조약 제3조제1항.

53) 법률 제4343호, 1991. 3. 8.

54) 동법 제11조.

정⁵⁵⁾이나, 우리나라와 캐나다의 이중과세방지협정⁵⁶⁾ 등의 경우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 효력이 인정된 바 있다.

다음 국내법의 제정 없이는 조약을 국내에서 시행할 수 없는 경우⁵⁷⁾인데, 예를 들어, 유엔의 부패방지협약⁵⁸⁾은 부패범죄와 관련된 자산을 피해자와 피해국에 반환하기 위한 몰수·반환제도를 정하고 있는 바,⁵⁹⁾ 이를 위하여 우리나라는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별법」⁶⁰⁾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결국 조약 시행을 위한 국내법의 새로운 입법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국회의 동의대상 조약으로 보아야 하지만, 국회에서의 새로운 입법 과정 그 자체가 국회의 동의절차로 간주될 수도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해당 조약이 국내법에 없는 권리의무를 추가하거나 보완하는 경우, 즉 국내법률상에는 규정되지 아니한 내용의 국민의 권리·의무 사항을 정한 경우이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와 미국의 범죄예방 협력증진 협정은⁶¹⁾ 범죄행위의 예방과 수사를 위하여 지문정보와 참고정보 등을 조회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데⁶²⁾, 이는 우리나라의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⁶³⁾에 대한 예외라고 할 수 있으므로 법의 개정이 필요한 입법조약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그 밖에도, 우리나라와 일본의 범죄인인도조약⁶⁴⁾, 우리나라와 중국의 범죄인인도조약⁶⁵⁾ 등이 해당된다. 이러한 기준에 의한다면, 이중과세방지협약이나 사회보장협정은 조세법과 국민연금법 각각에 대한 특별법적 내용이라는 점에서, 범죄인인도조약과 형사사법공조조약은 국민의 권리 및 의무와 관련된다는 점에서, 특권이나 면제 부여 조약의 경우에는 해당인사에 대하여 국내법 적용이 무효화되는 것이라는 점에

55) 1994. 3. 28 서명, 1994. 7. 14 국회비준동의, 1994. 9. 28 발효, 조약 제12430호.

56) 1978. 2. 10 서명, 1978. 11. 14 국회비준동의, 1980. 12. 19 발효, 조약 제725호.

57) 조약업무처리지침(1985), 80면.

58) 2003. 10. 31 채택, 2008. 4. 26 발효, 2009. 2. 29 국회비준동의, 조약 제1896호.

59) 동 협약 제51조 내지 제59조.

60) 법률 제8993호, 2008. 3. 28.

61) 2008. 11. 7 서명, 2008. 12. 13 국회비준동의, 2008. 12. 29 발효, 조약 제1930호.

62) 동 조약 제3조 및 제4조제1항.

63) 법률 제8891호, 2008. 3. 14.

64) 2002. 4. 8 서명, 2002. 4. 19 국회비준동의, 2002. 6. 21 발효, 조약 제1579호.

65) 2000. 10. 18 서명, 2001. 2. 28 국회비준동의, 2002. 4. 12 발효, 조약 제1590호.

서 국내법령의 개정이나 폐지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므로 ‘입법사항’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⁶⁶⁾.

그런데 실제 사례에서 양자조약의 경우, 범죄인인도·형사사법공조·이중과세방지협정·사회보장협정 등은 국회에 제출되어 국회의 동의권 의결대상이 되었던 반면, 여타 투자보장협정·경제과학기술협력협정·항공협정·원자력협정 등은 국회의 동의권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국회에 제출하지 않았던 일종의 패턴이 관행으로 이루어져 왔다고 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검토의 필요성이 있다⁶⁷⁾. 외교부에서 밝히고 있는 협정 체결 관행상의 이유로는, 항공협정, 해운협정, 과학기술협력협정 등 순전히 기술적 성격의 협정에 대해서는 국회의 비준 동의를 받지 않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⁶⁸⁾. 다만, 국회 동의 대상 조약의 분류적 관행들도 개별 조약별로 검토되어야 하는데, 관련된 국내법률이 존재하고 새로이 체결하는 국제조약의 이행내용들이 그 법률들의 내용과 중첩되거나 그 범위 내에서 이행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⁶⁹⁾이거나, 당해 법률들에 포섭될 수 있고 그 법률에서 새로운 내용에 대한 적용 예외 등을 이미 규정하고 있다고 보여지는 경우⁷⁰⁾에는 따로 국회의 동의절차를 밟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66) 배종인, 앞의 책, 152면.

67) 배종인, 앞의 책, 205면.

68) http://www.mofa.go.kr/www/wpge/m_4058/contents.do

69) 예를 들어, 지적재산권의 보호를 위한 국제적 노력에 동참하고 실연자, 음반제작자 및 방송사업자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가입했던 1961년 국제음반보호협약[이 협정의 공식 명칭은 “1961년 실연자, 음반제작자 및 방송사업자의 보호를 위한 국제협약(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PERFORMERS, PRODUCERS OF PHONOGRAMS AND BROADCASTING ORGANISATIONS)] 비준안의 경우, 협약의 주요내용 중 체결국의 실연자와 음반제작자, 방송사업자에게 내국민대우를 부여하는 것을 규정한 비준안 제4조, 제5조 제1항 및 제6조 제1항은 우리나라의 「저작권법」 제64조에 따라 적용할 수 있고, 협약 제14조의 보호기간은 보다 더 강화된 기간을 보호기간으로 정한 우리나라의 「저작권법」 제86조 제2항의 범위 내에 있기 때문에, 헌법 제60조 제1항에 정하는 새로운 입법사항이 포함된 것이 아니므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조약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70) 예를 들어, 식량 및 농업을 위한 식물 유전자원의 보호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하고 해외 유전자원에 대한 우리나라의 접근성을 높여 우리나라의 생명공학기술을 발전시키려는 목적을 가진 2001년 국제식물유전자원조약(식량 및 농업을 위한 식물 유전자원에 관한 국제조약, INTERNATIONAL TREATY ON PLANT GENETIC RESOURCES FOR FOOD AND AGRICULTURE)의 경우, 우리나라의 「농업유전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동 조약 제12조 제3항 제4호에 대응하여 이 조약에 별도로 붙이는 ‘해석선언’ 등을 통해 식물 유전자원의 국제 공유나 지식재산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가 가능한 것이므로, 「헌법」 제60조 제1항에 따른 새로운 입법사항 등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어서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조약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IV. 결론

조약에 대한 국회동의와 관련된 법률로는 「정부조직법」, 「정부대표 및 특별사절의 임명과 권한에 관한 법률」,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등이 있다. 「정부조직법」⁷¹⁾에 의하면, 법제처는 국무회의에 상정될 법령안·조약안과 총리령안 및 부령안의 심사와 그 밖에 법제에 관한 사무를 전문적으로 관장하며,⁷²⁾ 외교통상부장관은 기타 국제협정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⁷³⁾ 「정부대표 및 특별사절의 임명과 권한에 관한 법률」⁷⁴⁾은 정부를 대표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와 교섭하거나 국제회의에 참석하거나 조약에 서명 또는 가서명하는 권한을 가진 자(정부대표)와 특별사절의 임명과 권한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⁷⁵⁾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⁷⁶⁾에 의하면, 조약공포문의 전문에는 국회의 동의 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뜻을 기재하고, 대통령이 서명한 후 대통령인을 압날하고 그 공포일을 명기하여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하여야 하며,⁷⁷⁾ 관보에 게재하여 공고한다.⁷⁸⁾

조약에 대한 국회동의와 관련된 그외 법령으로는 「법제처직제령」, 「법제업무운영규정」 등이 있다. 「법제처직제령」⁷⁹⁾에 의거하여 법제처는 국무회의에 상정되는 조약안의 심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⁸⁰⁾ 「법제업무운영규정」⁸¹⁾에 의하면, 외교통상부장관은 조약안에 관하여 관계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친 후 해당 조약안의 내용이 확정되기 전에 법제

71) 법률 제8867호, 2008. 2. 29.

72) 동 법률 제20조 제1항.

73) 동 법률 제25조 제1항.

74) 법률 제8852호, 2008. 2. 29.

75) 동 법률 제1조.

76)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법률 제8997호, 2008. 3. 28) 제6조.

77) 동 법률 제6조.

78) 동 법률 제11조 제1항.

79) 대통령령 제21239호, 2008. 12. 31.

80) 동 법령 제2조 제3호.

81) 대통령령 제21239호, 2008. 12. 31.

처장에게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⁸²⁾ 결국 현행 관련법제 하에서, 조약에 대한 국회 동의 여부와 관련된 심사는 법제처의 담당사무이고, 이런 점에서 담당부처로서의 법제처의 관련 심사와 해석은 중요하다.

가장 최근의 사례가 ‘9월 평양공동선언’에 대한 법제처의 “국회 동의가 필요 없다”는 결정과 관련된 것이다. 매일경제의 보도에 의하면, 법제처가 작성한 ‘국회 동의 필요 여부 등 심사 결과-9월 평양공동선언’ 전문을 확인한 결과, 국회가 남북합의서에 대해 체결·비준 동의권을 가질 수 있는 조건인 입법 사항에 대한 해석이나 설명이 없는 것이 확인됐다고 한다⁸³⁾. 이 보도내용에 따르면, 법제처는 심사 결과에서 “평양공동선언의 내용을 고려할 때, 특히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남북합의서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주요 검토 대상”이라며 ‘중대한 재정적 부담’ 여부만 검토했다고 했다. 그러나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3항은 “국회는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남북합의서 또는 입법 사항에 관한 남북합의서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9월 평양공동선언은 헌법 제60조 제1항의 유형 중 ‘재정적 부담’과 ‘입법사항’을 수반하는 조약으로 병행적으로 검토되었어야 한다고 생각된다⁸⁴⁾. 또한 법제처의 이 경우의 심사와 결론은 ‘국회 동의 필요 여부 등 심사 결과-역사적인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 분야 합의서’에서는 재정적 부담 여부와 입법 사항 여부를 둘 다 검토했었던 이전의 심사결과와 다르고, 2007년 노무현 전 대통령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간의 ‘10·4 남북정상선언(남북 관계 발전과 평화 번영을 위한 선언)’에 대해 “이 선언(10·4선언)이 남북 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의 수반 또는 입법 사항에 관한 남북합의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재정적 부담과 입법 사항을 모두 검토했던 심사과정과도 다르다는 점에서 그 차이점에 대한 별도의 해명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82) 동 규정 제21조제2항.

83) <https://www.mk.co.kr/news/politics/view/2018/10/667424>(최종방문 2019.10.28.)

84) 평양공동선언에 “서해경제공동특구 및 동해관광공동특구를 조성하는 문제를 협의”한다고 명시한 데 대해 관련 입법이 필요하다는 시각도 있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은재 의원).

기본적으로 법제처는 국제조약과 관련한 입법의 필요성 여부를 심사할 것인가를 정함에 있어서, 상충되는 법률이 있는가, 검토할 만한 법령이 특정될 수 있는가 등을 파악한 후, 심사결과를 작성해 왔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일관된 기준을 찾기 어렵다는 점에서,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주는 조약’,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해당 여부를 심사하기 위한 구체적·유형별 기준을 정립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하겠다.

제3장

관세·무역협정 체결과 국회동의 관행 검토

I. 서론

II. 관세·무역관련 조약 체결 현황 및 국회동의 관행

III. 국제법적 분석과 문제점

IV. 관세·무역관련 국제협정 체결·비준시 국회 동의 대상 여부에 관한 심사 기준

제3장

관세·무역협정 체결과 국회동의 관행 검토

I. 서론

조약은 국제관습법과 함께 중요한 국제법 연원의 하나이다.⁸⁵⁾ 하지만 국제사회 구성국가 다양해지고 국제사회가 신속하게 대응하여야 할 문제가 많아지면서 그 관행과 법적 확신의 형성과 확립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국제관습법보다 그 중요성이 날로 더 커지고 있다. 국제연합 헌장 규정에 따라⁸⁶⁾ 회원국이 체결한 조약이 사무국에 등록되고 있는데 2011년 말 기준으로 약 63,000여 조약이 등록되어 있어⁸⁷⁾ 국제사회를 규율하는 조약의 중요성을 숫자로도 알 수 있다.

한편 대한민국도 1948년 정부수립으로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등장한 후 국가발전을 도모하는 과정에서 많은 국가 및 국제기구들과의 조약 체결 또는 조약 가입을 통하여 국가 이익을 실현 및 보호하고 국제사회에서의 책임을 다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왔다. 이에 따라 2019년 10월 8일 현재 대한민국이 체결하고 발효하여 조약번호 또는 고시번호가 부여된 조약은 3,356건으로 조약 2,432건, 고시류조약 924건이다. 정부수립 후 1960년까지 체결된 조약은 102건(양자 66건, 다자 36)건에 불과한데 반하여 2011년부터 2018년까지 8년간 발효된 조약은 544건(양자 452, 다자 92건)으로 최근에 체결되는 수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85) 국제사법재판소 규정(Statute of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제38조 제1항은 재판소에 맡겨진 분쟁해결을 위한 준거규범을 열거하면서 조약을 가장 먼저 언급하고 있고 관습국제법과 법의 일반원칙 등을 열거하고 있다.

86) 국제연합헌장(Charter of the United Nations), 제102조.

87) Anthony Aust, *Modern Treaty Law and Practice*, 3rd ed.,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3, p.298.

조약 체결은 국제법적 절차와 국내법적 절차를 통하여 이루어진다. 국제법적인 절차는 유효한 전권위임장을 가진 대표에 의하여 협상과정을 거쳐 조약문이 채택되고 채택된 문서에 서명하여 인증한 후 비준되고 비준서의 교환 또는 기탁을 거쳐 발효하게 되는 과정으로 이루어진다. 반면에 국내법적 절차는 조약체결 대표를 정하여 전권위임장을 주어 파견하고 파견된 대표에 의하여 협상되어 조약문이 채택된다. 이후 채택된 조약문에 대하여 조약체결권자(우리나라의 경우 대통령)가 기속적 동의의사를 표시하기 전에 입법기관(우리나라의 경우 국회)의 동의절차를 거치게 되고 정해진 절차를 따라 발효한 조약은 국내적 반포절차를 거치게 된다.⁸⁸⁾ 기속적 동의 의사표시는 많은 경우 비준(ratification)에 의하여 이루어지지만 기술적, 행정적 문제를 다루는 약식 조약의 경우에는 서명(signature)에 의하여 표시된다. 또한 이미 발효한 조약에 참여하는 기속적 동의 의사표시는 가입(accession)에 의하여 표시된다. 우리나라 헌법도 국회가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중요한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 우호통상항해조약,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강화조약,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 등 일정한 부류의 조약을 조약체결권자⁸⁹⁾인 대통령이 체결·비준하는데 대하여 동의권을 갖는 것으로 규정⁹⁰⁾하고 있는 등 국내법적 절차를 두고 있다.

여기서는 우리나라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대통령의 조약 체결·비준에 대한 국회동의 절차가 요구되는 여러 부류의 조약 중 관세·무역 분야를 중심으로 조약 체결·비준에 대한 국회의 동의 관행을 국제법적 시각에서 분석해 보고자 한다.

88) 스위스 같은 국가는 예외적으로 발효 전에 국내반포 절차를 밟는다. 김정건, 장신, 이재곤, 박덕영, 「국제법」, 박영사(2010), 58면.

89) 헌법 제73조.

90) 헌법 제60조.

II. 관세 · 무역관련 조약 체결 현황 및 국회동의 관행

1. 관세 · 무역관련 조약 체결 현황

우선 무역관련 조약의 경우 대한민국은 정부수립 후 1950년 6월 6일 대한민국과 점령하 일본간의 무역을 위한 재정협정(조약 1133호, 1950년 4월 1일 발효, 이하 발효일자)을 체결한 후 많은 무역관련 조약⁹¹⁾을 체결하여 왔다. 2019년 10월 8일 현재 양자조약 155건, 다자조약 68건 등 총 223건의 무역관련 조약을 체결하였다. 양자조약 중 115건이 ‘조약’으로 공포되는 문서로 체결되었고 나머지 40개의 문서는 ‘고시(告示)류 조약’으로 체결되었다. 다자조약 68건 중에는 조약으로 53건, 고시류 조약으로 15건이 체결되었다. 따라서 무역관련 조약 223건 중 조약으로 168건 고시류조약으로 55건이 체결된 셈이다.

이들 조약을 분야별로 다시 분류해 보면 다자조약은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조약 243호, 1967. 4. 14) 등 무역/통상/산업분야가 57건, 1967년 소맥무역협약(조약 279호, 1967년 7월 1일 채택) 등 농업/식량/1차산품 분야가 10건으로 두 분야에 집중되어 있다. 양자조약은 대한민국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간의 자유무역협정(조약 1665호, 2004. 4. 1.) 등 자유무역협정과 그 관련조약 35건, 대한민국의 점령하 일본간의 무역협정(조약 1132호, 1950.4.1.) 등 무역/통상분야 95건, 대한민국정부와 세계무역기구(WTO)간의 세계무역기구 도하개발아젠다 국제신탁기금 출연에 관한 양해각서(고시 614호, 2007. 5. 31.) 등 국제기구 10건, 대한민국정부와 튀니지아공화국정부간의 무역 및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조약 335, 1970. 5. 19.) 등 경제/과학/기술 14건, 세관분야 대한민국정부와 태국정부간의

91) 무역관련 조약을 분류하는 기준은 여러 가지로 제시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는 외교부 조약정보(http://www.mofa.go.kr/www/wpge/m_3834/contents.do)에서 ‘무역’이라는 주제로 검색하였을 때 분류된 조약을 기준으로 하였다. 이 부류에 속하는 조약은 무역/통상분야가 가장 많지만 세관, 경제/과학/기술, 조세, 국제기구 분야로서 무역관련성이 있는 조약도 포함되었다. 외교부의 분류 중 조세분야는 1건의 조약만 포함되어 있고 다른 조세분야 조약은 별도의 분야로 분류되고 있어 제외하였다. 한편 외교부 조약정보는 자유무역협정도 별도 분야로 분류하고 있는데 물론 이들 협정도 무역관련협정에 포함시켰다.

전시품면세통관에 관한 협정(조약 115호, 1963. 5. 13) 1건 등이다.

한편 관세분야의 경우에는 대한민국 정부와 월남공화국 정부간의 관세에 관한 각서교환(조약 47호, 1959. 1. 1.) 등 양자조약이 4건, 관세협력이사회 설립에 관한 협약(부속서 및 의정서, 조약 275호, 1952. 7. 2.) 등 다자조약 27건인데 이중 무역분야와 9건이 중복되어 순수하게 관세분야로만 분류되는 것은 18건이다.

또한 ‘국가 및 국민에게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의 범주에서 국회동의를 관행과 기준에 대하여 시사점을 얻을 수 있어 고려될 수 있는 차관도입 또는 차관공여에 관한 조약의 경우,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정부기관인 개발차관기금과의 차관협정(조약 53호, 1959. 4. 8.)을 시작으로 462건의 양자조약이 체결되었고 이 분야의 성격상 다자조약은 체결된 적이 없다.

2. 관세·무역관련 분야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국회동의 관행 및 기준 수립을 위한 시사점

(1) 무역관련 양자조약

무역관련 양자조약 155건 중 국회동의를 받아 체결·비준된 조약은 17건으로 약 11%의 조약이 국회동의를 받았다. 이들 17건의 조약은 자유무역협정(FTA)이 11건, 이들 조약을 모조약으로 하는 관련조약 또는 개정조약이 5건, 순수 무역협정이 1건으로 대부분이 자유무역협정 또는 그 개정 등에 관련된 조약임을 알 수 있다. 이하에서 상세하게 그 내용을 살펴보기로 한다.

무역관련 양자조약으로 체결된 11건의 자유무역협정은 모두 국회동의를 받았고 그 근거는 헌법 제60조의 동의사유 중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이라는 것이었다. 이들 자유무역협정은 칠레(조약 1665호, 2004. 4. 1.), 싱가포르(조약 1767호, 2006. 3. 2.), 페루(조약 2054호, 2011. 8. 1.), 미국(조약 2081호, 2012. 3. 15.), 터키(조약 2133, 2013. 5. 1.), 호주(조약 2215호, 2014. 12. 12.), 캐나다(조약 2216호, 2015. 1. 1.), 베트남(조약 2270, 2015. 12.

20.), 중국(조약 2269호, 2015. 12. 20.), 뉴질랜드(조약 2271호, 2015. 12. 20.), 콜롬비아(조약 2299호, 2016. 7. 15.) 등 11개 국가와 체결한 조약들이다.

자유무역협정과 관련된 문제를 다루면서 본 협정하에 체결된 하위 또는 부수조약의 성격을 갖는 5건의 조약도 국회동의를 받았다. 그러한 조약들로는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무역협정을 개정하는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의 의정서(조약2403호, 2019. 1. 1.), 대한민국과 터키공화국간의 자유무역지대를 창설하는 기본 협정에 따른 서비스무역협정(조약 2391호, 2018. 8. 1.), 대한민국과 터키공화국간의 자유무역지대를 창설하는 기본협정에 따른 투자에 관한 협정(조약 2390호, 2018. 8. 1.), 대한민국과 터키공화국간의 상품무역협정(조약 2134호, 2013. 5. 1.),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자유무역협정에 관한 서한교환(조약2082호, 2012. 3. 15) 등이 있다. 이들 조약들도 본협정에 준하는 입법사항 또는 재정적 부담을 야기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국회동의를 받은 근거로 보인다.

자유무역협정이나 자유무역협정을 모조약으로 하는 조약이 아닌 무역관련 조약으로 유일하게 국회동의를 받아 체결 비준한 조약은 대한민국과 말라야연방간의 무역협정(조약 105호, 1962년 12월 31일 발효)이다. 이 협정은 무역협정 중 이른 시기에 체결되었고, 5.16 후 그 당시 의회 역할을 수행하였던 국가재건최고회의의 동의를 받아 체결·비준되었다. 협정 문언에 최혜국대우가 명백하게 규정되었고 의무의 엄격성을 약화시키는 문언이 다른 무역협정에 비교하여 적다는 점이 비교될 수 있으나 최혜국대우를 명시적 언급한 다른 무역협정이 있다는 점에서 도드라진 특징이라고 보기 어렵다. 이 조약 이전과 이후에 유사한 내용을 가진 무역협정은 국회동의를 받은 적이 한번도 없어 혁명정부가 운영되고 정규적인 입법기관이 부재하던 시기의 조약체결 관행으로 조약 체결·비준에 대한 국회동의 여부의 기준을 추론하는데는 의미가 적은 것으로 보인다.

반면에, 자유무역협정의 내용을 새로운 입법사항이나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내용 없이 개정하는 조약의 경우에는 국회동의를 받지 않았다. 그러한 예로는 대한민국과 터키공화국간의 자유무역지대를 창설하는 기본협정에 따른 서비스무역에 관한 협정부속

서 라의 수정을 위한 교환각서(조약 2392호, 2018. 8. 1.),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자유무역협정의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 개정에 관한 교환각서(조약 2166호, 2014. 1. 1.), 대한민국과 터키공화국간의 자유무역지대를 창설하는 기본협정에 따른 서비스 무역에 관한 협정 부속서 라의 수정을 위한 교환각서(조약 2392호, 2018. 8. 1.), 통일상품명 및 부호 체계 2012를 반영하기 위한 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간의 자유무역협정 부속서 4(원산지규정) 개정에 관한 교환각서(조약 2357호, 2017. 7. 1.), 2012 통일상품명 및 부호 체계를 반영한 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간의 자유무역협정 부속서 4 개정에 관한 교환각서(조약 2303호, 2016. 8. 10.), 대한민국과 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부속서 1 제21조 제1항 및 제24조 제7항 개정(조약 2329호, 2017. 1. 1.) 등이 있다. 또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자유무역협정의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 개정에 관한 교환각서(조약 2166호, 2014. 1. 1.) 등과 같이 자유무역협정을 큰 변경없이 수정하거나⁹²⁾ 대한민국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간의 자유무역협정 착오정정을 위한 교환각서(고시 521, 2005.3.15.) 등과 같이 모조약의 착오 정정, 대한민국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간의 자유무역협정 부속서 3.4 부록 제2절 영어본 부가를 위한 교환각서(고시487, 2004.4.1.)와 같이 다언어본(多言語本)을 추가시키기 위한 조약 등의 경우에도 국회동의를 받지 않았다.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해 체결된 모조약에 수반되는 조약으로 입법사항이나 재정적 부담을 지우지 않는 경우에는 대부분 고시류 조약으로 체결되었고 따라서 국회동의를 받지 않았다. 그러한 예로는 대한민국 정부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3장(경제협력)에 따른 경제협력을 위한 이행약정(고시 874호, 2015. 12. 20.),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22.10조에 따른 모범절차규칙 제정을 위한 교환각서(고시 770호, 2012. 6. 1.),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자유무역협정의 섬유 또는 의류 상품에 대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에 관한 교환각서(고시 785호, 2012. 12. 24.), 대한민국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간의 자유무역협정 부속서 8B(전기 및 전자장비에 관한 분야별 부속서)의 제정을 위한 교환각서(고시 640호, 2008. 2. 1.) 등이 그런 부류의 조약들이다.

92) 예를 들어, 대한민국과 터키공화국간의 자유무역지대를 창설하는 기본협정에 따른 서비스무역에 관한 협정부속서 라의 수정을 위한 교환각서(조약 2392호, 2018년 8월 1일 발효).

대한민국정부와 태국정부간의 무역협정의 부표 수정(고시5호, 1976. 12. 14.)을 비롯한 40개의 고시로 공표된 조약의 경우에는 그 내용이 어떠한 국회동의 없이 체결되고 관보에 게재되었다. 고시류 조약의 경우 대부분 위 태국정부 무역협정의 부표수정이나 대한민국상공자원부와 불란서공화국 산업체신대외무역부간의 산업협력위원회 설립에 관한 약정과 같이 정부 담당부처간에 모조약에서 위임되거나 모조약의 관련 규정이행을 위해 체결되는 것으로 재정적 부담 또는 입법사항을 담고 있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을 경우 모조약상 위임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조약을 이행하기 위한 묵시적 위임으로 보아 부처간에 고시류 조약을 체결하면서 실질적으로는 입법사항이나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내용을 담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모조약을 종료시키는 조약의 경우 모조약의 이행을 위하여 제정되거나 개정되었던 국내법이 있는 경우 이를 다시 개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외교통상부의 세계무역기구 도하개발아젠다 국제신탁기금 출연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와 세계무역기구간의 양해각서(고시 490호, 2004. 4. 27.)의 경우 35만 달러의 신탁기금출연을 약속하고 있어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문서이다. 물론 헌법상의 조건 상 ‘중대한’ 재정적 부담이라는 한정으로 인해 그 정도의 재정부담이 반드시 국회동의를 득하여야 하는 재정적 부담은 아니라고 본다.

자유무역협정이 아닌 형태로 체결된 일반 무역협정들은 일부 조약은 무역관계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 최혜국대우 또는 그에 해당하는 특혜를 부여하는 내용 등을 규정하고 있어⁹³⁾ 관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동의를 받지 않고 체결되었다. 이들 조약은 대부분 칠레와의 자유무역협정 체결 이후 무역관계가 자유

93) 예를 들어, 대한민국정부와 버어마연방 정부간의 무역협정(조약 125호, 1964.6.17.) 제3조는 각 계약국은 수출입에 관련된 관세 및 세금 기타 공과금 그리고 수출입허가를 포함한 수출입 절차나 규칙에 관한 제반 문제에 있어서 타방당사국에게 최혜국대우를 부여한다고 규정하여 ‘최혜국대우’를 명시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반면에, 대한민국정부와 이란회교공화국정부간의 무역협정(조약 1953호, 2009. 6. 3.) 제2조 제1항은 계약당사자는 수출입에 대하여 또는 수출입과 관련하여 부과되는 모든 종류의 관세 및 부과금과 동 관세·부과금의 징수 방법, 통관·통과·입고 및 환경과 관련된 규정 및 절차를 포함하여 수출입에 관련된 모든 규정 및 절차, 수입품에 직·간접으로 부과되는 모든 종류의 조세 및 기타 부과금 등에 대하여 제3국산 또는 제3국행의 동종의 재화 및 상품에 부여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상호 부여하기로 규정하여 간접적인 규정을 하고 있다.

무역협정을 통하여 무역, 투자, 지적재산권 등의 포괄적 협력관계를 규율하기 시작하기 이전에 체결하였던 조약들로 에티오피아, 유럽연합, 슬로베니아, 이집트, 우크라이나, 불가리아, 크로아티아, 리투아니아, 베트남 등 89개국과 체결하였다. 하지만 칠레와의 자유무역협정 이후에도 일부 국가들과 자유무역협정이 아닌 무역협정을 체결하였는데 이들 조약들도 자유무역협정과는 달리 국회동의 없이 체결 비준되었다. 칠레와의 무역협정 이후에 체결된 무역협정으로는 이란과 체결한 대한민국정부와 이란회교공화국 정부간의 무역협정(조약 1953호, 2009. 6. 3.)을 비롯하여 아랍에미리트(조약1895호, 2008. 4. 16.), 리비아(조약 1838호, 2007. 2. 26.), 아르헨티나(조약 1816호, 2006. 10. 25.), 레바논(조약 1783호, 2006. 5. 26.), 벨라루스(조약 1705호, 2004. 11. 8.) 등과 체결한 조약 들이 있다.

이들 무역협정에 대하여 말레이지와의 무역협정을 제외하고 국회동의를 받지 않은 것은 WTO체제 이전에 주로 체결된 무역협정들은 GATT라는 다자무역체제가 가동되기 시작하면서 동다자무역체제의 예외로서 인정되는 ‘자유무역지대’를 설정하는 것이 아니라 동조약체제 내에서의 협력관계 설정에 초점을 맞추어 국내 입법필요성이나 재정적 부담 등이 없거나 소규모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들 무역협정 문언에서 ‘최대한도로 무역량을 발전시키고자 하는 양 체약국의 희망을 표시한다’,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로 한다’⁹⁴⁾, ‘가능한 한 호혜적 대우를 상호 부여한다’⁹⁵⁾ 등 법적 의무성이 엄격하지 않은 표현을 하고 있는 조약이 많다는 점도 주목된다. 하지만 자유무역협정(FTA)은 내용이 포괄적이고 이행을 위한 국내입법 사항이 존재할 뿐만아니라 WTO라는 다자무역규제체제의 예외를 이루는 자유무역지대를 창설하게 되어 영향이 크다는 점에서 국회동의 여부에서 다른 취급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리하여 자유무역협정이 아닌 일반 무역협정은 WTO출범이후 체결되었다 하더라도 여전히 국회동의를 받지 않고 있다고 추론된다.

94) 예를 들어, 대한민국정부와 태왕국정부간의 무역협정(조약 82호, 1961. 9. 15), 제1조, 제2조.

95) 예를 들어, 대한민국정부와 월남공화국 정부간의 무역협정(조약 104호, 1962. 12. 19), 제3조.

이들 무역협정을 개정하는 조약, 이행을 위한 종료, 종료시키기 위한 조약 등도 국회동의 없이 체결비준되었고 주로 고시류 조약으로 체결되었다. 대한민국정부와 스웨덴왕국 정부간의 무역관계에 관한 의정서 및 그 부속 교환각서의 종료(고시338, 1998.4.26.) 등과 같은 조약이 그러한 예이다.

(2) 무역관련 다자조약

무역관련 다자 조약 68건 중 국회동의를 받은 것은 20건으로 29.4%가 동의를 받아 11%에 불과하였던 무역관련 양자조약에 비교하여 국회동의 절차를 밟은 조약의 비율이 상당히 높은 편이다.

국회동의를 받은 조약들을 보면 우선 자유무역협정과 그 관련 조약들이 8건으로 가장 많다. 이들 조약에는 대한민국과 중미공화국들간의 자유무역협정(조약 2431호, 2019. 10. 1.),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간의 자유무역협정(조약 2263호, 2015. 12. 1.), 태국왕국의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 하의 상품무역에 관한 협정 가입의정서(조약 1983호, 2010. 1. 1.), 태국왕국의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 하의 서비스무역에 관한 협정 가입의정서(조약 2019호, 2010. 1. 1.),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 하의 서비스무역에 관한 협정(조약 1945호, 2009. 5. 1.),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하의 상품무역에 관한 협정(조약 1852호, 2007. 6. 1.), 대한민국과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간의 자유무역협정에 대한 최종의정서(조약 1804, 2006.9.1.) 등이 포함될 수 있다. 다자기구와의 자유무역협정의 경우 새로운 가입국으로 회원국 구성이 변화가 있을 때에도 이를 반영하기 위한 개정조약의 경우에도 국회동의를 받았는데 그러한 예로는 크로아티아의 유럽연합가입을 고려하기 위한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의 추가의정서(조약 2273호, 2016. 1. 1.)가 있다.

두 번째 부류는 다자무역협정으로 4건의 조약이 이에 속한다. 여기에는 아시아 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의 개발도상국회원국간 무역협상에 관한 제1차협정(방콕협정)에 대한 개정으로서 아시아 태평양무역협정(조약 1802호, 2006. 9. 1.),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의 개발도상국회원국간의 무역협상에 관한 1차협정(조약 574호, 1976. 6. 17.), 대한민국과 구주공동체 및 그 회원국간의 무역과 협력을 위한 기본협정(조약 1554호, 2001. 4. 1.), 개발도상국간 무역협상에 관한 의정서(조약 462호, 1973. 2. 11.)가 있다.

세 번째 부류는 무역관련 국제기구와 관련된 조약으로 6건의 조약들이 이 부류에 포함될 수 있다. 이들 조약으로는 세계무역기구설립을 위한 마라케쉬 협정 부속서 1 가 중 1994년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에 대한 마라케쉬의정서에 부속된 대한민국 양허표 일부개정(조약 1755호, 2005. 11. 23.), 세계무역기구(WTO)설립을 위한 마라케쉬협정(조약 1285호, 1995. 1. 1.),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7조의 시행에 관한 협정 및 의정서(조약 729호, 1981. 2. 6., 국가보위입법회의 동의),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에 대한 제네바의정서에 대한 추가의정서(조약 728호, 1981. 1. 1.),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에 대한 1967년 제네바의정서(조약 274호, 1968. 5. 2.),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에의 가입을 위한 의정서(조약 243호, 1967. 4. 14.) 등이다. 이들 조약들은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이라는 것과 ‘중요한 국제조직’⁹⁶⁾에 관한 조약이 국회동의의 근거가 된 것으로 보인다.

네 번째 부류는 특정 품목의 무역에 관한 조약으로 2건의 조약이 여기에 포함된다. 이들 부류 조약에는 1971년 소맥무역협약(조약 417, 1972.3.7.)과 1967년 소맥무역협약(조약 279, 1968.5.2.)이 있다. 이 두 다자조약은 여러 품목별 무역협약의 체결·비준 전에 국회동의를 받은 두 번의 예외적 경우이다. 이후 체결된 직물류 국제무역에 관한 약정(조약 497호, 1974. 3. 18.), 1986소맥무역협약(조약 924호, 1987. 7. 1.), 1995곡물무역협약(조

96) 헌법은 국제조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어 그 표현을 그대로 사용하였으나 오늘날 국제기구라는 용어로 통일되어 가고 있고 외교부의 조직명칭에서도 국제기구라는 용어(국제기구국)를 사용하고 있다. 이 용어 사용에 대한 견해는 정인섭, “국제기구에 관한 조약의 국회동의”, 국제법학회논총, 제56권 제3호(2011), 182-183면.

약 1350호, 1996. 3. 4) 등은 국회동의를 받지 않았다. 이는 전체적으로 볼 때 국회동의절차를 가급적 제한하려는 경향의 반영이라고 보여진다.

조약 명칭과 내용으로 보아 입법사항 및 재정적 부담을 수반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을 것으로 보임에도 불구하고 국회동의를 받지 않은 조약들도 있다. 그런 조약으로는 개발도상국간 특혜무역제도에 관한 협정(GSTF, 조약 977호, 1989. 6. 11.),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에 관한 제2차 제네바의정서(조약945호, 1988. 1. 1., 이에 반하여 동일제목의 1차의정서는 국회동의를 받았던 것과 비교된다),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6조 시행에 관한 협정(조약 877호, 1986. 3. 26.), 아시아태평양무역협정에 대한 2차 개정(조약 2389호, 2018. 7. 1.- 이와 달리 동일 조약의 1차 개정은 국회동의를 받았던 것과 비교된다),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협정부속서 부속서 1 가 중 1994년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에 대한 마라케쉬 의정서에 부속된 대한민국 양허표개정(조약 2326호, 2016. 12. 1.-이와 달리 2005년 11월 23일 발효한 양허표개정(조약 1755)은 국회동의를 받은 것과 비교된다), 세계무역기구설립을 위한 마라케쉬 협정 개정의정서(조약 2345호, 2017. 2. 22.) 등을 들 수 있다. 이들 조약들의 규정내용을 살펴보면 관세에 영향을 미쳐 재정적 부담이 있을 수 있고 앞서 동일 모조약하에서 체결된 유사한 개정조약은 국회동의를 받았던 것들이어서 헌법규정에 따른 국회동의 절차 진행에 일관성이 없게 된 사례로 보인다.

모조약의 이행을 위한 조약이나 경미한 내용의 변경이 이루어진 무역관련 다자조약은 양자조약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국회동의를 받지 않았다. 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에 대한 제5의정서 금융수정양허표(고시 367호, 1999. 9. 13), 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5의정서(고시 411호, 2001. 4. 3.)가 이러한 부류에 속하는 조약이다. 또한 모조약을 개정하는 조약의 경우에도 입법사항이 없거나 재정적 부담이 없거나 소규모이면 국회동의를 받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세계무역기구설립을 위한 마라케쉬협정 부속서 1 가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 부속서 나호 정정(고시 411호, 2001.4.1.)이 그러한 예라고 하겠다.

(3) 관세관련 조약

관세관련 조약 총 22건(양자 4건, 다자 18건(이중 고시류 조약 4건)) 중 국회동의를 받아 체결비준된 조약은 총 5건(양자 1건, 다자 4건)으로 22.7%의 비율을 보여주고 있다.

관세관련 양자조약 4건 중 대한민국정부와 사우디아라비아왕국 정부 간의 양국 항공운수 기업활동에 부과되는 조세 및 관세의 상호면세를 위한 협정(조약 1057, 1991.7.18.)만이 국회동의를 받아 체결·비준되었다. 반면에 유사한 성격을 가진 대한민국 정부와 쿠웨이트국 정부간의 지정항공사 활동과 장비에 관한 조세와 관세의 면세를 위한 약정(조약 871, 1985. 12.1)은 국회동의를 받지 않았다. 또한 당시 월남(조약 47호, 1959. 1. 1.)과 프랑스(조약 108호, 1963. 4. 1.)와 체결한 양국 정부간 관세에 관한 각서교환도 국회동의를 받지 않았다. 관세에 관한 조약은 재정에 영향을 미치고 입법이 필요할 수 있는 경우가 많은데, 동의를 받지 않은 세 조약은 약정(Arrangement), 각서교환(Exchange of Note) 등 덜 공식적인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관세를 주로 다룬 18개의 다자조약 중 국회동의를 받은 것은 4조약 뿐이다. 이들 조약은 국제도로 면세통과 증서의 담보 하에 행하는 화물의 국제운송에 관한 관세협약(TIR Convention, 조약 773호, 1982. 7. 28.), 관세율표상 물품의 분류를 위한 품목 분류에 관한 협약 및 수정의정서(조약 284호, 1968. 10. 2.), 관세목적에 위한 물품의 평가에 관한 협약(조약 283호, 1968. 10. 2.), 관세협력이사회 설립에 관한 협약(조약 275호, 1968. 7. 2.) 등이다. 이중 관세협력이사회 설립에 관한 협약은 중요한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으로 명백하게 그 근거가 드러나지만 다른 3조약은 국회동의를 받지 않은 다른 조약과 차별성이 두드러지지 않는다. 결국 이들 조약의 성격으로 보아 동조약 이행을 위한 관세관련 국내법 제개정이 필요하였던 것으로 짐작된다. 이는 과학장비의 일시수입에 관한 관세협약(조약 854호, 1985. 4. 19.), 교육용구의 일시수입에 관한 관세협약(조약 791호, 1982. 9. 18.), 작업용구의 일시수입에 관한 관세협약(조약 642호, 1978. 7. 3.), 선원의 후생용품에 관한 관세협약(조약 561호, 1976. 1. 21.) 등과 같이 무역물량이 제한적이거나 적용기간을 제한

한 경우에는 국회동의를 받지 않은 것과 비교하여 볼 수 있다.

하지만 컨테이너에 관한 관세협약(조약 854호, 1985. 4. 19.) 등과 같이 무역과 관련하여 중요성이 큰 조약도 국회동의를 받지 않은 것은 판단기준에 대한 모호성을 더하는 경우라고 하겠다.

(4) 재정관련 조약

차관을 제공받는 차관도입조약과 차관을 제공하는 차관공여조약을 포괄하는 재정관련 조약은 모두 양자조약으로 체결되었는데 462건(조약 183건, 고시 279건)에 달한다. 이 중 국회동의를 받아 체결 비준된 조약의 수는 108건으로 약 23.4%(조약에 한정할 경우 39.6%)이다. 이러한 비율은 1990년을 전후하여 급격한 변화를 겪었다. 즉, 1990년 이전에 체결된 107건의 차관조약 중 12건만 국회동의 없이 체결되고 95건이 국회동의하에 체결되어 88.8%가 국회동의를 받았다. 이에 반하여 1990년에 체결되었던 대한민국정부와 일본국 정부간의 제7차 일본 해외경제협력기금(OECF)차관에 관한 교환각서(조약 1016호, 1990. 9. 11.) 이후에 체결된 355건의 차관조약들의 경우에는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연합간의 개발을 위한 정보통신기술 아시아 태평양 훈련센터를 위한 행정 및 재정조치에 관한 협정(조약2004호, 2010. 4. 13.)만이 유일하게 국회동의를 받아 체결·비준되었다. 유일하게 국회동의를 받은 이 차관조약도 대외경제협력기금이라는 국내법하에 이미 국회 심의와 감독하에 설립되고 운영되는 자금에 의하여 지원되는 다른 국가와의 차관공여조약이 아니라 국제연합이라는 국제기구와 체결하였고 일반 재정에서 대외협력기금이 아닌 일반 재정지출이 필요하였다는 점에서 그 이유를 찾아볼 수 있다. 이 협정은 또한 100억원 내외의 규모로 제공되는 일반 차관공여협정과 달리 750만 달러의 기금 기여와 1,687평방미터의 사무실공간 및 주차장 등 부대시설을 제공하여야 하는 재정부담이 규정되어 있는데 이러한 부담이 ‘중대한’ 재정부담이라고 본 것으로 짐작된다.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의 판단에 절대적 기준은 될 수 없겠지만 좋은 참고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1990년 이전에는 주로 차관을 도입하는 입장이었던 대한민국이 거의 모든 차관도입조약을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으로 간주하여 국회의 동의를 받아 체결하였던 반면⁹⁷⁾, 1988년 대한민국정부와 인도네시아공화국 정부간의 대인도네시아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공여에 관한 각서교환(조약 963호, 1988. 11. 10.)이라는 최초의 차관공여조약이 체결된 후 체결된 모든 차관공여조약에 대하여는 국회동의를 받지 않고 조약을 비준하고 있다. 더구나 타국정부에 차관공여를 하는 경우에는 각 국가마다 차관공여를 위한 기본원칙과 공여상한액 및 행정사항 등을 정하는 기본조약만 조약으로 체결하고 실제 차관공여를 위한 실무조약은 고시류 조약으로 체결되고 있다는 점도 국회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게 된 이유이다. 실제로 1990년 이전의 차관조약은 9건의 고시류조약으로 체결된 것을 제외하면 모두 조약으로 체결되었고 이들 대부분의 조약은 모두 국회동의를 받아 체결·비준되었었다.

1990년 이전의 차관조약 중에 국회동의를 받지 않은 조약들은 경미한 내용의 개정조약 또는 직접적 재정지원을 약속하는 내용을 담지 않은 조약이거나 차관액수가 다른 조약들에 비교하여 현저히 소액이었던 경우였던 것으로 분석된다. 예를 들어, 대한민국과 일본국 해외협력기금간의 차관계약의 중재규칙에 관한 협정(조약 189호, 1965. 12. 18.)과 같이 직접적인 재정지원이 아닌 조약, 대한민국정부와 일본국 정부간의 농수산개발을 위한 2천만불 엔차관협정(1971)의 개정협정(교환각서, 조약472호, 1973. 2. 16.)과 같은 경미한 변경을 가한 개정조약 등이 전자의 예이다. 또한 대한민국정부와 독일연방공화국 정부간의 재정원조에 관한 협정(조약 487호, 1973. 11. 20.)은 다른 독일과의 차관협정은 도입되는 차관액수가 최소 1,500만 마르크내지 7,000만 마르크에 달하였으나 이 협정은 650만 마르크로 소액이어서 중대한 재정적 부담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차관총액이 368만 달러에 불과하였던 위성통신지구국 건설을 위한 대한민국과 미국 수출입은행간의 차관협정(조약 282호, 1968. 7. 25.)의 경우도 그러하다.

97) 1973년 제정된 공공차관의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경제기획원장관이 차년도 공공차관 추진계획을 미리 국회의 의결의 받아 사업을 추진하도록 규정하여 이후 대부분의 차관도입조약은 조약으로 취급되지 않은 채 관보에만 공고되었다. 정인섭, “조약체결에 관한 국회의 동의제도-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을 중심으로.” 「법학」,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제43권 제3호(2002), 83면.

1988년 차관공여가 시작된 후 한건의 조약도 국회동의를 받지 않았다. 이에 대하여 차관공여조약은 차관의 재원이 대외협력기금법에 근거하여 지출되므로 이미 국회가 제정한 법률로 위임된 조건에 맞게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면 국회동의를 필요없다고 보는 견해가 있다.⁹⁸⁾ 반면에 근거법상 용도에 맞는 차관공여라 하더라도 법에 근거한 예산사용이 매년 국회의 승인을 받는 것과 마찬가지로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인가를 따져 필요한 경우 국회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⁹⁹⁾ 전자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본다. 왜냐하면 차관공여예산이 제한되어 있어 일정한 규모 이상의 차관공여가 자체적으로 자제될 수 있고 외교정책에 따른 필요에 따라 시의성 있게 지원되는 것이 필요할 것이기 때문이다. 다만 관련법에 따라 근거가 마련된 대외경제기금이 아닌 일반 국가예산에 의존하는 차관공여의 경우에는 재정적 부담정도, 입법사항여부 등의 해당여부를 따져야 할 것이다.

한국의 경제규모와 정부예산 규모가 커지면서 우리나라의 공적원조(ODA)예산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차관공여의 규모가 어느 정도에 이르러야 ‘중대한 재정부담’을 주는 것인지를 판단하기가 쉽지 않고 과거의 사례도 명확한 기준을 제공해 주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1973년 1,500만 마르크 차관도입협정은 국회동의를 받은 반면에, 650만 마르크 또는 386만 달러의 차관도입 등이 국회동의 없이 이루어진 것을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비교적 최근인 2010년에 국제연합과 체결한 협정에서 동기구의 아시아훈련센터에 제공된 750만불과 1,600여 평방미터의 사무실공간 및 부대시설 제공은 ‘중대한 재정적 부담’으로 보아 국회동의를 필요했던 것으로 판단하였던 것도 앞으로의 국회동의 여부의 판단기준으로 참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5) 투자협정

헌법 제60조 제1항에서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한 조약의 유형 중 우호통상항해조약 (Treaty of Friendship, Commerce and Navigation : FCN Treaty)이 있는데, 이는 주로 우호

98) 박세진, “조약심사기준과 조약심사업무 개선방안”, 『순간법제』, 제287호(1987), 32면.

99) 정인섭, 앞의 논문, 92면.

관계에 있는 국가 간에 통상과 항해에 관한 권리·의무를 설정하는 조약으로, 당사국 국민의 출입국·거주 및 영업에 관하여 규정하며, 과거에 국가들이 수교하면서 우호·통상 및 항해에 관한 사항을 하나의 문건으로 합의하는 방식을 의미한다.¹⁰⁰⁾ 우호통상항해조약은 보통 양자조약의 형태를 띠면서, 항해, 군사, 무역, 자국민의 권리보호, 자국 상인들의 대외 활동 보장, 종교의 자유, 형사상의 제반 권리, 관세, 토지 사용, 투자자에 대한 최혜국대우와 내국민대우의 원칙, 자유송금 등을 포함하는 등¹⁰¹⁾ 우리나라와 타국 간의 정치·경제 분야의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는 조약이다. 그런데 이 유형은 광범위한 내용 속에 관세나 재정문제들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서, 관세나 무역협정의 경우가 이 조약에 포함되거나 이 자체가 모조약이 되어 관세나 무역에 관한 고시류 조약을 생성하기도 한다.

우호통상항해조약의 예로는 투자협정¹⁰²⁾, 이종과세방지협정¹⁰³⁾, 특정한 형태의 이익을 부여하거나 일정한 특권을 부여하는 것으로서 자국민이나 자국 회사 혹은 제3국 투자자에 부여하는 정부 보조금이나 세금 감면 등을 타방국에 부여하는 특권 및 면제에 관한 협정이나 과세방지협정, 대외경제협력기금을 통한 무상지원협정 등이 있다. 국회의 동의를 받았던 우호통상항해조약의 전형적인 예로는 1957년 한미 우호통상항해조약¹⁰⁴⁾, 1965년 한일 기본관계에 관한 조약¹⁰⁵⁾ 등이 있지만, 우호통상적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볼만한 것임에도 국회의 동의를 받지 않았던 경우들로는 경제협력협정, 무역협정, 투자보장협정¹⁰⁶⁾ 등을 들 수 있다. 그런데 외교관행상 우리 정부는 경제·통상 분야에서의 협력 사항

100) 헌법재판소, 국제조약과 헌법재판(2007), 453면.

101) 법무부, 「양자간 투자협정 연구」(2001), 3-4면.

102) 우리나라가 체결한 투자협정들은 보호의 대상이 되는 투자를 구체적으로 나열하고 있으면서도 사실상 거의 모든 분야를 나열함으로써 투자자의 범위를 넓게 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법무부, 위의 책, 10면].

103)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에 따른 소득 발생시, 동일한 소득에 대해 우리나라와 투자진출국에서 모두자국세법에 따라 과세함으로써 투자진출 기업은 이중과세의 부담을 지게 되는 바, 이러한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국 간 과세권을 조정하는 조약으로, 2019년 10월 현재 총 95개국 체결(발효 93, 미발효 1, 효력정지 1)되어 있다.[우리나라 이중과세방지협정 체결현황(2019.10),

http://www.mofa.go.kr/www/brd/m_4059/view.do?seq=365909&srchFr=&srchTo=&srchWord=&srchTp=&multi_itm_seq=0&itm_seq_1=0&itm_seq_2=0&company_cd=&company_nm=&page=1

104) 1956. 11. 28 서명, 1957. 11 7 발효, 조약 제40호.

105) 1966. 6. 22 서명, 1965. 12 18 발효, 조약 제163호.

106) 투자보호 및 보장을 위한 협정은 투자촉진, 투자촉진 및 보장, 투자보장, 투자보호 등 다양한 형태가 있다(법무부, 위의 책, 7면). 2019년 10월 현재, 총 99개국 체결, 5개(발효 86, 미발효, 5, 종료 8)이다

에 관한 국가 간 권리·의무 관계를 규율하기 위해 체결되는 조약의 한 형태를 ‘경제협정’이라고 분류하고 있는데, 이 유형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많은 다자조약이 등장함과 함께 항공, 해운, 과학기술, 투자보장 등 경제·통상 분야의 전문적, 기술적 분야에 대한 양자 간 조약 체결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해당 분야에서 널리 이용되는 조약의 한 형태로 자리 잡게 된 것으로 설명된다¹⁰⁷⁾.

< 경제협정 등 기 체결된 국제조약의 국회동의 대상 사유 정리표 >¹⁰⁸⁾

1. 양자조약

연번	조약 번호	조 약 명	국회동의 사유
1	1861	대한민국 정부와 러시아연방 정부 간 외기권의 탐색 및 평화적 목적의 이용분야에서의 협력과 관련된 기술보호에 관한 협정 및 2006년 10월 17일의 대한민국 정부와 러시아연방 정부 간의 외기권의 탐색 및 평화적 목적의 이용 분야에서의 협력과 관련된 기술보호에 관한 협정에 관한 의정서 (우주기술보호협정 및 의정서)	주권제약
2	1979	대한민국 정부와 이란회교공화국 정부 간의 소득 및 자본에 대한 조세에 관한 이중과세방지협정	입법사항
3	2142	대한민국 정부와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 간의 본부 협정	입법사항
4	2155	대한민국과 녹색기후기금 간의 녹색기후기금의 본부에 관한 협정	주권제약
5	2171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부흥개발은행, 국제개발협회, 국제금융공사, 그리고 국제투자보증기구 간의 대한민국 내 사무소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협정	주권제약
6	2185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홍콩특별행정구 정부 간의 수형자이송에 관한 협정	입법사항
7	2190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5조에 대한 특별조치에 관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협정 (9차 방위비분담협정)	재정부담

[우리나라 투자보장협정 체결현황(2019.10),

http://www.mofa.go.kr/www/brd/m_4059/view.do?seq=365930&srchFr=&srchTo=&srchWord=&srchTp=&multi_itm_seq=0&itm_seq_1=0&itm_seq_2=0&company_cd=&company_nm=&page=1]

107) http://www.mofa.go.kr/www/wpge/m_4058/contents.do

108) 이 표는 외무부 홈페이지에 공고되어 있는 국제조약 목록을 참고하여 정리한 것이며, 국회 동의 사유 중 ‘주권제약’이나 ‘중요한 국제조직’에 관한 사유로 동의를 받았던 경우일지라도 재정이나 입법사항과 관련된 내용이 포함된 경우는 목록에 포함하였다.

연번	조약 번호	조 약 명	국회동의 사유
8	2215	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입법사항
9	2216	대한민국과 캐나다 간의 자유무역협정	입법사항
10	2229	대한민국 정부와 러시아연방 정부 간의 문화원 설립과 운영에 관한 협정	입법사항
11	2232	대한민국 정부와 말레이시아 정부 간의 범죄인 인도에 관한 조약	입법사항
12	2233	대한민국과 태국 간의 민사 및 상사 사법공조 조약	입법사항
13	2238	대한민국 정부와 스웨덴왕국 정부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	입법사항
14	2269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입법사항
15	2270	대한민국 정부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입법사항
16	2271	대한민국과 뉴질랜드 간의 자유무역협정	입법사항
17	2273	[다자조약] 크로아티아의 유럽연합 가입을 고려하기 위한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의 추가의정서	입법사항
18	2299	대한민국과 콜롬비아공화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입법사항
19	2305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국제 납세의무 준수 촉진을 위한 협정	입법사항
20	2306	대한민국 정부와 인도공화국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예방을 위한 협정	입법사항
21	2307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홍콩특별행정구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방지 및 탈세예방을 위한 협정	입법사항
22	2309	대한민국과 타지키스탄공화국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방지 및 탈세예방을 위한 협약	입법사항
23	2311	1991년 6월 21일 서울에서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폴란드공화국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의 개정의정서	입법사항
24	2312	대한민국 정부와 브루나이다루살람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예방을 위한 협정	입법사항
25	2316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민간과 평화적 목적의 항공 및 대기권과 외기권의 탐사와 이용에서의 협력을 위한 기본협정	입법사항
26	2318	대한민국과 세르비아공화국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한 협약	입법사항
27	2319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간의 대한민국의 유럽연합 위기관리활동 참여를 위한 기본협정	재정부담
28	2321	대한민국 정부와 조지아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예방을 위한 협정	입법사항
29	2322	대한민국 정부와 저지 정부 간의 조세정보 교환을 위한 협정	입법사항
30	2323	대한민국 정부와 투르크메니스탄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예방을 위한 협약	입법사항

연번	조약 번호	조 약 명	국회동의 사유
31	2324	대한민국 정부와 영국령 버진제도 정부 간의 조세정보 교환에 관한 협정	입법사항
32	2327	대한민국 정부와 안도라공국 정부 간의 조세정보 교환에 관한 협정	입법사항
33	2328	대한민국 정부와 건지 정부 간의 조세정보 교환을 위한 협정	입법사항
34	2336	대한민국 정부와 사모아독립국 정부 간의 조세에 관한 정보교환을 위한 협정 (조세정보교환협정)	입법사항
35	2337	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	입법사항
36	2338	대한민국 정부와 핀란드공화국 정부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	입법사항
37	2346	대한민국 정부와 모리셔스공화국 정부 간의 조세정보 교환에 관한 협정	입법사항
38	2347	대한민국 정부와 케냐공화국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예방을 위한 협약	입법사항
39	2348	대한민국 정부와 케냐공화국 정부 간의 투자의 증진 및 보호에 관한 협정	입법사항
40	2349	대한민국과 아랍에미리트연합국 간의 형사사법공조조약	입법사항
41	2350	대한민국과 아랍에미리트연합국 간의 범죄인인도조약	입법사항
42	2359	대한민국 정부와 (캐나다) 퀘벡 정부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양해서	입법사항
43	2367	대한민국과 에티오피아연방민주공화국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예방을 위한 협약	입법사항
44	2382	대한민국과 이란이슬람공화국 간의 형사공조조약	입법사항
45	2383	대한민국과 이란이슬람공화국 간의 범죄인인도조약	입법사항
46	2385	대한민국 정부와 카메룬공화국 정부 간의 투자 증진 및 보호에 관한 협정	입법사항
47	2390	대한민국과 터키공화국 간의 자유무역지대를 창설하는 기본 협정에 따른 투자에 관한 협정	입법사항
48	2391	대한민국과 터키공화국 간의 자유무역지대를 창설하는 기본 협정에 따른 서비스무역 협정	입법사항
49	2397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적십자위원회 간의 협정	중복사유
50	2401	대한민국 정부와 미얀마연방공화국 정부 간의 투자의 증진 및 보호에 관한 협정	입법사항
51	2402	대한민국 정부와 코스타리카공화국 정부 간의 조세정보 교환을 위한 협정	입법사항
52	2403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을 개정하는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의정서	입법사항
53	2404	2011년 2월 10일 서한교환을 개정하는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의정서	입법사항
54	2405	대한민국과 페루공화국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	입법사항
55	2412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5조에 대한 특별조치에 관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협정(방위비분담특별협정)	재정부담

연번	조약 번호	조 약 명	국회동의 사유
56	2425	대한민국 정부와 룩셈부르크대공국 정부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	입법사항
57	2430	대한민국과 슬로베니아공화국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	입법사항
58	2431	[다자조약] 대한민국과 중미 공화국들 간의 자유무역협정	입법사항
59	2432	대한민국 정부와 아르메니아공화국 정부 간의 투자의 증진 및 상호 보호에 관한 협정	입법사항
60	2434	대한민국과 크로아티아공화국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	입법사항

2. 다자조약

연번	조약 번호	조 약 명	국회동의 사유
1	773	국제도로 면세통과 증서의 담보하에 행하는 화물의 국제운송에 관한 관세협약 (TIR convention)	입법사항
2	1876	국제항공운송에 있어서의 일부 규칙 통일에 관한 협약	입법사항
3	1878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 제21조 및 제22조 수락선언	주권제약
4	1884	국제핵융합실험로 사업의 공동이행을 위한 국제핵융합에너지 기구 설립에 관한 협정	입법사항
5	1885	국제핵융합실험로 사업의 공동이행을 위한 국제핵융합에너지 기구의 특권 및 면제에 관한 협정	입법사항
6	1896	국제연합 부패방지협약	입법사항
7	1921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간의 한-아세안센터 설립에 관한 양해각서	주권제약
8	1928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주권제약
9	1945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 하의 서비스무역에 관한 협정	입법사항
10	1983	태국왕국의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 하의 상품무역에 관한 협정 가입 의정서	입법사항
11	1993	민사 또는 상사의 해외증거조사에 관한 협약	입법사항
12	2008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협약	입법사항
13	2010	국제재생에너지기구 규정	중요한 국제조직
14	2014	1992년 유류오염 손해보상을 위한 국제기금의 설치에 관한 국제협약에 대한 2003년 의정서	입법사항

연번	조약 번호	조 약 명	국회동의 사유
15	2019	태국왕국의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 하의 서비스 무역에 관한 협정 가입 의정서	입법사항
16	2046	대한민국, 일본국 및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3국 협력사무국 설립에 관한 협정	입법사항
17	2070	범죄인인도에 관한 유럽협약	입법사항
18	2071	형사사법공조에 관한 유럽협약	입법사항
19	2094	조세행정공조협약 및 개정의정서	입법사항
20	2116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 설립에 관한 협정	재정부담
21	2128	국제적 아동탈취의 민사적 측면에 관한 협약	입법사항
22	2148	아세안 및 한·중·일 비상 쌀 비축 협정	재정부담
23	2183	대한민국 정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및 일본국 정부 간의 투자 증진, 원활화 및 보호에 관한 협정	입법사항
24	2184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기본협정	입법사항
25	2189	핵테러행위의 억제를 위한 국제협약	입법사항
26	2218	2006 해사노동협약	입법사항
27	2245	북태평양 공해수산자원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협약	입법사항
28	2258	국제연합 초국가적 조직범죄 방지 협약	입법사항
29	2259	국제연합 초국가적 조직범죄 방지 협약을 보충하는 인신매매, 특히 여성과 아동의 인신매매 방지, 억제 및 처벌을 위한 의정서	입법사항
30	2260	국제연합 초국가적 조직범죄 방지 협약을 보충하는 육상, 해상 및 항공을 통한 이주자의 불법이민 방지를 위한 의정서	입법사항
31	2261	국제연합 초국가적 조직범죄 방지 협약을 보충하는 총기류, 그 구성부분과 부품 및 탄약의 불법제조 및 불법거래 방지를 위한 의정서	입법사항
32	2263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입법사항
33	2273	크로아티아의 유럽연합 가입을 고려하기 위한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의 추가 의정서	입법사항
34	2274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 협정	입법사항
35	2278	아세안 및 한·중·일 거시경제조사기구(AMRO) 설립 협정	입법사항
36	2290	핵물질의 방호에 관한 협약 개정 (「핵물질 및 원자력시설의 물리적 방호에 관한 협약」 개정)	입법사항
37	2315	파리협정	입법사항
38	2358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및 그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공유에 대한 생물다양성에 관한 협약 나고야 의정서	입법사항
39	2381	식량원조협약	재정부담

연번	조약 번호	조 약 명	국회동의 사유
40	2386	아시아산림협력기구 설립에 관한 협정	입법사항
41	2431	대한민국과 중미 공화국들 간의 자유무역협정	입법사항

Ⅲ. 국제법적 분석과 문제점

1. 조약의 정의 문제

대한민국이 그 대표를 통해 협상하여 채택한 조약문서를 국회의 동의를 받아 체결·비준할 것인가의 문제를 다룸에 있어서 제기될 수 있는 첫 번째 국제법 문제는 해당 문서가 조약인가하는 근본적 질문이다. 대부분의 조항들이 조약법에 관한 국제관습법을 담고 있고 조약문제를 다룸에 있어 기본 규범을 제공하고 있는 중요한 조약인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1969)¹⁰⁹⁾은 조약을 ‘단일의 문서에 또는 둘 또는 그 이상의 관련 문서에 구현되고 있는가에 관계없이 또한 그 특정의 명칭에 관계없이, 서면형식으로 국가간에 체결되며 또한 국제법에 의하여 규율되는 국제적 합의’라고 정의하고 있다.¹¹⁰⁾ 이 정의는 국제관습법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되지만¹¹¹⁾ 국제법상 인정되는 모든 조약을 포괄하고 있지는 못하다. 즉 ‘국가’간에 체결된 조약만을 포함하고 있어 국가와 ‘국제기구’간, ‘국제기구’상호간에 체결된 조약이 제외되었고 ‘문서’로 작성된 것만을 포함하고 있어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구두’조약을 제외하고 있다.¹¹²⁾

조약법협약 정의규정 상 ‘조약’의 정의 요소는 1) 누가 체결당사자인가, 2) 어떤 형식을 취하고 있는가, 3) 어떤 형태인가, 4) 어떤 법규로 규율되는가, 5) 어떤 명칭을 사용하

109) Vienna Convnetion on the Law of Treaties, 1969년 5월 23일 비엔나에서 체결, 1980년 1월 27일 발효.

110) 조약법협약 제2조 제1항 a.

111) Duncan. B. Hollis, “Defining Treaties”, in Duncan B. Hollis ed, The Oxford Guide to Treaties, Oxford University Press, 2012, p.12. 국제사법재판소(ICJ)도 Land and Maritime Boundary between Cameroon and Nigeria case에서 이를 인정하였다. ICJ Rep. 249, 264(2002).

112) 물론 협약 제3조는 국제기구가 당사자가 된 조약과 구두조약의 효력을 인정하고 있어 협약 전체로 보면 이들 조약도 포함하고 있다. 협약 제3조 참조.

고 있는가 등으로 구분하여 볼 수 있다. 조약체결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것은 ‘국가’¹¹³⁾와 ‘국제기구’¹¹⁴⁾이다. 즉 법인을 포함한 개인은 조약체결의 주체가 될 수 없다.¹¹⁵⁾ 두 번째로 형식의 면에서는 ‘일방적 의사표시’가 아닌 ‘국제적 합의’(international agreement)여야 한다. 세 번째로 주로 ‘문서’로 작성되나 ‘구두합의’도 다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조약성이 부정되지 않는다.¹¹⁶⁾ 네 번째는 가장 중요한 요소로 규율법규의 문제인데 국내법이 아닌 ‘국제법’으로 규율되어야 하고 이 요건에서 추론되는 것은 당사자에게 ‘구속력을 부여’하려는 것이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조약의 명칭의 문제인데 조약의 명칭은 어떤 문서가 조약인가의 여부를 결정하는 요소는 아니다.

조약의 체결기준에 대한 국회동의 문제를 논의함에 있어 조약의 정의 문제와 관련하여 제기되는 첫 번째 문제는 일부 관세, 무역, 재정관련 조약 중 국가당사자가 아닌 실체가 문서 작성 당사자임에도 해당 문서를 조약으로 취급하여 국내절차를 진행한 것이다. 이 중에는 국회동의 절차를 거쳐 체결·비준한 조약도 있다는 것이다. 즉 당시 서독의 서독재건은행(KfW)을 일방당사자로 한 중소기업육성을 위한 서독재건은행과의 재정차관협정 등 4개의 조약이 ‘국가’가 아닌 ‘서독재건은행’이라는 독립된 법인체와 체결한 문서이고 위 조약법협약 상의 조건을 대비시키거나 국제사법재판소의 판결 등을 고려할 때 조약으로 분류될 수 없는 문서인 것이다. 이러한 사례는 위성통신지구국 건설을 위한 대한민국과 미국 수출입은행간의 차관협정(조약 282호)에서도 ‘수출입은행’이라는 국가와 독립된 법인체와 체결한 문서를 조약으로 취급한 것에서도 나타난다. 다행인 것은 1968년 이후에는 이러한 사례가 발견되지 않고 있다는 것인데 여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할 문제로 보인다.

113) 조약법협약 제6조는 모든 국가는 조약을 체결하는 능력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114) 국제사법재판소는 *Reparation for Injuries case*에서 국제연합이 그 임무수행과 목적달성에 필요한 범위내에서 법인격을 가짐을 인정하였다. ICJ Reports(1949), 174면. 또한 조약법협약도 제3조에서 국제기구가 체결한 문서의 법적 효력을 인정하고 있다.

115) 김정진, 장신, 이재근, 박택영, 앞의 책, 33-34면.

116) 상설국제사법재판소(PCIJ)는 *Eastern Greenland Case*에서 구두합의가 다른 조건이 합치되는 경우 구속력을 가질 수 있음을 인정하였다. 조약법협약도 제3조에서 그것을 인정하고 있다. PCIJ Reports Series A/B No.53.

두 번째는 조약의 명칭에 대한 문제이다. 앞서 조약법협약상의 정의에서 볼 수 있듯이 조약의 명칭은 어떤 문서가 조약인가의 여부를 판단하는 결정 요소는 아니다. 하지만 문서의 명칭에서 문서의 중요성, 다자조약 여부, 규율 주제, 체결당사자 등 법적 성격 및 지위 등 동문서의 다양한 측면을 추론할 수 있는 요소를 담고 있어 명칭부여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더구나 양해각서(Memorandum of Understanding: MOU) 같은 문서명칭은 구속력을 부여하려는 의사가 없는 문서를 채택하고자 할 때 사용하는 명칭이기도 하지만 국내사정상 구속력부여 여부에 대하여 모호성을 부여한 후 국내에서의 반응을 살펴 구속력 부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기도 하기 때문에¹¹⁷⁾ 조약문언 상의 용어 사용이나 명칭 부여 시 주의를 요한다. 사실 국회동의를 받은 조약들을 보면 대체로 공식성이 강한 명칭이라고 할 수 있는 ‘협약’(Convention), ‘협정’(Agreement), ‘의정서’(Protocol) 등의 명칭이 부여된 조약들이 대부분이라는 것에서도 명칭이 주는 의미가 적지 않음을 알 수 있다.¹¹⁸⁾

관세, 무역, 재정분야에서 체결된 조약에 부여된 명칭을 살펴보면 대명칭 부여에 일부 혼선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분야에서 대한민국이 체결한 조약문서의 명칭으로는 협약, 협정, 의정서, 교환각서(또는 각서교환, Exchange of Note)¹¹⁹⁾, 교환공문, 양해각서(국제기구와의 체결한 문서에서 많이 사용), 서한교환, 약정, 결정, 심지어는 수정, 개정, 탈퇴 또는 종료라는 문서의 특정 명칭 없이 그 문서로 행한 결과만 명시하는 용어까지 다양한 명칭 들이 부여되었다. 일반적으로 다자조약은 ‘협약’(Convention), 양자조약은 ‘협정’(Agreement)이라는 용어가 많이 사용되고 있고 고시류 조약에서는 ‘약정’(Arrangement)이라는 용어가 가장 빈번하게 부여되었다. 양자조약의 경우 개정조약은 ‘의정서’(중대한 개정의 경우), 고시류조약의 개정 또는 연장 또는 종료를 위한 문서는 교환각서(Exchange of Note), 고시류 조약의 보충을 위한 문서는 의정서(Protocol)라는 명칭이 부여되었다.

117) 정인섭, 「조약법연구」, 박영사(2016), 7면.

118) 물론,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자유무역협정에 관한 서한교환(Exchange of Letters, 조약 2082호)의 경우에는 공식성이 약한 용어임에도 국회동의를 받았던 예외도 있다.

119) 외교부의 조약체결절차 해설에서는 ‘Exchange of Note’를 ‘각서교환’이라고 하고 있으나 조약정보에 탑재된 조약명칭은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 ‘교환각서’로 되어 있다.

다자조약의 경우 교섭국간에 합의로 정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의사만 고집할 수 없겠지만 양자조약의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의사를 반영할 기회와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의정서’라는 명칭은 일반적으로는 본조약의 개정 또는 보충조약에 사용되는 명칭인데 대한민국정부와 스웨덴 왕국 정부간의 무역관계에 관한 의정서(조약 245호, 1967. 4.13.)는 모조약 없이 의정서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고 내용상 중요한 재정부담이나 입법사항이 없는 간단한 내용의 조약으로 국회동의를 받지 않았다.

또한 대한민국정부와 쿠웨이트 정부간의 지정항공사 활동과 장비에 관한 조세와 관세의 면제를 위한 약정(조약 1057호, 1985. 12. 1.)의 경우에는 어느 정도 중요성을 갖는 조약임에도 ‘약정’(Arrangement)이라는 공식성이 약한 명칭을 사용하여 혼선을 주고 있다. 사실 약정이라는 용어는 대한민국정부와 요르단왕국 정부간의 암만 남부 폐수처리시설 사업을 위한 대외경제협력 기금차관에 관한 보충약정(고시 794호, 2013. 5. 14.)과 같이 고시류 조약, 중요도가 낮은 보충문서 등에서 사용되는 용어이기 때문이다.

차관공여에 관한 기본 원칙 등을 정하는 문서는 조약으로 ‘협정’(예를 들어, 대한민국정부와 아제르바이잔 공화국 정부간의 대외경제협력 기금차관에 관한 협정, 조약 2157호, 2013. 9. 5.)이라는 명칭을 부여하고 있는데, 이 협정하에서 일정기간의 차관공여 방향과 한도를 정하는 문서는 ‘기본약정’(예를 들어, 대한민국 정부와 볼리비아 민족국 정부간의 대외협력기금 차관(2010-2014)에 관한 기본약정, 고시 739호, 2011. 6. 1.), 기본약정하에서 이루어지는 구체적 사업에 대한 문서는 약정(예를 들어, 대한민국 정부와 탄자니아합중국 정부 간의 대외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송전망확충사업>(고시 721호, 2010. 8. 1.)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구체적 사업명칭도 포함시키지 않은 채 약정이라는 명칭을 부여하는 경우가 아주 많은데 (예를 들어, 대한민국정부와 카메룬 정부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고시 701호) 통일성이나 명칭에 따른 문서의 지위를 짐작하는데 어려움을 줄 수 있다. 또한 차관공여에 관한 합의문서도 ‘약정’ 대신 ‘교환각서’라는 명칭을 쓴 경우(고시 대한민국정부와 인도네시아 공화국 정부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공여에 관한 1991 교환각서, 고시 379호, 2000.4. 24.)가 있

는 것도 혼선을 주고 있다. 대한민국정부와 필리핀공화국 정부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공여에 관한 교환각서(조약 1431호, 1997. 10. 24.)와 같이 조약으로 체결하면서 ‘교환각서’라는 명칭을 부여한 경우도 있다.

앞서 밝혔듯이 건국 후 차관도입이 많았던 초기에는 차관도입조약에 ‘협정’ 또는 ‘교환각서’로 명칭을 부여하고 일정액수 이상의 것이면 국회동의를 구하였다.

명칭부여와 관련하여 문제가 되는 다른 하나는 대한민국과 일본국 해외경제협력기금간의 차관계약의 중재규칙에 관한 협정(조약 189호, 1965. 12. 18.)에서 볼 수 있듯이 차관도입을 위하여 국가간에 체결한 문서는 그 규율법규가 명백히 국내법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는 한 조약이라고 보아야 하는데, ‘계약’이라는 국내법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다행인 것은 이러한 오류가 근래에는 발견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¹²⁰⁾

2. 조약체결의 국내법 절차

앞서 언급하였듯이, 국제법적으로 조약체결은 전권위임장을 제시한 대표에 의하여 협상된 조약문에 채택되고, 서명에 의하여 인증된 후 비준, 승인, 또는 수락 등의 기속적 동의의사표시가 이루어지고, 이 의사를 담은 비준서가 교환되거나 기탁된 후 조약에 합의되거나 기타 방법으로 발효되면 국제법상 유효한 조약이 된다.¹²¹⁾ 유효하게 발효한 조약을 국제연합(UN) 사무국에 등록하고 사무국이 이를 공표하는 것은 해당 조약의 법적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¹²²⁾ 다만 국제연합의 어떠한 기관에 대하여도 그 조약을 원용할 수 없을 뿐이다.¹²³⁾

120) 사실 건국초에 체결된 대한민국과 점령하 일본간의 무역을 위한 재정협정(조약 1133, 1950.4.1.)같은 경우 조약이 발효된 후인 1960년 6월 6일 서명한 유례를 찾아 보기 힘든 사례도 있었다.

121) 국제법상의 조약체결 절차는 조약법협약, 제2장(제6-25조).

122) Aust, *op. cit.*, p.302.

123) 국제연합 헌장 제102조 제2항. 국제사법재판소도 Case concerning Maritime Delimitation and Territorial Questions between Qatar and Bahrain에서 국제연합에의 등록여부가 해당문서가 조약인가의 여부의 판단 기준이 아님을 선언하였다. ICJ Reports 112(1994), para.29.

조약이 유효하게 당사국을 기속하는가는 원칙적으로 국제법에 의하여 판단되는 것이고 국내법상의 절차는 국내법에 맡겨져 있다. 따라서 대부분 국가의 헌법과 하위법령 등에서 조약체결권자의 조약 체결·비준에 대한 입법부의 동의절차와 국내적 반포 절차를 규정하고 있지만 이는 국제법이 요구하고 있는 절차가 아니다. 이러한 국내절차의 유무, 국내절차의 엄격성 정도, 시간적 제한, 절차적 선후문제 등 모든 것이 국내법에 맡겨져 있다. 즉 어떤 성격의 조약이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어떤 내용을 담은 조약이 국회의 동의를 받아 체결·비준되어야 하는지, 동의를 받기 위한 국회에서의 의결정족수는 어느 정도의 엄격성을 부여해야 하는지, 조약체결권자의 비준·체결 이전, 혹은 이후 어느 시점에 하여야 하는지의 선후문제 등 모든 사항도 국내법에 맡겨져 있고 국제법이 규율하지 않는다. 사실 중앙집권적 집행장치를 갖지 않은 국제법은 그 이행조차도 국내법에 의존하고 있다.¹²⁴⁾

조약과 국내법과의 관계에서도 국제법무대에서는 조약이 국내법에 우선하는 효력을 가진다.¹²⁵⁾ 다만 조약법협약은 체결된 조약이 무효(부적법화, *invalidation*)로 되는 원인의 하나로 조약체결권에 관한 국내법규를 위반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¹²⁶⁾ 하지만 동조항에 따르면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조건은 국내법규정의 위반이 ‘명백하고’ 또한 ‘근본적으로 중요한 국내법 규정’에 관련되지 않는 한 원용할 수 없다(*may not*)고 부정적 조건하에 엄격한 규정을 하고 있어 무효로 인정될 가능성이 극히 제한적이다. ‘근본적으로 중요한 국내법 규정’은 조약법협약에서는 ‘위반이 통상의 관행에 따라 성실하게 행동하는 그 어떤 국가에게도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라고 정의하고 있다.¹²⁷⁾ 물론 국회동의절차를 받아야 하는 것이 명백한 내용을 담고 있는 조약을 국회동의없이 체결·비준하였다면

124) 예를 들어, 무역관련 지적재산권 협정(TRIPs) 제1조 제1항은 ‘회원국은 이 협정의 제규정을 실시한다. 회원국은 이 협정의 규정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경우, 자기나라의 법을 통해 이 협정에 의해서 요구되는 것보다 더 광범위한 보호를 실시할 수 있으나, 그렇게 할 의무를 지지는 않는다. 회원국은 자기나라의 고유한 법제도 및 관행 내에서 이 협정의 제규정에 대한 적절한 이행방법을 자유로이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에서도 잘 드러난다.

125) 조약법협약 제27조. ILC규정초안 제3조, 제32조 등. 김정진, 장신, 이재근, 박덕영, 앞의 책, 127면, Malcolm N. Shaw, *International Law*, 8th ed.,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7, 100면.

126) 조약법협약, 제46조 제1항.

127) 조약법협약, 제46조 제2항.

상대방도 이러한 사실을 알았다는 전제하에 무효를 원용할 수 있는 것으로 인정될 가능성도 있다고 할 수 있다.¹²⁸⁾

국제사회에서 체결되는 조약은 어느 수준의 조약체결 대표간에 체결되었는가에 따라 국가간 조약, 정부간 조약, 부처간 조약 등 다양한 차원으로 분류될 수 있다.¹²⁹⁾ 일반적으로 국가간 조약은 우호통상항해조약 등 그 중요도가 높은 조약으로 국가원수가 직접 서명하는 경우가 많고 부처간 조약 등은 일반적으로 국가간 조약 또는 정부간 조약으로 체결된 조약의 위임사항이나 이행을 위한 조약 또는 개정 또는 종료를 위한 조약으로 체결된다. 하지만 어느 차원에서 체결되었는가는 국제법상의 그 문서의 법적 지위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따라서 국회비준 동의를 받은 조약, 동의를 받지 않는 조약, 고시류 조약 등으로 분류하여 국내법적 지위를 달리 하는 것은 국내법상의 문제일 뿐이다.

관세, 무역, 재정분야에서 체결된 조약들을 보면 어느 등급의 일반 조약으로 체결할 것인지 또는 일반 조약이 아닌 고시류 조약으로 체결할 것인지의 기준이 명확하게 설정되어 있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대한민국 정부와 우크라이나 정부간의 무역협정의 개정에 관한 교환각서(고시 669호, 2010. 10. 13.)는 모조약의 개정조약인데 고시류 조약으로 체결된 반면 앞서 열거되었던 많은 무역관련조약의 개정은 일반조약으로 체결되었다. 또한 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의 제2의정서는 조약(조약 1350호, 1996. 3. 40)으로 체결된데 반하여, 서비스무역에 관한 제4의정서(고시 337호, 1998. 2. 5.)와 제5의정서(고시360호, 1999. 3. 1.) 등은 고시류 조약으로 체결되어 일관성을 결여하고 있다.

128) 김대순, 「국제법론」, 제20판, 삼영사(2019), 196면.

129) 하지만 기관간에 체결되는 소위 ‘기관간약정’(agency to agency arrangement) 이라고 불리는 문서는 국가를 대외적으로 대표하는 기관에 의해 합의된 것이 아니고 이에 따라 통상 구속력부여의사를 결여하고 있고 해당문서에서 사용되는 용어들도 법적 구속력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의도를 담고 있어 조약으로 정의될 수 없다. 정인섭, 앞의 책, 515면.

IV. 관세·무역관련 국제협정 체결·비준시 국회 동의 대상 여부에 관한 심사 기준

1. 기 체결 조약의 국회 동의 여부 결과에 대한 분석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관세·무역 분야로 분류될 수 있는 총 245건의 조약 중 국회 동의를 받아 체결·비준된 조약은 43건으로 약 17.6%를 차지한다. 이러한 수치는 비교적 소수의 조약만이 국회동의 절차를 거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국회비준동의를 받은 비중은 1990년 이후 355여건의 조약 중 오직 1건만 국회동의를 받은 재정 분야에서 볼 수 있듯이 낮아지고 있다. 관세·무역분야에서도 43건의 국회동의를 받은 조약 중 24건으로 55.8%를 차지하는 자유무역협정과 그 관련조약을 제외하면 국회동의를 받는 조약의 비중이 낮아지는 추세라고 할 수 있다.

그동안 국회동의를 받아 체결·비준된 관세·무역 분야의 조약들을 분석하여 보면 국회동의를 받아야 하는 조약인가에 대한 일관된 판단기준을 제시하고 있다고 할 수는 없다. 다만 몇가지 나타난 특징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자유무역협정(FTA)의 경우 WTO라는 다자적 무역체제의 예외로서 자유무역지대를 창설하는 효과를 가진 조약으로 이행을 위한 국내입법의 필요성이 있어 국회동의를 받아 체결·비준되었다는 것, 2) 자유무역협정의 개정조약 중 본 조약에 중대한 변화를 가하여 새로운 입법필요성 또는 재정적 부담을 야기할 수 있는 경우에는 국회동의를 받았다는 것, 3) 다자간자유무역협정의 경우 새로운 회원국이 가입하게 되는 경우 이의 조정을 위한 조약은 국회동의를 받았다는 것, 4) 일반 무역협정은 최혜국대우는 관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를 포함하고 있음에도 국회동의를 받지 않았다는 것, 5) 국제관세기구 등 중요 국제기구와 관련된 조약은 국회동의를 받았다는 것, 6) 재정 분야 조약을 통하여 중요한 재정적 부담의 참고가 되는 액수는 750만 달러와 1600평방미터의 사무실 공간을 제공하는 국제기구에 제공되는 재정부담은 국회동의 대상이 되었고 600만 마르크, 또는 386만 달러의 재정부담은 국

회동의를 받지 않았다는 것, 7) 협약, 협정, 의정서 등 공식성이 강한 명칭을 가진 조약이 국회동의 대상이 되었다는 것, 8) 고시류 조약은 당연히 국회동의를 받지 않았다는 것 등이다.

국제법적인 측면의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1) 조약체결 비준에 대한 국회동의 절차는 국내법 절차로서 원칙적으로 어떤 문서의 조약으로의 국제법적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 2) 조약의 명칭은 어떤 문서의 조약성을 결정하는 요소는 아니지만 그 조약의 여러 면을 추론할 수 있는 요소라는 것, 3) 조약이 어떤 수준의 대표에 의하여 체결되었는가 또한 국내법상 국회동의를 받는 조약인가 아닌가, 고시류 조약인가 등의 구분은 국제법상으로는 의미가 없고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는 것 등이다.

한편, 지금까지 조약의 체결비준과 국회동의를 받는 과정에서 나타난 몇가지 문제점은 다음과 같이 정리하여 볼 수 있다. 1) 조약의 명칭부여에 있어 일관성이 없는 경우가 있다는 것, 2) 조약에서 사용될 수 없는 용어를 조약명칭에 포함하는 경우가 있었다는 것 등이다.

2. 국회 동의 대상 여부에 관한 심사기준 검토

(1) ‘중대한 재정적 부담’ 여부에 대한 심사기준

다른 헌법조문들과 체계적으로 해석해 본다면, 예컨대 헌법 제54조 내지 제59조의 내용을 통해 국가의 재정은 원칙적으로 민주적 정당성을 가지는 국민대표기관으로서 국회가 결정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제58조는 “국채를 모집하거나 예산 외에 국가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하려 할 때에는 정부는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여, 정부의 재정활동도 기본적으로 국회의 결정을 전제로 한다. 따라서 정부(대통령)의 권한에 해당하는 조약 등의 체결도 대한민국 국민의 자유와 권리, 특히 재정적인 부담을 주는 것이라면 국회의 동의를 필요로 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달리 표현하면 재정민주주의 원칙 측면에서 대통령이 국가나 국민에게 재정적 부담을 주는 조약을 체결할 때는 국회

의 동의가 필수적인 것이다. 문제는 국회의 동의가 필수적인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의 헌법적 내지 구체적인 기준이 무엇인가 하는 점이다.

1) 일반적 기준 설정의 어려움

먼저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은 대한민국 정부와 국민들의 경제적 소득 수준 내지 국가가 처한 상황에 따라 변할 수 있는 기준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를 일반적인 수준에서 정하는 것은 쉽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으로는 차관도입협정과 차관공여협정이 재정적 영향을 미치는 조약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차관을 도입하면 부담이고 차관을 공여하면 부담이 아닌지 일반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단순한 것만은 아니다.¹³⁰⁾ 또한 1조 원이라는 액수를 중대한 재정적 부담이라고 결정하더라도 이 액수를 예산액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와 2020년 예산안의 경우 514조라고 할 때는 0.2%의 액수에 해당하고 국내총생산(GDP)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가 2018년 실질 GDP가 약 1800조라고 할 때는 0.05%의 액수에 해당하므로 달라서 쉽게 판단하기 어렵다. 주한미군의 주둔비 분담에 관한 대한민국과 미국의 상호방위조약은 국가안보라는 이익과 방위비라는 지출(부담)의 재정적 효과를 어떻게 평가할지 쉽지 않다. 이는 재정 및 경제적 효과에 관한 구체적인 계량적 수치로 표현할 수도 있지만, 무형의 이익·불이익을 계량화하는데 어려움도 있음을 부정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2) 개별 조약의 액수 기준 설정의 어려움

둘째, 예컨대 100억 원이든 1천억 원이든 특정 액수를 기준으로 하는 것 자체도 그 기준액수의 다소여부와 “중대한” 재정적 부담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으로서 적절한지를 판단하기 어렵다. 다른 한편 그러한 조약이 경기 침체기를 극복하기 위한 투자로서 투자액 이상의 경제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의미있는 차관도입협정이라면 중대한 재정적 “부담”이라고 볼 수 있는지 의문일 수 있고, 반대로 100억 차관공여협정이라 하더라도

130) 차관도입협정이나 차관공여협정 그 자체만으로 “재정적 부담”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점에 대해서는 대표적으로 정인섭, 조약체결에 대한 국회의 동의제도, 서울대 법학 제43권 제3호, 2002, 90-94면 참조.

경제적으로 방어적·보수적인 재정운용을 할 필요성이 있을 때에는 중대한 재정적 부담이 아니라고 보기도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다.

3) 개별 조약의 집적에 따른 총액 기준 설정의 필요성

셋째, 일회성 조약이 중대한 재정적 부담이 아니라도, 그러한 조약이 집적된다면 전체적으로 중대한 재정적 부담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재정적 영향을 미치는 개별 조약들의 총액을 기준으로 일정한 액수 이상에 이르면, 그 후에 체결하는 재정관련 조약은 개별 조약의 경제적 가치가 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중대한 재정적 부담이 될 수 있다.

4) 비교법적 차원에서 수치적 기준

비교법적으로 볼 때 몇 가지 의미있는 수치적 기준들은 고려해 볼 수 있다. 예컨대 독일연방헌법 제109조 제3항 제4문과 제115조 제2항 제2문에 따르면, 새로운 국가채무가 명목적인 GDP의 0.35%를 초과하지 않으면 균형예산 내지 채무제로의 원칙을 유지했다고 판단하여, 명목 GDP의 0.35%가 중요한 수치적 기준으로 보인다. 유럽연합조약 제126조(초과재정적자금지)에 대한 제12의정서 제1조에서는 재정적자가 GDP의 3%, 국가채무가 GDP의 60%를 초과하는 것을 소위 초과재정적자절차(EDP)를 개시하는 기준으로 본다. 따라서 재정적자가 국내총생산의 3%를 넘는 수치는 총액 차원에서 중대한 재정적 부담이라 할 수 있다.

5) 소결(예시적 기준)

상술한 내용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예시로 제시해 볼 수 있다.

첫째, 조약은 그 명칭에 관계없이 대한민국에 재정적·경제적 효과 면에서 영향을 줄 수 있다면, 일단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으로 일단 분류해 볼 수 있다.

둘째, 기본적으로 재정학 또는 경제학에서의 현재 통용되는 기준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규모에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미미하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재정적·경제적 효과

를 가지는 조약이라면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의 범위에 포함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기 체결된 조약들에 대한 분석 및 정리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모조약의 존재 여부, 모조약을 이행하기 위한 후속조약인가의 여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행될 수 있는 것인가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될 것이다.

셋째, 따라서 재정적으로 중대한 부담이라는 영향은 현재 통용되는 재정학(경제학) 시각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계량적 수치로 표시할 수 있으며, 이를 개별적인 조약에 대한 기준 뿐만 아니라 (특정 기간, 주로 회계연도 내) 조약들 전체가 가지는 계량적 수치의 기준을 각각 설정해 볼 수 있다.

넷째, 개별적 조약이 가지는 재정적 효과를 먼저 기준 수치에 따라 평가하여 국회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인지 여부를 판단하되, 개별적 조약으로서는 중대한 재정적 부담은 아니지만 (특정 기간) 조약상 총액을 합산하면 계량적 수치의 기준을 초과할 때 국회의 동의를 필요한 조약으로 판단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은 예시적 기준을 제시해 볼 수 있다: 예컨대 개별 조약상 재정적·경제적 영향평가에 있어서 1천 억의 적자를 기록할 수 있는 조약은 국회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 개별 조약상 재정적 영향평가액이 1천 억에 이르지 아니하더라도, 당해 회계연도에 체결된 기존 조약상 재정적 영향평가 총액이 (균형예산임을 전제할 때) 당해 회계연도 지출총액의 3%를 초과할 때는 국회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조약으로 볼 수 있다.

(2) ‘입법사항’ 여부에 관한 심사기준

현대국가체제에서의 입법의 현실은 국회입법독점이 아니라 국회중심입법으로 평가되지만,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경우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의결절차에 따라 법률로 정해야만 하는 것을 요구하는 것이 법률유보의 원칙이자 위임입법의 한계점이다. 따라서 헌법 제60조 제1항에서 규정한 ‘입법사항’에 관한 것이라 함은, 기본적으로 그 조약의 내용이 국민의 권리 및 의무와 관련되는 것이고, 관련되는 국내법

이 아직 존재하지 않거나 존재하는 국내법의 내용을 조약내용에 따라 변경·폐지 등의 결과를 발생하게 하는 경우에 통상적인 입법절차와 같이 입법기관인 국회의 동의를 요하도록 하는 것이 헌법적 의미인 것이다. 따라서 헌법에서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하여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한 취지를 고려할 때,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이란 ‘그 체결·비준으로 인하여 국회의 입법권 즉 법률의 제·개정 권한과의 충돌을 발생케 하는 결과가 수반되는 조약’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입법사항에 해당되는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우선, 국민의 권리 및 의무와 관련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조약인가가 판단되어야 한다. 다만 국민의 권리 및 의무와 관련되는 내용일지라도,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국민에게 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내용인가가 중요하게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새로운 입법을 요하는 것인가가 판단되어야 한다.

해당 조약의 내용과 동일한 내용을 규정한 국내법이 없는 경우이거나 조약을 이행하기 위한 근거법률인 국내법이 아예 없어서 새로운 입법이 이루어지지 않고서는 조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조약의 내용이 국내법의 내용과 상충되어 국내법의 내용을 수정하거나 변경해야 하는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인가이다. 특히 조약의 내용이 국내법과 상충되는 경우에는 우리 헌법상 일정한 국제조약에 대하여 법률의 효력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신법 우선의 원칙이 적용되는 경우인지, 아니면 특례 규정으로 해석하여 예외적 적용을 인정하기 위한 개정이 필요한 경우인지를 판단해 보아야 할 것이다.

우리의 국제조약 체결 관행에서 보면,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의 유형과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유형은 개별적 사례인 경우도 있었지만, 병합적으로 볼 수 있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때문에 특히 ‘입법사항’인가의 여부는 좀 더 광의적으로 보아야 하며, 해당 조약의 체결과 비준과정에 있어서 국회의 관여가 인정될 만한 과정, 즉 기존의 법률의 존재, 예산의 승인 등이 있었는가를 판단해 볼만 하다고 생각된다. 입법

사항에 관한 조약을 국회 동의대상으로 규정한 헌법 제60조 제1항 규정의 헌법적 의미는 국회의 정부에 대한 통제권의 의미로 보아야 할 것이고, 법률유보의 사항인가 위임입법의 한계로서 인정되는 본질적 사항인가에 대한 심사가 적용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제4장

결론

제4장

결론

우리 헌법은 합헌적으로 체결·공포된 조약에 의하여 국민의 권리와 의무가 규율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그 체결 및 비준에 대하여 엄격하고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다. 그 중 하나의 절차가 헌법 제60조 제1항에 기한 일정 범위의 조약에 대하여는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한 것이다. 이처럼 우리 헌법이 조약의 체결·비준권을 대통령에게 부여하면서 중요한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국회에게 준 것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 의한 통제권을 인정함으로써 대통령의 적정한 권한행사를 도모하여 합리적인 국가 의사가 형성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이다¹³¹⁾.

그런데 국제관계의 긴밀화 또는 세계화·개방화의 진전에 따라 국가간 또는 국가와 국제기구 간의 정치·경제·사회·문화적 협력이 질적·양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체결·비준되는 조약이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¹³²⁾ 조약의 형식이 아닌 이른바 고시류 조약을 비롯한 관세·무역협정 등 여러 유형의 협정들까지도 다수 존재하고 있는 게 지금의 현실이다. 때문에 국회의 동의를 필요한 조약 등의 범위가 무엇인가를 검토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라고 할 것이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이 연구는 헌법 제60조 제1항에 명시된 국회의 동의대상이 되는 조약 중 해석이 필요한 대상으로서의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및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해당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구체적 기준을 정립할 수 있을

131) 이상훈, 헌법 제60조 제1항에 대한 고찰, 국제법 동향과 실무 제2권 제3호(2003), 93면.

132) 이상훈, 헌법상 조약의 법적 성격에 대한 고찰, 법제논단(2003. 10)

(<http://www.moleg.go.kr/knowledge/publication/monthlyPublicationSrch?mpbLegPstSeq=130466>)

것인가를 연구해 보고자 하였다. 해석론에 입각한 운영은 현실적 필요성과 타당성에 부합할 수 있는 반면에 일관성이나 체계적 정합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규범 자체에서 명확한 해석기준을 제시하지 않음으로써 오히려 이미 체결된 관련 조약들을 조사해서 어떤 기준들이 있었는지를 살펴봐야 한다는 점에서 어려움이 따른다. 실제로 4.27 판문점 선언에 대한 국회 비준 동의 여부가 쟁점적 사항으로 논란이 되고 있듯이, 헌법 제60조 제1항 상의 중대한 재정적 부담 또는 입법적 사항에 관한 조약의 해당 여부를 어떻게 판단해야 할 것인가는 정리된 해석론이 필요한 국가현안 관련 사항이다. 이 연구를 통해 국제협정에 대한 국회 동의 대상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하는 노력을 전개함으로써, 국제경제질서의 변화 속에서 우리나라가 대응해야 할 다양한 형태의 관세·무역협정 등의 국제협정을 헌법에 합치되는 절차 속에서 체계적으로 추진·검토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그 갈래를 두가지로 나누어 진행하였는데, 하나는 규범적 접근으로 헌법 제60조 제1항에 명시된 국회 동의권의 대상이 되는 조약범위에 대한 해석론을 정리하고 분석하였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기 체결된 국제협정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서 각 조약의 국내수용절차 및 국회 동의 여부에 대한 분석을 진행하였다. 이러한 두가지 경로의 연구를 통해, 그 판단기준에 대한 분석을 전개해 보고자 한 것이다.

먼저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은 일반적으로 당해 조약의 가입으로 인해 국고와는 별도의 재원으로부터 재정적인 지출을 필요로 하거나 국민에게 재정적인 부담을 지우는 조약이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그 예로, 국가가 당해 조약에 가입함으로써 현실적으로 국고에서 재정지출을 해야 하거나 차관협정이나 차관지불보증협정과 같이 주채무나 보증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또는 관세 및 세율에 영향을 미치는 조약을 들곤 한다. 더 구체적인 사례로는 조약의 목적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일정한 재정적 지출이 필요한 경우·국제금융기구 설립협정 가입처럼 조약가입으로 인해 일정한 지분출자가 요구되는 경우·조약의 체결이나 가입으로 인해 회원국으로서의 회비(운영부담금)를 부담해야 하는 경우 등을 들 수 있다¹³³⁾. 다만 재정적 부담이라고 해서 수적 크기를

133) 정인섭, 조약체결에 대한 국회의 동의제도-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을 중심으로-, 서울대 법학 제43권 제2호(2004), 15면.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아니었으며, 중대한 재정적 부담인가의 여부는 ‘우리나라의 경제력 규모, 재정부담으로 인하여 우리가 얻게 되는 이익의 정도, 조약가입에 따른 비용지출에 관하여 국회가 예산상 승인을 했는지 여부, 법률상 지출이 예정되어 있는지 여부, 이미 책정되어 있는 예산사업의 수행을 위한 부담인지 여부, 지속적인 재정부담 증가가 예상되는지 여부¹³⁴⁾, 재정부담이 일방적인 것인지 계약에 의한 것인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¹³⁵⁾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겠다. 구체적인 조약 사례들을 통해 보건대, 차관협정의 경우들은 ‘가용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는 단서를 근거로 국회의 동의를 구하지 않았지만, 차관도입의 경우에도 투자의 효과와 상환 조건을 형량해 보거나 부담금 지출의 경우에도 그로 인해 얻을 수 있는 상대적 이익 등을 따져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국회의 동의가 있었던 것으로 간주될 수 있는 경우로, 당해 재정부담의 근거가 되는 법률이 존재하거나 그 재정부담 규모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해결될 수 있거나 이미 동의를 받은 선행 조약의 집행적 성격을 띠는 경우 등은 별도의 국회동의를 요하지 않았다.

다음으로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해석은, ‘입법사항’에 관한 법률적 정의에서 시작된다. 기본적으로 입법사항이라 함은 헌법에서 반드시 법률로 정하도록 규정한 사항을 말한다고 정의되며, 흔히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이며 법률사항이라고도 한다. 따라서 ‘입법사항’에 관한 것이라 함은, 기본적으로 그 조약의 내용이 국민의 권리 및 의무와 관련되는 것이고, 관련되는 국내법이 아직 존재하지 않거나 존재하는 국내법의 내용을 조약내용에 따라 변경·폐지 등의 결과를 발생하게 하는 경우에 통상적인 입법절차와 같이 입법기관인 국회의 동의를 요하도록 하는 헌법적 의미를 갖는다고 하겠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 헌법에서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하여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한 취지를 고려할 때,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이란 ‘그 체결·비준으로 인하여 국회의 입법권 즉 법률의 제·개정 권한과의 충돌이 발생하는 결과가 수반되는 조약’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법규범 중에서도 특히 법률의 형식으로 규정되는 사항을 포함하는 조약으로서, 조약의 내용과

134) 박영태, 앞의 논문, 113면.

135) 배종인, 앞의 책, 150면.

동일한 내용이 법률에 규정되어 있지 않거나 그 근거가 법률에 마련되어 있지 않은 조약의 경우, 조약의 내용이 국내 법률에 대한 특례를 정하여 국내 법률이 변경·수정되는 효과가 초래되는 경우 또는 국내 법률이 마련되지 않고는 조약을 시행할 수 없는 경우라면, 당해 조약은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¹³⁶⁾.

우리나라도 1948년 정부수립으로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등장한 후 국가발전을 도모하는 과정에서 많은 국가 및 국제기구들과의 조약 체결 또는 조약 가입을 통하여 국가이익을 실현 및 보호하고 국제사회에서의 책임을 다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왔다. 이에 따라 2019년 10월 8일 현재 대한민국이 체결하고 발효하여 조약번호 또는 고시번호가 부여된 조약은 3,356건이고, 이 중 조약이 2,432건, 고시류조약이 924건이다. 정부수립 후 1960년까지 체결된 조약이 102건(양자 66건, 다자 36건)에 불과한데 반하여, 2011년부터 2018년까지 8년간 발효된 조약은 544건(양자 452, 다자 92건)으로 최근에 체결되는 수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이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대통령의 조약 체결·비준에 대한 국회동의절차가 요구되는 여러 부류의 조약 중 관세·무역 분야를 중심으로 조약 체결·비준에 대한 국회의 동의 관행을 분석해 보고자 하였다. 무역관련 양자조약, 155건, 무역관련 다자 조약 68건, 관세관련 조약 총 22건, 차관을 제공받는 차관도입조약과 차관을 제공하는 차관공여조약을 포괄하는 재정관련 조약 462건, 경제협정 유형으로서의 투자협정의 내용을 대상으로 하여, 국회의 동의를 받은 경우와 받지 않은 경우를 구분해서 정리하고 그 이유를 분석해 보았다.

그동안 국회동의를 받아 체결·비준된 관세·무역분야의 조약들을 분석하여 보면 국회동의를 받아야 하는 조약인가에 대한 일관된 판단기준을 제시하고 있다고 할 수는 없다. 다만 몇가지 특징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자유무역협정(FTA)의 경우 WTO라는 다자적 무역체제의 예외로서 자유무역지대를 창설하는 효과를 가진 조약으로 이행을 위한 국내입법의 필요성이 있어 국회동의를 받아 체결·비준되었다는 것, 2) 자유무역협정의 개정조약 중 본조약에 중대한 변화를 가하여 새로운 입법필요성 또는 재정적 부담

136) 도경욱, 앞의 논문, 국문초록

을 야기할 수 있는 경우에는 국회동의를 받았다는 것, 3) 다자간자유무역협정의 경우 새로운 회원국이 가입하게 되는 경우 이의 조정을 위한 조약은 국회동의를 받았다는 것, 4) 일반 무역협정은 최혜국대우는 관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를 포함하고 있음에도 국회동의를 받지 않았다는 것, 5) 국제관세기구 등 중요 국제기구와 관련된 조약은 국회동의를 받았다는 것, 6) 재정 분야 조약을 통하여 중요한 재정적 부담의 참고가 되는 액수는 750만 달러와 1600평방미터의 사무실 공간을 제공하는 국제기구에 제공되는 재정부담은 국회동의 대상이 되었고 600만 마르크, 또는 386만 달러의 재정부담은 국회동의를 받지 않았다는 것, 7) 협약, 협정, 의정서 등 공식성이 강한 명칭을 가진 조약이 국회동의 대상이 되었다는 것, 8) 고시류 조약은 국회동의를 받지 않았다는 것 등이다.

따라서 조약이 어떤 수준의 대표에 의하여 체결되었는가 또한 국내법상 국회동의를 받는 조약인가 아닌가, 고시류 조약인가 등의 구분은 국제법상으로는 의미가 없고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는 점에서 볼 때, 고시류 조약의 경우에도 재정적 부담의 규모나 그 실행을 위한 입법적 조치가 동반되어야 한다면 국회 동의 대상성을 좀더 신중하게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이다.

이 연구를 통해 정리해 보고자 했던 바는 헌법 제60조 제1항에 규정된 ‘중대한 재정적 부담’ 해당 여부와 ‘입법사항’ 해당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심사기준을 정립해 볼 수 있을 까의 문제였다. 그런데 이를 위해서는 우선 다른 헌법조문들과의 체계적인 해석이 필요하다. 예컨대 헌법 제54조 내지 제59조의 내용을 통해 국가의 재정은 원칙적으로 민주적 정당성을 가지는 국민대표기관으로서 국회가 결정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정부(대통령)의 권한에 해당하는 조약 등의 체결도 대한민국 국민의 자유와 권리, 특히 재정적 부담을 주는 것이라면 국회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달리 표현하면 재정민주주의 원칙 측면에서 대통령이 국가나 국민에게 재정적 부담을 주는 조약을 체결할 때는 국회의 동의를 필수적인 것이다.

문제는 국회의 동의를 필수적인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의 헌법적 내지 구체적인 기준이 무엇인지 하는 점인데,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은 대한민

국 정부와 국민들의 경제적 소득 수준 내지 국가가 처한 상황에 따라 변할 수 있는 기준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를 일반적인 수준에서 정하는 것은 쉽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개별 조약의 액수 기준 설정도 어려움이 있다. 그리고 일회성 조약은 중대한 재정적 부담이 아니라도, 그러한 조약이 집적된다면 전체적으로 중대한 재정적 부담이 될 수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점도 어려운 점이다. 하지만 이러한 어려운 점들을 고려하면서 예시적 제안내용으로 다음과 같은 심사기준을 정리해 보고자 한다.

첫째, 조약은 그 명칭에 관계없이 대한민국에 재정적·경제적 효과 면에서 영향을 줄 수 있다면, 일단 국회의 동의를 필요한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으로 일단 분류해 볼 수 있다.

둘째, 기본적으로 재정학 또는 경제학에서의 현재 통용되는 기준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규모에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미미하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재정적·경제적 효과를 가지는 조약이라면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의 범위에 포함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기 체결된 조약들에 대한 분석 및 정리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모조약의 존재 여부, 모조약을 이행하기 위한 후속조약인가의 여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행될 수 있는 것인가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될 것이다.

셋째, 따라서 재정적으로 중대한 부담이라는 영향은 현재 통용되는 재정학(경제학) 시각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계량적 수치로 표시할 수 있으며, 이를 개별적인 조약에 대한 기준 뿐만 아니라 (특정 기간, 주로 회계연도 내) 조약들 전체가 가지는 계량적 수치의 기준을 각각 설정해 볼 수 있다.

넷째, 개별적 조약이 가지는 재정적 효과를 먼저 기준 수치에 따라 평가하여 국회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인지 여부를 판단하되, 개별적 조약으로서는 중대한 재정적 부담은 아니지만 (특정 기간) 조약상 총액을 합산하면 계량적 수치의 기준을 초과할 때 국회의 동의를 필요한 조약으로 판단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입법사항’ 여부에 관한 심사기준을 정리해 본다면, 입법사항에 해당되는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우선, 국민의 권리 및 의무와 관련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조약인가가 판단되어야 한다. 다만 국민의 권리 및 의무와 관련되는 내용일지라도,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국민에게 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내용인가가 중요하게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새로운 입법을 요하는 것인가가 판단되어야 한다. 해당 조약의 내용과 동일한 내용을 규정한 국내법이 없는 경우이거나 조약을 이행하기 위한 근거법률인 국내법이 아예 없어서 새로운 입법이 이루어지지 않고서는 조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조약의 내용이 국내법의 내용과 상충되어 국내법의 내용을 수정하거나 변경해야 하는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인가이다. 특히 조약의 내용이 국내법과 상충되는 경우에는 우리 헌법상 일정한 국제조약에 대하여 법률의 효력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신법 우선의 원칙이 적용되는 경우인지, 아니면 특례 규정으로 해석하여 예외적 적용을 인정하기 위한 개정이 필요한 경우인지를 판단해 보아야 할 것이다.

우리의 국제조약 체결 관행에서 보면,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의 유형과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유형은 개별적 사례인 경우도 있었지만, 병합적으로 볼 수 있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때문에 특히 ‘입법사항’인가의 여부는 좀 더 광의적으로 보아야 하며, 해당 조약의 체결과 비준과정에 있어서 국회의 관여가 인정될 만한 과정, 즉 기존의 법률의 존재, 예산의 승인 등이 있었는가를 판단해 볼만 하다고 생각된다.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을 국회 동의대상으로 규정한 헌법 제60조 제1항 규정의 헌법적 의미는 국회의 정부에 대한 통제권의 의미로 보아야 할 것이고, 법률유보의 사항인가 위임입법의 한계로서 인정되는 본질적 사항인가에 대한 심사가 적용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참고문헌

참고문헌

I. 국내문헌

□ 단행본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2010.

김대순, 국제법론, 삼영사, 2019.

김정진/ 장신/ 이재곤/ 박덕영, 국제법, 박영사, 2010.

박봉국, 최신국회법, 박영사, 2004.

배종인, 헌법과 조약체결 : 한국의 조약체결 권한과 절차, 삼우사, 2009.

성낙인, 헌법학, 법문사, 2019.

정인섭, 조약법연구, 박영사, 2016.

_____, 新국제법 강의, 박영사, 2013.

정종섭, 헌법학원론, 박영사, 2015.

허영, 한국헌법론, 박영사, 2019.

□ 논문

김경제, 국회의 조약체결 비준동의권 행사의 기능과 현실, 유럽헌법연구 제14호(2003. 12)

김경화, 헌법상 조약체결과정에서 대통령과 국회 간 권한배분,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5)

- 김부찬, 조약체결에 대한 국회 동의권에 관한 고찰, 국제법학회논총 제52권 제2호(2007)
- 김선택, 미국 헌법상 통상협정체결에 관한 정부·의회 간 권한배분, 미국헌법연구 제18권 제2호(2007. 9)
- _____, 헌법상의 외교권한 배분과 구체화 입법의 헌법적 한계, 헌법학연구 제13권 제3호 (2007. 9)
- 김용진, 국회의 동의를 요하는 조약의 범위, 법제(1988. 10)
- 도경옥,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 비준에 대한 국회의 동의권, 서울국제법연구 제20권 제1호, 2013.
- _____, 투자보장협정의 국회 동의 대상 여부에 관한 검토, 서울국제법연구 제19권 제2호 (2012)
- _____, 입법조치를 통한 조약의 이행, 국제법학회논총 제59권 제2호(2014)
- 박세진, 조약심사기준과 조약심사업무 개선방안, 순간법제 제287호, 1987.
- 박영태, 조약심사와 그 사례 소개, 법제 통권 제473호, 1997. 5.
- 박창순, 조약체결에 대한 국회의 권한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2013)
- 이상훈, 헌법 제60조 제1항에 대한 고찰, 국제법 동향과 실무 제2권 제3호, 2003.
- _____, 헌법상 조약의 법적 성격에 대한 고찰, 법제(2003. 10)
- 이창열, 헌법상 조약체결권의 통제에 관한 일고찰, 미국헌법연구 제22권 제1호(2011. 4)
- 임지봉, 헌법적 관점에서 본 ‘국회의 동의를 요하는 조약’, 공법연구 제32권 제3호, 2004.
- _____, 조약체결에 관한 국회의 통제권, 헌법학연구 제14권 제3호(2008. 9)

- 전종익, 조약의 국내법상 지위와 고시류조약, 서울국제법연구 제22권 제1호, 2015.
- 정갑용, 국제조약체결에 있어서 국회동의제도에 관한 고찰, 경희법학 제44권 제1호 (2009)
- 정인섭, 국제기구에 관한 조약의 국회동의, 국제법학회논총 제56권 제3호, 2011.
- _____, 조약체결에 대한 국회의 동의제도-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을 중심으로-, 서울대 법학 제43권 제2호, 2004.
- _____,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국회의 조건부 동의, 서울대학교 법학 제49권 제3호 (2008)
- 정진석,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국회의 동의, 서울국제법연구 제11권 제1호(2004)
- 제성호,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국회동의권, 국제법학회논총 제33권 제2호, 1988.
- 조소영, 한미 FTA에 대한 헌법적 쟁점의 검토, 공법학연구 제8권 제3호, 2007.
- 최재천, 대한민국과 체결한 조약, 헌법위에 군림하는가?-법제처 조약심사의 문제점과 대안-, 정기국회 정책자료집, 2004.

□ 기타

- 법제처, 한-OECD 정책센터 설립 양해각서안 심사보고, 2008.
- 법제처, 헌법연구반 보고서, 1980. 3.
- 외교통상부, 알기쉬운 조약업무, 2006.
- <https://www.mk.co.kr/news/politics/view/2018/10/667424/>(인터넷 기사, 최종방문일 : 2019.10.28)

II. 국외문헌

Anthony Aust, *Modern Treaty Law and Practice*, 3rded.,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3.

Duncan. B. Hollis, “Defining Treaties”, in Duncan B. Hollis ed, *The Oxford Guide to Treaties*, Oxford University Press, 2012.

Malcolm N. Shaw, *International Law*, 8thed.,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7.

ICJ Reports, 1949.

ICJ Reports, 1994.

ICJ Reports, 2002.

PCIJ Reports Series A/B No.53.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부
록

무역관련 양자조약 목록

체결 대상국가	분야	국문	서명일/ 각서교환일	국회동의	발효일	조약 번호
중미통합체제	무역/통상	[다자조약] 대한민국과 중미 공화국들 간의 자유무역협정	2018년 02월 21일	완료2019년08월02일제370회국회(임시회) 제1차본회의	2019년 10월 01일	조약 2431
미국	자유무역협정(FTA)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을 개정하는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의정서	2018년 09월 24일	완료 2018년 12월 07일제364회 국회(정기회) 제15차 본회의	2019년 01월 01일	조약 2403
터키	자유무역협정(FTA)	대한민국과 터키공화국 간의 자유무역지대를 창설하는 기본협정에 따른 서비스무역 협정	2015년 02월 26일	완료 2015년 11월 30일제337회국회(정기회) 제12차 본회의	2018년 08월 01일	조약 2391
터키	자유무역협정(FTA)	대한민국과 터키공화국 간의 자유무역지대를 창설하는 기본협정에 따른 투자에 관한 협정	2015년 02월 26일	완료 2015년 11월 30일제337회국회(정기회) 제12차 본회의	2018년 08월 01일	조약 2390
터키	자유무역협정(FTA)	대한민국과 터키공화국 간의 자유무역지대를 창설하는 기본협정에 따른 교환각서	2018년 02월 01일 / 2018년 02월 13일	불요	2018년 08월 01일	조약 2392
칠레	자유무역협정(FTA)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 2012를 반영하기 위한 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부속서 4(원산지규정) 개정에 관한 교환각서	2017년 03월 20일 / 2017년 04월 28일	불요	2017년 07월 01일	조약 2357

체결 대상국가	분야	국문	서명일/ 각서교환일	국회동의	발효일	조약 번호
유럽자유 무역연합	자유무역 협정(FTA)	[다자조약] 대한민국과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부속서 I 제21조제1항 및 제24조제7항 개정		불요	2017년 01월 01일	조약 2329
싱가포르	자유무역 협정(FTA)	2012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를 반영한 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부속서 4 개정에 관한 교환각서	2016년 08월 01일 / 2016년 08월 03일	불요	2016년 08월 10일	조약 2303
콜롬비아	자유무역 협정(FTA)	대한민국과 콜롬비아공화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2013년 02월 21일	완료 2014년 04월 29일제324회국회(임 시회) 제1차 본회의	2016년 07월 15일	조약 2299
유럽연합	자유무역 협정(FTA)	[다자조약] 크로아티아의 유럽연합 가입을 고려하기 위한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의 추가의정서	2014년 03월 25일	완료 2014년 04월 29일제324회국회(임 시회) 제1차 본회의	2016년 01월 01일	조약 2273
뉴질랜드	자유무역 협정(FTA)	대한민국과 뉴질랜드 간의 자유무역협정	2015년 03월 23일	완료 2015년 11월 30일제337회국회(정 기회) 제12차 본회의	2015년 12월 20일	조약 2271
베트남	자유무역 협정(FTA)	대한민국 정부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2015년 05월 05일	완료 2015년 11월 30일제337회국회(정 기회) 제12차 본회의	2015년 12월 20일	조약 2270
중국	자유무역 협정(FTA)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2015년 06월 01일	완료 2015년 11월 30일제337회국회(정 기회) 제12차 본회의	2015년 12월 20일	조약 2269

체결 대상국가	분야	국문	서명일/각서교환일	국회등의	발효일	조약 번호
베트남	자유무역협정(FTA)	대한민국정부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정부간의 자유무역협정13장(경제협력)에 따른 경제협력을 위한 이행약정	2015년 05월 05일	불요	2015년 12월 20일	고시 874
유럽연합	자유무역협정(FTA)	[다자조약]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2010년 10월 06일	완료 2011년 05월 04일제300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2015년 12월 13일	조약 2263
캐나다	자유무역협정(FTA)	대한민국과 캐나다 간의 자유무역협정	2014년 09월 22일	완료 2014년 12월 02일제329회 국회(정기회) 제13차 본회의	2015년 01월 01일	조약 2216
호주	자유무역협정(FTA)	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2014년 04월 08일	완료 2014년 12월 02일제329회 국회(정기회) 제13차 본회의	2014년 12월 12일	조약 2215
세계무역기구	국제기구	대한민국 정부와 세계무역기구 간의 세계무역기구 도하개발아젠다 세계신탁기금 출연에 관한 약정	2014년 12월 10일	불요	2014년 12월 10일	고시 847
미국	자유무역협정(FTA)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자유무역협정의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 개정에 관한 교환각서	2013년 08월 26일 / 2013년 11월 18일	불요	2014년 01월 01일	조약 2166
세계무역기구	국제기구	대한민국 정부와 세계무역기구 간의 세계무역기구 도하개발아젠다 세계신탁기금 출연에 관한 약정	2013년 11월 01일	불요	2013년 11월 01일	고시 812

체결 대상국가	분야	국문	서명일/각서교환일	국회동의	발효일	조약 번호
크로아티아	무역/통상	대한민국 정부와 크로아티아공화국 정부 간의 무역협정 종료	2013년 03월 12일	불요	2013년 09월 12일	고시 806
터키	자유무역 협정(FTA)	대한민국과 터키공화국 간의 상품무역에 관한 협정	2012년 08월 01일	완료 2012년 11월 22일제311회국회(정 기회) 제12차 본회의	2013년 05월 01일	조약 2134
터키	자유무역 협정(FTA)	대한민국과 터키공화국 간의 자유무역지대를 창설하는 기본협정	2012년 08월 01일	완료 2012년 11월 22일제311회국회(정 기회) 제12차 본회의	2013년 05월 01일	조약 2133
미국	자유무역 협정(FTA)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의 섬유 또는 의류 상품에 대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에 관한 교환각서	2012년 12월 24일 / 2012년 12월 24일	불요	2012년 12월 24일	고시 785
세계무역기구	국제기구	대한민국 정부와 세계무역기구 간의 세계무역기구 도하개발아젠다 국제신탁기금 출연에 관한 약정	2012년 08월 30일	불요	2012년 08월 30일	고시 778
미국	자유무역 협정(FTA)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자유무역협정제22.10조에 따른 모범절차규칙제정을 위한 교환각서	2012년 05월 16일 / 2012년 05월 16일	불요	2012년 06월 01일	고시 770
미국	자유무역 협정(FTA)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FTA)	2007년 06월 30일	완료 2011년 11월 22일제303회 국회(정기회) 제13차 본회의	2012년 03월 15일	조약 2081

체결 대상국가	분야	국문	서명일/ 각서교환일	국회등의	발효일	조약 번호
미국	자유무역 협정(FTA)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자유무역협정에 관한 서한교환	2011년 02월 10일 / 2011년 02월 10일	완공 2011년 11월 22일제303회 국회(정기회) 제13차 본회의	2012년 03월 15일	조약 2082
유럽자유 무역연합	자유무역 협정(FTA)	[다자조약] 대한민국과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부속서의 개정을 위한 교환각서	2011년 12월 26일 / 2011년 12월 28일	불요	2012년 01월 01일	고시 762
세계무역기구	국제기구	대한민국 정부와 세계무역기구 간의 세계무역기구 도하개발아젠다 국제신탁기금 출연에 관한 약정	2011년 12월 07일	불요	2011년 12월 07일	고시 758
페루	자유무역 협정(FTA)	대한민국과 페루공화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2011년 03월 21일	완공 2011년 06월 29일제301회국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	2011년 08월 01일	조약 2054
말레이시아	자유무역 협정(FTA)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 하의 상품무역에 관한 협정 하의 원산지 증명 및 검증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와 말레이시아 정부 간의 상호 행정지원 및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	2010년 11월 15일	불요	2010년 11월 15일	고시 732
세계무역기구	국제기구	세계무역기구도하개발아젠다국제신탁기금출연에 관한 대한민국정부와 세계무역기구간의 양해각서	2010년 11월 09일	불요	2010년 11월 09일	고시 729
세계무역기구	국제기구	세계무역기구 도하개발아젠다 국제신탁기금 출연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와 세계무역기구 간의 양해각서	2009년 10월 26일	불요	2009년 10월 26일	고시 695

체결 대상국가	분야	국문	서명일/각서교환일	국회동의	발효일	조약 번호
이란	무역/통상	대한민국 정부와 이란회교공화국정부간의 무역협정	2006년 07월 06일	불요	2009년 06월 03일	조약 1953
아세안	국제기구	[다자조약]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 하의 서비스무역에 관한 협정	2007년 11월 21일	완전 2009년 03월 02일제281회국회(임시회) 제11차 본회의	2009년 05월 01일	조약 1945
우크라이나	무역/통상	대한민국 정부와 우크라이나 정부 간의 무역협정의 개정에 관한 교환각서	2008년 10월 13일 / 2008년 10월 13일	불요	2008년 10월 13일	고시 669
세계무역기구	국제기구	세계무역기구 도하개발아젠다 국제신탁기금 출연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와 세계무역기구 간의 양해각서	2008년 07월 08일	불요	2008년 07월 08일	고시 662
아랍에미리트	경제/무역	대한민국 정부와 아랍에미리트연합국 정부 간의 경제.무역 및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	2006년 05월 13일	불요	2008년 04월 16일	조약 1895
칠레	자유무역협정(FTA)	2007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를 반영한 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부속서 4(원산지규정) 개정을 위한 교환각서	2008년 01월 24일 / 2008년 02월 07일	불요	2008년 04월 01일	고시 646
싱가포르	무역/통상	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부속서 8B(전기 및 전자장비에 관한 분야별 부속서)의 개정을 위한 교환각서	2007년 10월 22일 / 2007년 10월 23일	불요	2008년 02월 01일	고시 640
싱가포르	무역/통상	2007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를 반영한 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의 개정을 위한 교환각서	2007년 11월 29일 / 2007년 11월 30일	불요	2008년 01월 01일	고시 639

체결 대상국가	분야	국문	서명일/ 각서교환일	국회동의	발효일	조약 번호
싱가포르	자유무역 협정(FTA)	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FTA)	2005년 08월 04일	완료 2005년 12월 01일제256회 국회(정기회) 제14차 본회의	2006년 03월 02일	조약 1767
터키	기타	대한민국 정부와 터키공화국 정부 간의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이스탄불사무소의 법적 지위 부여에 관한 교환각서	2005년 03월 08일 / 2005년 04월 13일	불요	2005년 09월 19일	고시 539
세계무역기구	기타	외교통상부의 세계무역기구 도하개발아젠다 국제신탁기금 출연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와 세계무역기구의 양해각서	2005년 03월 22일	불요	2005년 03월 22일	고시 522
칠레	자유무역 협정(FTA)	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간의 자유무역협정 착오정정을 위한 교환각서	2005년 03월 11일 / 2005년 03월 15일	불요	2005년 03월 15일	고시 521
벨라루스	무역/통상	대한민국 정부와 벨라루스공화국 정부간의 무역협정	2004년 05월 17일	불요	2004년 11월 08일	조약 1705
슬로베니아	무역/통상	대한민국 정부와 슬로베니아공화국 정부간의 무역 및 경제협력협정의 종료를 위한 교환각서	2004년 07월 09일 / 2004년 07월 30일	불요	2004년 07월 30일	고시 505
칠레	자유무역 협정(FTA)	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간의 자유무역협정 통일규칙 개정을 위한 교환각서	2004년 04월 08일 / 2004년 05월 19일	불요	2004년 05월 19일	고시 497

체결 대상국가	분야	국문	서명일/각서교환일	국회등의	발효일	조약 번호
세계무역기구	기타	외교통상부의 세계무역기구 도하개발아젠다 국제신탁기금 출연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와 세계무역기구의 양해각서	2004년 04월 27일	불요	2004년 04월 27일	고시 490
칠레	자유무역협정(FTA)	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간의 자유무역협정	2003년 02월 15일	완료 2004년 02월 16일제245회 임시국회 제6차 본회의	2004년 04월 01일	조약 1665
칠레	자유무역협정(FTA)	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간의 자유무역협정 부속서 3.4 부록1 제2절 영어본 부가를 위한 교환각서	2004년 03월 29일 / 2004년 04월 01일	불요	2004년 04월 01일	고시 487
칠레	자유무역협정(FTA)	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간의 자유무역협정 제3장(상품에 대한 내국민대우 및 시장접근), 제4장(원산지규정), 제5장(통관절차)의 해석, 적용 및 운영에 대한 통일규칙 제정을 위한 교환각서	2004년 03월 12일 / 2004년 04월 01일	불요	2004년 04월 01일	조약 1667
칠레	자유무역협정(FTA)	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간의 자유무역협정 부속서4(원산지규정) 개정을 위한 교환각서	2004년 03월 29일 / 2004년 04월 01일	불요	2004년 04월 01일	고시 486
폴란드	무역/통상	대한민국 정부와 폴란드공화국 정부간의 무역협정 종료에 관한 교환각서	2003년 06월 17일 / 2004년 02월 11일	불요	2004년 02월 11일	고시 485
헝가리	무역/통상	대한민국 정부와 헝가리공화국 정부간의 무역 및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의 종료에 관한 교환각서	2003년 07월 02일 / 2004년 02월 06일	불요	2004년 02월 06일	고시 483

체결 대상국가	분야	국문	서명일/각서교환일	국회동의	발효일	조약 번호
슬로바키아	무역/통상	대한민국 정부와 슬로바키아공화국 정부간의 무역 및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의 종료에 관한 교환각서	2003년 11월 13일 / 2004년 02월 03일	불요	2004년 02월 03일	고시 481
체코	무역/통상	대한민국 정부와 체코공화국 정부간의 무역 및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의 종료에 관한 교환각서	2003년 03월 20일 / 2003년 05월 27일	불요	2003년 05월 27일	고시 467
에티오피아	무역/통상	대한민국 정부와 이디오피아연방민주공화국 정부간의 무역협정	2002년 06월 03일	불요	2003년 04월 24일	조약 1629
유럽연합	국제기구	[다자조약] 대한민국과 구주공동체 및 그 회원국간의 무역과 협력을 위한 기본협정	1996년 10월 28일	불요	2001년 04월 01일	조약 1554
인도네시아	경제/과학/기술	대한민국 정부와 인도네시아공화국 정부간의 경제, 무역 및 기술협력을 위한 공동위원회 설립에 관한 양해각서	2000년 05월 05일	불요	2000년 05월 05일	고시 381
슬로베니아	무역/통상	대한민국 정부와 슬로베니아공화국 정부간의 무역 및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	1999년 01월 21일	불요	2000년 04월 03일	조약 1523
이집트	무역/통상	대한민국 정부와 이집트아랍공화국 정부간의 무역협정	1996년 03월 18일	불요	1998년 05월 02일	조약 1456
스웨덴	무역/통상	‘대한민국 정부와 스웨덴왕국 정부간의 무역관계에 관한 의정서 및 그 부속 교환각서’의 종료	1998년 03월 27일	불요	1998년 04월 26일	고시 338

체결 대상국가	분야	국문	서명일/각서교환일	국회등의	발효일	조약 번호
우크라이나	무역/통상	대한민국 정부와 우크라이나 정부간의 무역협정	1995년 11월 30일	불요	1997년 04월 25일	조약 1400
뉴질랜드	경제/과학/기술	대한민국 외무부와 뉴질랜드 외무무역부간의 경제공동위원회 설치에 관한 약정	1996년 08월 30일	불요	1996년 08월 30일	고시 292
불가리아	무역/통상	대한민국 정부와 불가리아공화국 정부간의 무역협정	1994년 07월 14일	불요	1996년 06월 10일	조약 1340
크로아티아	무역/통상	대한민국 정부와 크로아티아공화국 정부간의 무역협정	1995년 06월 12일	불요	1995년 11월 15일	조약 1313
호주	경제/과학/기술	대한민국 외무부와 호주 대외무역부간 경제공동위 설치를 위한 약정	1993년 12월 17일	불요	1993년 12월 17일	고시 233
리투아니아	무역/통상	대한민국 정부와 리투아니아공화국 정부간의 무역협정	1993년 09월 24일	불요	1993년 11월 09일	조약 1196
프랑스	경제/과학/기술	대한민국 상공자원부와 불란서공화국 산업체신대외무역부간의 산업협력위원회 설립에 관한 약정	1993년 09월 13일	불요	1993년 09월 13일	고시 229
베트남	무역/통상	대한민국 정부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간의 무역협정	1993년 05월 13일	불요	1993년 06월 12일	조약 1174

체결 대상국가	분야	국문	서명일/각서교환일	국회동의	발효일	조약 번호
우즈베키스탄	무역/통상	대한민국 정부와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간의 무역협정	1992년 06월 17일	불요	1992년 11월 20일	조약 1113
중국	경제/과학/기술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간의 경제, 무역 및 기술협력공동위원회 설립 협정	1992년 09월 30일	불요	1992년 10월 30일	조약 1110
중국	무역/통상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간의 무역협정	1992년 09월 30일	불요	1992년 10월 30일	조약 1107
카자흐스탄	무역/통상	대한민국 정부와 카자흐스탄 정부간의 무역협정	1992년 07월 03일	불요	1992년 07월 03일	조약 1096
몽골	무역/통상	대한민국 정부와 몽골인민공화국 정부간의 무역협정	1991년 03월 28일	불요	1991년 04월 30일	조약 1051
체코	무역/통상	대한민국 정부와 체코슬로바키아연방공화국 정부간의 무역 및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	1990년 10월 26일	불요	1991년 04월 02일	조약 1045
루마니아	무역/통상	대한민국 정부와 루마니아 정부간의 무역협정	1990년 08월 07일	불요	1990년 12월 21일	조약 1025
러시아	무역/통상	대한민국 정부와 소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연방 정부간의 무역협정	1990년 12월 14일	불요	1990년 12월 14일	조약 1022

체결 대상국가	분야	국문	서명일/ 각서교환일	국회등의 불요	발효일	조약 번호
가나	경제/과학/ 기술	대한민국 정부와 가나공화국 정부간의 경제.기술협력 및 무역증진에 관한 협정	1990년 06월 14일	불요	1990년 08월 20일	조약 1015
폴란드	무역/통상	대한민국 정부와 폴란드인민공화국 정부간의 무역협정	1989년 11월 01일	불요	1990년 02월 02일	조약 993
헝가리	무역/통상	대한민국 정부와 헝가리인민공화국 정부간의 무역 및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	1989년 02월 01일	불요	1989년 02월 01일	조약 969
레소토	경제/과학/ 기술	대한민국 정부와 레소토왕국 정부간의 무역.경제 및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	1981년 05월 15일	불요	1989년 02월 01일	조약 970
파라과이	무역/통상	대한민국 정부와 파라과이 정부간의 무역협정	1981년 12월 17일	불요	1988년 06월 24일	조약 954
콜롬비아	무역/통상	대한민국 정부와 콜롬비아 정부간의 무역협정	1985년 05월 31일	불요	1986년 12월 10일	조약 915
보츠와나	무역/통상	대한민국 정부와 보츠와나공화국 정부간의 무역협정	1986년 05월 01일	불요	1986년 08월 14일	조약 900
코트디부아르	무역/통상	대한민국 정부와 코트디부아르 공화국 정부간의 무역협정	1986년 08월 09일	불요	1986년 08월 09일	조약 889

체결 대상국가	분야	국문	서명일/각서교환일	국회동의	발효일	조약 번호
파키스탄	경제/과학/기술	대한민국 정부와 파키스탄 정부간의 경제.기술.과학협력 및 무역증진에 관한 협정	1985년 05월 09일	불요	1986년 01월 14일	조약 890
스리랑카	무역/통상	대한민국 정부와 스리랑카 정부간의 무역협정	1984년 05월 28일	불요	1984년 10월 08일	조약 853
카타르	경제/과학/기술	대한민국 정부와 카타르 정부간의 경제.기술 및 무역협력에 관한 협정	1984년 04월 21일	불요	1984년 06월 16일	조약 843
바레인	경제/과학/기술	대한민국 정부와 바레인 정부간의 무역증진 및 경제기술협력을 위한 협정	1984년 04월 02일	불요	1984년 05월 21일	조약 841
쿠웨이트	경제/과학/기술	대한민국 정부와 쿠웨이트국 정부간의 경제.기술협력 및 무역증진에 관한 협정	1983년 08월 08일	불요	1984년 02월 01일	조약 829
카메룬	무역/통상	대한민국 정부와 카메룬공화국 정부간의 무역협정	1979년 05월 01일	불요	1983년 08월 13일	조약 818
이라크	무역/통상	대한민국 정부와 이라크 정부간의 무역 및 경제.기술.과학 협력에 관한 협정	1983년 03월 07일	불요	1983년 07월 21일	조약 816
부르키나파소	무역/통상	대한민국 정부와 에피볼타 공화국 정부간의 무역협정	1978년 10월 16일	불요	1982년 09월 13일	조약 792

체결 대상국가	분야	국문	서명일/각서교환일	국회등의	발효일	조약 번호
몽고민주 공화국	무역/통상	대한민국 정부와 자이레 공화국 정부간의 무역협정	1981년 11월 20일	불요	1982년 08월 11일	조약 788
우루과이	무역/통상	대한민국 정부와 우루과이 정부간의 무역협정	1981년 11월 14일	불요	1982년 08월 11일	조약 784
시에라리온	경제/과학/기술	대한민국과 씨에라레온 공화국간의 무역증진 및 경제·기술협력에 관한 협정	1978년 05월 12일	불요	1981년 06월 11일	조약 756
라이베리아	무역/통상	대한민국 정부와 라이베리아 공화국 정부간의 무역협정	1980년 12월 22일	불요	1981년 05월 07일	조약 747
가봉	무역/통상	대한민국 정부와 가봉 정부간의 무역협정	1975년 07월 07일	불요	1980년 11월 18일	조약 722
미국	조세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에 증진을 위한 협약	1976년 06월 04일	완료 1976년 12월 16일 제96회 국회(정기회) 제17차 본회의	1979년 10월 20일	조약 693
자메이카	무역/통상	대한민국 정부와 자메이카 정부간의 무역협정	1979년 05월 19일	불요	1979년 05월 19일	조약 684

체결 대상국가	분야	국문	서명일/각서교환일	국회동의	발효일	조약 번호
필리핀	무역/통상	대한민국 정부와 필리핀 정부간의 무역협정	1978년 04월 24일	불요	1978년 11월 06일	조약 660
칠레	무역/통상	대한민국 정부와 칠레 정부간의 무역협정	1977년 12월 03일	불요	1978년 07월 14일	조약 649
수단	무역/통상	대한민국과 수단간의 무역증진 및 경제.기술협력에 관한 협정	1976년 12월 09일	불요	1978년 06월 27일	조약 647
과테말라	무역/통상	대한민국 정부와 과테말라 정부간의 무역협정	1977년 03월 26일	불요	1978년 04월 28일	조약 637
아이티	무역/통상	대한민국과 하이티공화국간의 무역협력에 관한 협정	1977년 05월 11일	불요	1978년 04월 27일	조약 636
케냐	경제/과학/기술	대한민국 정부와 케냐 공화국 정부간의 무역 및 경제.기술협력 협정	1977년 08월 04일	불요	1978년 03월 31일	조약 630
차드	무역/통상	대한민국 정부와 차드 정부간의 무역협정	1977년 11월 11일	불요	1978년 01월 27일	조약 627
터키	무역/통상	대한민국 정부와 토오기 정부 간의 무역증진 및 경제.기술협력에 관한 협정	1977년 05월 05일	불요	1977년 12월 06일	조약 614

체결 대상국가	분야	국문	서명일/ 각서교환일	국회등의 발효일	조약 번호
포르투갈	무역/통상	대한민국 정부와 포르투갈 정부간의 무역협정	1977년 12월 02일	불요	조약 611
태국	무역/통상	대한민국 정부와 태국 정부간의 무역협정의 부표 수정	1976년 12월 14일	불요	고시 5
세네갈	무역/통상	대한민국 정부와 세네갈 정부간의 무역협정	1975년 04월 15일	불요	조약 579
이란	무역/통상	대한민국 정부와 이란 왕국 정부간의 무역협정	1976년 02월 12일	불요	조약 578
모로코	무역/통상	대한민국 정부와 모로코 정부간의 무역협정	1976년 05월 22일	불요	조약 575
페루	무역/통상	대한민국 정부와 페루공화국 정부간의 무역협정	1974년 03월 19일	불요	조약 573
뉴질랜드	무역/통상	대한민국 정부와 뉴질랜드 정부간의 무역 및 경제기술협력 협정 (진면개정)	1976년 04월 20일	불요	조약 572
코스타리카	무역/통상	대한민국 정부와 코스타리카 공화국 정부간의 무역협정	1974년 03월 15일	불요	조약 539

체결 대상국가	분야	국문	서명일/각서교환일	국회동의	발효일	조약 번호
호주	무역/통상	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간의 무역 및 경제관계의 발전에 관한 협정 (전문개정)	1975년 06월 17일	불요	1975년 06월 17일	조약 536
그리스	무역/통상	대한민국 정부와希臘공화국 정부간의 무역협정	1974년 10월 04일	불요	1974년 10월 04일	조약 514
인도	경제/과학/기술	대한민국 정부와 인도 정부간의 무역증진 및 경제기술 협력협정	1974년 08월 12일	불요	1974년 08월 12일	조약 511
방글라데시	무역/통상	대한민국 정부와 방글라데시공화국 정부간의 무역 및 경제협력협정	1973년 07월 21일	불요	1973년 07월 21일	조약 482
중양이프라카	무역/통상	대한민국 정부와 중양이프라카 공화국 정부간의 무역협정	1973년 05월 10일	불요	1973년 05월 10일	조약 480
가이아나	무역/통상	대한민국 정부와 가이아나 공화국 정부간의 무역협정	1973년 03월 26일	불요	1973년 03월 26일	조약 478
요르단	무역/통상	대한민국 정부와 요르단 왕국 정부간의 무역협정	1972년 11월 29일	불요	1973년 03월 12일	조약 477
오스트리아	무역/통상	대한민국 정부와 오스트리아 공화국 연방정부간의 무역협정	1971년 09월 01일	불요	1971년 10월 30일	조약 400

체결 대상국가	분야	국문	서명일/각서교환일	국회등의	발효일	조약 번호
네팔	무역/통상	대한민국 정부와 네팔왕국 정부간의 무역협정	1971년 05월 06일	불요	1971년 05월 06일	조약 384
엘살바도르	무역/통상	대한민국 정부와 엘살바도르공화국 정부간의 무역협정	1970년 10월 02일	불요	1971년 01월 26일	조약 366
튀니지	경제/과학/기술	대한민국 정부와 튀니시아공화국 정부간의 무역 및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	1970년 05월 19일	불요	1970년 05월 19일	조약 335
니제르	무역/통상	대한민국 정부와 니제르공화국 정부간의 무역협정	1969년 12월 17일	불요	1969년 12월 17일	조약 323
멕시코	무역/통상	대한민국 정부와 멕시코공화국 정부간의 무역협정	1966년 12월 12일	불요	1969년 03월 17일	조약 293
파키스탄	무역/통상	대한민국 정부와 파키스탄회공화국 정부간의 무역협정	1968년 10월 21일	불요	1968년 10월 21일	조약 287
미얀마	무역/통상	대한민국 정부와 버미(버마) 정부간의 무역협정	1967년 09월 30일	불요	1967년 09월 30일	조약 256
스웨덴	무역/통상	대한민국 정부와 스웨덴왕국 정부간의 무역관계에 관한 의정서	1967년 04월 13일	불요	1967년 04월 13일	조약 245

체결 대상국가	분야	국문	서명일/각서교환일	국회동의	발효일	조약 번호
뉴질랜드	무역/통상	대한민국 정부와 뉴질랜드(뉴질랜드) 정부 간의 무역협정	1967년 01월 31일	불요	1967년 01월 31일	조약 231
캐나다	무역/통상	대한민국과 캐나다간의 무역협정	1966년 12월 20일	불요	1966년 12월 20일	조약 226
일본	무역/통상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무역협정	1966년 03월 24일	불요	1966년 03월 24일	조약 190
일본	무역/통상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무역을 위한 재정협정 종결을 위한 각서교환	1965년 12월 18일 / 1965년 12월 18일	불요	1965년 12월 18일	조약 185
호주	무역/통상	대한민국 정부와 오스트레일리아 연방 정부간의 무역협정	1965년 09월 21일	불요	1965년 09월 21일	조약 154
독일	무역/통상	대한민국 정부와 독일연방공화국 정부간의 무역협정	1965년 04월 09일	불요	1965년 04월 09일	조약 144
이탈리아	무역/통상	대한민국 정부와 이탈리아공화국 정부간의 무역협정	1965년 03월 09일	불요	1965년 03월 09일	조약 142
캄보디아	무역/통상	대한민국과 캄보디아왕국간의 무역 및 지불협정	1964년 10월 16일	불요	1964년 12월 08일	조약 133

체결 대상국가	분야	국문	서명일/ 각서교환일	국회등의 발효일	조약 번호
필리핀	무역/통상	대한민국 정부와 필리핀 정부 간의 무역협정의 개정을 위한 협정 (1961년 한비 무역협정 및 합의의사록의 개정협정)	1964년 08월 08일	불요	조약 129
미얀마	무역/통상	대한민국 정부와 버마연방 정부 간의 무역협정	1964년 06월 17일	불요	조약 125
인도	무역/통상	대한민국 정부와 인도 정부간의 무역에 관한 각서교환	1964년 04월 29일 / 1964년 04월 29일	불요	조약 124
브라질	무역/통상	대한민국 정부와 브라질합중국(브라질) 정부간의 무역협정 (각서교환)	1963년 05월 21일 / 1963년 05월 21일	불요	조약 116
태국	세관	대한민국 정부와 태왕국(태국) 정부간의 무역관 전시품 면세통관에 관한 각서교환	1963년 05월 13일 / 1963년 05월 13일	불요	조약 115
말레이시아	무역/통상	대한민국과 말라야연방간의 무역협정	1962년 11월 05일	완료 1962년 11월 30일(최고회의) 제10회 제87차	조약 105
베트남	무역/통상	대한민국 정부와 월남공화국 정부간의 무역협정	1962년 12월 19일	불요	조약 104
태국	무역/통상	대한민국 정부와 태왕국 정부간의 무역협정	1961년 09월 15일	불요	조약 82

체결 대상국가	분야	국문	서명일/각서교환일	국회동의	발효일	조약 번호
필리핀	무역/통상	대한민국 정부와 필리핀(필리핀)공화국 정부간의 무역협정	1961년 02월 24일	불요	1961년 02월 24일	조약 73
일본	무역/통상	대한민국과 점령하 일본간의 무역을 위한 재정협정에 의하여 설정된 청산계정중의 채권리와 이해관계의 이양과 인수를 위한 대한민국 정부, 연합군 최고사령관 및 일본 정부간의 협정	1951년 11월 07일	불요	1951년 11월 07일	조약 1141
일본	무역/통상	대한민국과 점령하 일본간의 무역협정	1950년 06월 06일	불요	1950년 04월 01일	조약 1132
일본	무역/통상	대한민국과 점령하 일본간의 무역을 위한 재정협정	1950년 06월 06일	불요	1950년 04월 01일	조약 1133

무역관련 다자조약 목록

분야	국문	원조약 발효일	국회동의	우리나라 발효일	조약번호
무역/통상/산업	대한민국과 중미 공화국들 간의 자유무역협정		원료 2019년 08월 02일 제370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2019년 10월 01일	조약 2431
무역/통상/산업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 하의 상품무역에 관한 협정 부속서 3(원산지 규정)의 부록 2 품목별 원산지 기준 변경을 승인하기 위한 결정		불요	2019년 09월 01일	조약 2429
무역/통상/산업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 협정 부속서 3(무역정책검토제도)개정		불요	2019년 01월 01일	조약 2406
무역/통상/산업	아시아 태평양 무역협정에 대한 제2차 개정	2018년 07월 01일	불요	2018년 07월 01일	조약 2389
무역/통상/산업	2012년도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를 반영한 대한민국과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부속서 1의 부록 2(품목별 원산지 규정) 및 부록 4(역외가공 인정 품목 목록) 개정	2017년 12월 01일	불요	2017년 12월 01일	조약 2365
무역/통상/산업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 하의 상품무역에 관한 협정 부속서 3(원산지 규정)의 제6조(특정상품의 취급)을 위한 전환된 상품목록을 승인하는 결정	2017년 11월 01일	불요	2017년 11월 01일	조약 2364

분야	국문	원조약 발효일	국회동의	우리나라 발효일	조약번호
무역/통상/산업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 협정 개정의정서	2017년 02월 22일	불요	2017년 02월 22일	조약 2345
무역/통상/산업	무역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의 개정을 위한 의정서	2017년 01월 23일	불요	2017년 01월 23일	조약 2341
무역/통상/산업	대한민국과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부속서 I 제21조제1항 및 제24조제7항 개정	2017년 01월 01일	불요	2017년 01월 01일	조약 2329
무역/통상/산업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 협정 부속서 I가 중 1994년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에 대한 마라케쉬 의정서에 부속된 대한민국 양허표 개정	2016년 12월 01일	불요	2016년 12월 01일	조약 2326
무역/통상/산업	크로아티아의 유럽연합 가입을 고려하기 위한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의 추가 의정서	2016년 01월 01일	인료 2014년 04월 29일제324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2016년 01월 01일	조약 2273
무역/통상/산업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포괄적 경제 협력에 관한 기본협정 하의 상품무역에 관한 협정의 개정을 위한 제3의정서	2016년 01월 01일	불요	2016년 01월 01일	조약 2281
무역/통상/산업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2015년 12월 13일	인료 2011년 05월 04일제300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2015년 12월 13일	조약 2263

분야	국문	원조약 발효일	국회동의	우리나라 발효일	조약번호
무역/통상/산업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 하의 상품무역에 관한 협정 중 부속서3(원산지규정)의 부속2(품목별원산지기준) 개정	2015년 05월 01일	불요	2015년 05월 01일	조약 2240
무역/통상/산업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 하의 상품무역에 관한 협정 부속서 3의 부속1 원산지 규정을 위한 원산지 증명 운영절차 개정	2014년 01월 01일	불요	2014년 01월 01일	조약 2167
무역/통상/산업	아시아태평양무역협정 참가국 간의 서비스 무역 증진 및 자유화에 관한 기본협정	2013년 09월 13일	불요	2013년 09월 13일	조약 2334
무역/통상/산업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 하의 상품무역에 관한 협정의 개정을 위한 두번째 의정서	2012년 07월 11일	불요	2012년 07월 11일	조약 2095
무역/통상/산업	대한민국과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부속서의 개정을 위한 교환각서	2012년 01월 01일	불요	2012년 01월 01일	고시 762
무역/통상/산업	아시아태평양무역협정 참가국 간의 투자자의 촉진, 보호 및 자유화에 관한 기본협정	2011년 04월 06일	불요	2011년 04월 06일	조약 2333
무역/통상/산업	아시아태평양무역협정 참가국 간의 무역원활화에 관한 기본협정	2011년 04월 06일	불요	2011년 04월 06일	조약 2332
무역/통상/산업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 하의 상품무역에 관한 협정의 개정을 위한 의정서	2011년 03월 01일	불요	2011년 03월 01일	고시 737

분야	국문	원조약 발효일	국회동의	우리나라 발효일	조약번호
무역/통상/산업	태국왕국의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 하의 상품무역에 관한 협정 가입 의정서	2010년 01월 01일	완료 2009년 11월 06일제284회 국회(정기회) 제8차 본회의	2010년 01월 01일	조약 1983
무역/통상/산업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 하의 상품무역협정 부속서 3의 제6조에 대한 교환각서 및 개성공단 특별품목목록(09.2.27)	2010년 01월 01일	불요	2010년 01월 01일	고시 702
무역/통상/산업	태국왕국의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 하의 서비스 무역에 관한 협정 가입 의정서	2010년 01월 01일	완료 2009년 11월 06일제284회 국회(정기회) 제8차 본회의	2010년 01월 01일	조약 2019
무역/통상/산업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 하의 상품무역협정 부속서 3의 부록 2에 규정된 품목별 원산지 기준의 개정을 위한 양해각서	2009년 10월 31일	불요	2009년 10월 31일	고시 697
무역/통상/산업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 하의 서비스무역에 관한 협정	2009년 05월 01일	완료 2009년 03월 02일제281회 국회(임시회) 제11차 본회의 비준동의	2009년 05월 01일	조약 1945
무역/통상/산업	대한민국-유럽자유무역연합 공동위원회 결정	2009년 04월 21일	불요	2009년 04월 21일	고시 683
무역/통상/산업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 하의 상품무역에 관한 협정	2007년 06월 01일	완료 2007년 04월 02일제266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2007년 06월 01일	조약 1852

분야	국문	원조약 발효일	국회동의	우리나라 발효일	조약번호
무역/통상/산업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 하의 상품무역협정 당사국들간의 최소수입물량에 관한 양해각서	2007년 06월 01일	불요	2007년 06월 01일	고시 631
무역/통상/산업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회원국정부간의포괄적경제협력에관한기본협정의하의상품무역협정당사국들간의연결원산지증명서에관한양해각서	2007년 06월 01일	불요	2007년 06월 01일	고시 632
무역/통상/산업	대한민국과 유림자유무역연합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대한 최종의정서		완료 2006년 06월 30일제260회 임시국회 제3차 본회의	2006년 09월 01일	조약 1804
무역/통상/산업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의 개발도상회원국간 무역협상에 관한 제1차협정(방콕협정)에 대한 개정으로서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	2006년 09월 01일	완료 2006년 06월 30일제260회 임시국회 제3차 본회의	2006년 09월 01일	조약 1802
무역/통상/산업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 협정 부속서 1가 중 1994년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에 대한 마라케쉬 의정서에 부속된 대한민국 양허표 일부개정	2005년 11월 23일	완료 2005년 11월 23일제256회 국회(정기회) 제13차 본회의 비준동의	2005년 11월 23일	조약 1755
무역/통상/산업	대한민국과 구주공동체 및 그 회원국간의 무역과 협력을 위한 기본협정	2001년 04월 01일	완료 1996년 11월 20일	2001년 04월 01일	조약 1554
무역/통상/산업	세계무역기구설립을 위한 마라케쉬협정 부속서1 가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 제7부속서 나호 정정	1995년 01월 01일	불요	2001년 02월 03일	고시 411

분야	국문	원조약 발효일	국회동의	우리나라 발효일	조약번호
무역/통상/산업	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에 대한 제5의정서 금융수정양허표	1999년 09월 13일	불요	1999년 09월 13일	고시 367
무역/통상/산업	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5의정서	1999년 03월 01일	불요	1999년 03월 01일	고시 360
무역/통상/산업	서비스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4의정서	1998년 02월 05일	불요	1998년 02월 05일	고시 337
무역/통상/산업	서비스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2의정서	1996년 09월 01일	불요	1996년 09월 01일	조약 1350
농업/식량/1차산업	1995년 곡물무역협약	1995년 07월 01일	불요	1996년 03월 04일	조약 1330
무역/통상/산업	세계무역기구설립을 위한 마라케쉬협정 (WTO)	1995년 01월 01일	완료 1994년 12월 16일 제170회 국회 제19차 본회의	1995년 01월 01일	조약 1265
무역/통상/산업	직물류 국제무역에 관한 약정의 연장의정서 (1993)	1994년 01월 01일	불요	1994년 05월 18일	조약 1225
무역/통상/산업	직물류 국제무역에 관한 약정의 연장의정서 (1992)	1993년 01월 01일	불요	1993년 05월 17일	조약 1170
무역/통상/산업	직물류 국제무역에 관한 약정의 연장의정서 (1991)	1991년 08월 01일	불요	1992년 01월 28일	조약 1077
무역/통상/산업	개발도상국간特惠무역제도에 관한 협정(GSTP)	1989년 04월 19일	불요	1989년 06월 11일	조약 977
무역/통상/산업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에 대한 제2차 체네바(1987)의정서	1988년 01월 01일	불요	1988년 01월 01일	조약 945
농업/식량/1차산업	1986년 소매무역협약	1986년 07월 01일	불요	1987년 07월 01일	조약 924

분야	국문	원조약 발효일	국회동의	우리나라 발효일	조약번호
무역/통상/산업	섬유류 국제무역에 관한 약정의 연장의정서 (1986)	1986년 08월 01일	불요	1986년 10월 09일	조약 904
무역/통상/산업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6조의 시행에 관한 협정	1980년 01월 01일	불요	1986년 03월 26일	조약 877
농업/식량/차산품	1971년 소맥무역협약의 계속연장을 위한 1983년 의정서	1983년 07월 01일	불요	1983년 07월 01일	고시 89
무역/통상/산업	직물류 국제무역에 관한 약정의 연장의정서 (1981)	1982년 01월 01일	불요	1982년 03월 12일	조약 774
농업/식량/차산품	1971년 소맥무역협약의 제6차 연장을 위한 1981년 의정서	1981년 07월 01일	불요	1981년 07월 01일	고시 68
무역/통상/산업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7조의 시행에 관한 협정 및 의정서	1981년 01월 01일	완료 1980년 12월 05일 국가보위임법 회의 제8차 본회의	1981년 02월 06일	조약 729
무역/통상/산업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에 대한 제네바(1979)의정서에 대한 추가의정서	1980년 01월 01일	완료 1980년 12월 05일 국가보위임법 회의 제8차 본회의 수락동의	1981년 01월 06일	조약 728
무역/통상/산업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	1980년 01월 01일	불요	1980년 10월 02일	조약 715
무역/통상/산업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6조, 제16조 및 제23조의 해석과 적용에 관한 협정 (보조금 및 상계관계 규약)	1980년 01월 01일	불요	1980년 07월 10일	조약 709
농업/식량/차산품	1971년 소맥무역협약의 제5차 연장을 위한 1979년 의정서	1979년 07월 01일	불요	1979년 07월 01일	고시 40

분야	국문	원조약 발효일	국회동의	우리나라 발효일	조약번호
농업/식량/차산품	1971년 소맥무역협약의 제4차 연장을 위한 1978년 의정서	1978년 07월 01일	불요	1978년 07월 01일	고시 18
무역/통상/산업	직물류 국제무역에 관한 약정의 연장의정서 (1977)	1978년 02월 16일	불요	1978년 02월 16일	조약 628
무역/통상/산업	아세아·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의 개발도상회원국간의 무역협상에 관한 1차협정	1976년 06월 17일	완료 1976년 03월 23일제95회 임시국회 제3차 본회의	1976년 06월 17일	조약 574
농업/식량/차산품	1971년 소맥무역협약의 추가연장을 위한 의정서	1975년 07월 01일	불요	1975년 07월 01일	조약 537
농업/식량/차산품	1971년 소맥무역협약의 연장을 위한 의정서	1974년 07월 01일	불요	1974년 07월 01일	조약 509
무역/통상/산업	직물류 국제무역에 관한 약정	1974년 01월 01일	불요	1974년 03월 18일	조약 497
무역/통상/산업	개발도상국간의 무역협상에 관한 의정서	1973년 02월 11일	완료 1972년 11월 28일	1973년 02월 11일	조약 462
농업/식량/차산품	1971년 소맥무역협약	1971년 06월 18일	완료 1971년 12월 16일제78회 국회 제32차 본회의	1972년 03월 07일	조약 417
농업/식량/차산품	1967년 소맥무역협약	1968년 07월 01일	완료 1968년 05월 02일	1968년 07월 01일	조약 279
무역/통상/산업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에 대한 1967년 체네바의정서	1968년 01월 01일	완료 1968년 05월 02일	1968년 06월 18일	조약 274
무역/통상/산업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에의 대한민국 가입을 위한 의정서		완료 1967년 03월 10일	1967년 04월 14일	조약 243

관세관련 양자조약 목록

체결대상 국가	분야	국문	서명일/각서교환일	국회동의	발효일	조약 번호
사우디아라비아	운수소득 면세	대한민국 정부와 사우디아라비아왕국 정부간의 양국 항공운수 기업활동에 부과되는 조세 및 관세의 상호면세를 위한 협정	1990년 01월 29일	완료 1990년 12월 15일제151회 국회(정기회) 제17차 본회의	1991년 07월 18일	조약 1057
쿠웨이트	운수소득 면세	대한민국 정부와 쿠웨이트국 정부간의 지정항공사 활동과 장비에 관한 조세와 관세의 면제를 위한 약정	1984년 12월 01일	불요	1985년 12월 01일	조약 871
프랑스	세관	대한민국 정부와 불란서공화국 정부간의 관세에 관한 각서교환	1963년 03월 12일 / 1963년 03월 12일	불요	1963년 04월 01일	조약 108
베트남	세관	대한민국 정부와 월남공화국 정부간의 관세에 관한 각서교환	1958년 12월 17일 / 1958년 12월 30일	불요	1959년 01월 01일	조약 47

관세관련 다자조약 목록

분야	국문	원조약 발효일	국회동의	우리나라 발효일	조약번호
무역/통상/산업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 협정 부속서 1가 중 1994년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에 대한 마라케쉬 의정서에 부속된 대한민국 양허표 개정	2016년 12월 01일	불요	2016년 12월 01일	조약 2326
관세	관세율표 발간을 위한 국제동맹의 설립에 관한 협약 탈퇴		불요	2010년 04월 01일	고시 561
관세	국제도로 면세통과 증서의 담보하에 행하는 화물의 국제운송에 관한 관세협약 개정	2006년 08월 12일	불요	2006년 08월 12일	고시 579
관세	국제도로 면세통과 증서의 담보하에 행하는 화물의 국제운송에 관한 관세협약 개정	2006년 08월 12일	불요	2006년 08월 12일	고시 580
관세	복합구조침 집적회로의 무관세대우에 관한 협정	2006년 04월 01일	불요	2006년 04월 01일	조약 1773
무역/통상/산업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 협정 부속서 1가 중 1994년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에 대한 마라케쉬 의정서에 부속된 대한민국 양허표 일부개정	2005년 11월 23일	완료 2005년 11월 23일제256회 국회(정기회) 제13차 본회의 비준동의	2005년 11월 23일	조약 1755
무역/통상/산업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에 대한 제2차 제네바(1987)의정서	1988년 01월 01일	불요	1988년 01월 01일	조약 945
무역/통상/산업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6조의 시행에 관한 협정	1980년 01월 01일	불요	1986년 03월 26일	조약 877
관세	1972년 콘테이너에 관한 관세협약	1975년 12월 06일	불요	1985년 04월 19일	조약 854

분야	국문	원조약 발효일	국회동의	우리나라 발효일	조약번호
관세	과학장비의 일시수입에 관한 관세협약	1970년 09월 10일	불요	1982년 09월 18일	조약 790
관세	교육용구의 일시수입에 관한 관세협약	1970년 09월 10일	불요	1982년 09월 18일	조약 791
관세	국제도로 면세통과 증서의 담보하에 행하는 화물의 국제운송에 관한 관세협약 (TIR convention)	1978년 03월 20일	완료 1981년 12월 14일제108회 국회	1982년 07월 28일	조약 773
무역/통상/산업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7조의 시행에 관한 협정 및 의정서	1981년 01월 01일	완료 1980년 12월 05일국가보위인범회의 제8차 본회의	1981년 02월 06일	조약 729
무역/통상/산업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에 대한 제네바(1979)의정서에 대한 추가의정서	1980년 01월 01일	완료 1980년 12월 05일국가보위인범회의 제8차 본회의 수락동의	1981년 01월 06일	조약 728
무역/통상/산업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6조, 제16조 및 제23조의 해석과 적용에 관한 협정 (보조금 및 상계관세 규약)	1980년 01월 01일	불요	1980년 07월 10일	조약 709
관세	물품의 일시수입을 위한 일시수입 통관 증서에 관한 관세협약 (A.T.A 협약)	1963년 07월 30일	불요	1978년 07월 03일	조약 641
관세	직업용구의 일시수입에 관한 관세협약	1962년 07월 01일	불요	1978년 07월 03일	조약 642
관세	관세율표상의 물품의 분류를 위한 품목분류에 관한 협약 부속서 수정		불요	1978년 01월 01일	고시 14
관세	전시회, 전람회, 회의 기타 유사한 행사에서의 전시 또는 사용될 물품의 수입상의 편의에 관한 관세협약	1962년 07월 13일	불요	1976년 01월 21일	조약 560
관세	선원의 후생용품에 관한 관세협약	1965년 12월 11일	불요	1976년 01월 21일	조약 561

분야	국문	원조약 발효일	국회동의	우리나라 발효일	조약번호
관세	포장용기의 일시적 수입에 관한 관세협약	1962년 03월 15일	불요	1976년 01월 21일	조약 559
관세	관세율표 발간을 위한 국제동맹의 설립에 관한 협약	1950년 05월 05일	불요	1971년 07월 21일	조약 1393
관세	관세율표상 물품의 분류를 위한 품목 분류에 관한 협약 및 수정의정서	1959년 09월 11일	완료 1968년 04월 16일제65회 국회 1차 본회의	1968년 10월 02일	조약 284
관세	관세 목적을 위한 물품의 평가에 관한 협약	1953년 07월 28일	완료 1968년 04월 16일제65회 국회 1차 본회의	1968년 10월 02일	조약 283
관세	관세협력이사회 설립에 관한 협약 (부속서 및 의정서 포함) (CCC)	1952년 11월 04일	완료 1968년 04월 16일제65회 국회 1차 본회의	1968년 07월 02일	조약 275
무역/통상/산업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에 대한 1967년 제네바의정서	1968년 01월 01일	완료 1968년 05월 02일	1968년 06월 18일	조약 274
무역/통상/산업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에의 대한민국 가입을 위한 의정서		완료 1967년 03월 10일	1967년 04월 14일	조약 243

재정관련 양자조약 목록

체결대상 국가	분야	국문	서명일/각서 교환일	국회동의	발효일	조약번호
북대서양 조약기구	군사안보	대한민국 정부와 북대서양조약기구 간의 대한민국의 아프가니스탄 국제안보지원군 기여에 관한 재정 합의를 위한 교환각서	2010년 04월 12일 / 2010년 04월 13일	불요	2010년 04월 13일	조약 2004
유엔	국제기구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연합 간의 개발을 위한 정보통신기술 아시아-태평양 훈련센터를 위한 행정 및 재정조치에 관한 협정 일부 개정을 위한 각서 교환	2006년 05월 08일 / 2006년 05월 26일	불요	2006년 05월 26일	고시 573
유엔	기타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연합 간의 개발을 위한 정보통신기술 아시아-태평양 훈련센터를 위한 행정 및 재정조치에 관한 협정	2006년 01월 31일	완료 2006년 03월 02일제258회 국회(임시회) 제11차 본회의	2006년 03월 16일	조약 1771
국제연합 식량농업 기구	국제기구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 간 상호 합의한 개발도상국 사업의 재정지원에 관한 신탁기금설립 양해각서의 개정을 위한 교환각서	2001년 01월 12일 / 2001년 02월 07일	불요	2001년 02월 07일	고시 412
국제연합 식량농업 기구	국제기구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 간 상호 합의한 개발도상국 사업의 재정지원을 위한 신탁기금 설립 양해각서	1996년 12월 19일	불요	1996년 12월 19일	고시 299
독일	재정	대한민국 정부와 독일연방공화국 정부간의 재정협력에 관한 협정	1982년 09월 22일	완료 1981년 11월 30일제108회 국회(정기회) 제15차 본회의	1982년 09월 22일	조약 793

체결대상 국가	분야	국문	서명일/각서 교환일	국회동의	발효일	조약번호
독일	재정	대한민국 정부와 독일연방공화국 정부간의 재정협력에 관한 협정	1981년 05월 14일	완료 1980년 12월 16일 국가보위입법회의 제10차 본회의	1981년 05월 14일	조약 746
독일	재정	대한민국 정부와 독일연방공화국 정부간의 재정협력에 관한 협정	1980년 02월 18일	완료 1979년 12월 01일 제103회 국회(정기회) 제9차 본회의	1980년 02월 18일	조약 704
독일	재정	대한민국 정부와 독일연방공화국 정부간의 재정협력에 관한 협정	1979년 01월 15일	완료 1978년 11월 14일 제100회 국회(정기회) 제13차 본회의	1979년 01월 15일	조약 669
독일	재정	대한민국 정부와 독일연방공화국 정부간의 재정지원에 관한 협정	1978년 02월 13일	완료 1977년 11월 28일 제98회 정기국회 제15차 본회의	1978년 02월 13일	조약 626
독일	재정	대한민국 정부와 독일연방공화국 정부간의 재정지원에 관한 협정	1977년 04월 14일	완료 1976년 12월 16일 제96회 국회(정기회) 제17차 본회의	1977년 04월 14일	조약 597
독일	재정	대한민국 정부와 독일연방공화국 정부간의 재정지원에 관한 협정	1976년 03월 05일	완료 1975년 07월 09일 제93회 국회 제6차 본회의	1976년 03월 05일	조약 568

체결대상 국가	분야	국문	서명일/각서 교환일	국회동의	발효일	조약번호
독일	재정	대한민국 정부와 독일연방공화국 정부간의 재정원조에 관한 협정	1975년 04월 15일	완료 1974년 12월 01일 제90회 국회(정기회) 제15차 본회의	1975년 04월 15일	조약 531
독일	재정	대한민국 정부와 독일연방공화국 정부간의 재정원조에 관한 협정	1974년 05월 17일	완료 1973년 12월 01일 제88회 국회(정기회) 제16차 본회의	1974년 05월 17일	조약 503
독일	재정	대한민국 정부와 독일연방공화국 정부간의 재정원조에 관한 협정	1973년 11월 20일	불요	1973년 11월 20일	조약 487
독일	재정	대한민국 정부와 독일연방공화국 정부간의 재정원조에 관한 협정	1972년 11월 17일	완료 1972년 11월 28일 제6호 비상국무회의법 제3조에 근거	1972년 11월 17일	조약 446
독일	재정	대한민국 정부와 독일연방공화국 정부간의 재정원조에 관한 협정	1971년 05월 21일	완료 1971년 12월 21일 제78회 국회 제34차 본회의	1971년 05월 21일	조약 409
독일	재정	1964년 12월 7일자 대한민국과 독일연방공화국 정부간의 재정원조협정을 일부 수정하기 위한 약정	1966년 09월 30일	불요	1966년 09월 30일	조약 222
독일	차관	중소기업육성을 위한 서독재건은행(KfW)과의 재정차관협정	1966년 01월 24일	완료 1965년 03월 26일 제48회 국회(임시회) 제18차 본회의	1966년 01월 24일	조약 191

체결대상 국가	분야	국문	서명일/각서 교환일	국회동의	발효일	조약번호
독일	차관	(대한민국과) 서독 KFW와의 부산시 상수도 확장사업을 위한 재정차관 협정	1966년 01월 24일	완료 1965년 03월 26일 임시국회(제18차)	1966년 01월 24일	조약 188
일본	무역/통상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무역을 위한 재정협정 종결을 위한 각서교환	1965년 12월 18일 / 1965년 12월 18일	불요	1965년 12월 18일	조약 185
독일	차관	대한민국과 서독 KFW와의 통신망 확장사업을 위한 재정차관협정	1965년 11월 04일	완료 1965년 03월 26일 제48회 국회(임시회) 제18차 본회의	1965년 11월 04일	조약 160
독일	차관	MRO 자재도입을 위한 (대한민국과) 서독 KFW와의 재정차관협정	1965년 09월 17일	완료 1965년 03월 26일 제48회 국회(임시회) 제18차 본회의	1965년 09월 17일	조약 158
독일	재정	대한민국 정부와 독일연방공화국 정부간의 재정원조에 관한 협정	1964년 12월 07일	완료 1965년 03월 26일 제48회 국회(임시회) 제18차 본회의	1964년 12월 07일	조약 141
미국	경제/과학/기술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경제재건과 재정안정계획에 관한 합동경제위원회 협정	1953년 12월 14일	불요	1953년 12월 14일	조약 1160
일본	무역/통상	대한민국과 점령하 일본간의 무역을 위한 재정협정에 의하여 설정된 청산계정중의 채권리와 이해관계의 이양과 인수를 위한 대한민국 정부, 연합군 최고사령관 및 일본 정부간의 협정	1951년 11월 07일	불요	1951년 11월 07일	조약 1141

체결대상 국가	분야	국문	서명일/각서 교환일	국회동의	발효일	조약번호
일본	무역/통상	대한민국과 점령하 일본간의 무역을 위한 재정협정	1950년 06월 06일	불요	1950년 04월 01일	조약 1133
미국	재정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의 재정 및 재산에 관한 최중협정	1950년 01월 17일	안표 1950년 04월 22일제6회 국회 제83차 본회의	1950년 01월 17일	조약 1131
미국	재정	대한민국 정부 및 미국 정부간의 재정 및 재산에 관한 최중협정	1948년 09월 11일	안표 1948년 09월 18일제1회 제69차	1948년 09월 20일	조약 1

양자조약목록(차관)

연번	체결대상 국가	국문	차관금액 (\$)	서명일/각서 교환일	국회 동의	발효일	조약 번호
1	라오스	대한민국 정부와 라오인민민주공화국 정부 간의 2020~2023년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기본약정	500,000,000	2019년 09월 05일	불요	2019년 09월 05일	고시 924
2	미얀마	대한민국 정부와 미얀마연방공화국 정부 간의 2018~2022년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기본약정	1,000,000,000	2019년 09월 03일	불요	2019년 09월 03일	고시 923
3	세네갈	대한민국 정부와 세네갈공화국 정부 간의 국립암센터 건립사업을 위한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85,500,000	2019년 07월 18일	불요	2019년 07월 18일	고시 922
4	조지아	대한민국 정부와 조지아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협정	없음	2019년 01월 31일	불요	2019년 05월 01일	조약 2413
5	파키스탄	대한민국 정부와 파키스탄이슬람공화국 정부 간의 2018~2020년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기본약정	500,000,000	2019년 04월 24일	불요	2019년 04월 24일	고시 917
6	에티오피아	대한민국 정부와 에티오피아연방민주공화국 정부 간의 2019년~2020년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기본약정	300,000,000	2019년 04월 16일	불요	2019년 04월 16일	고시 916
7	캄보디아	대한민국 정부와 캄보디아왕국 정부 간의 2019~2023년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기본약정	700,000,000	2019년 03월 15일	불요	2019년 03월 15일	고시 915
8	이집트	대한민국 정부와 이집트아랍공화국 정부 간의 이집트 카이로 메트로 3호선 전동차(32대) 구매사업을 위한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243,000,000 EUR	2018년 08월 26일	불요	2018년 11월 22일	고시 912

연번	채결대상 국가	국문	차관금액 (\$)	서명일/각서 교환일	구회 등의	발효일	조약 번호
9	필리핀	대한민국 정부와 필리핀공화국 정부 간의 2017~2022년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기본약정	1,000,000,000	2018년 05월 04일	불요	2018년 05월 04일	고시 909
10	몽골	대한민국 정부와 몽골 정부 간의 2017-2019년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기본약정	700,000,000	2018년 01월 16일	불요	2018년 04월 19일	고시 908
11	코트디부아르	대한민국 정부와 코트디부아르공화국 정부 간의 국립암센터 건립사업을 위한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110,358,000	2018년 02월 08일	불요	2018년 02월 08일	고시 907
12	방글라데시	대한민국 정부와 방글라데시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2017-2020년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기본약정	500,000,000	2018년 01월 29일	불요	2018년 01월 29일	고시 906
13	스리랑카	대한민국 정부와 스리랑카민주사회주의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2017년~2019년)에 관한 기본약정	500,000,000	2017년 11월 29일	불요	2017년 11월 29일	고시 901
14	우즈베키스탄	대한민국 정부와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 간의 2018-2020년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기본약정	500,000,000	2017년 11월 23일	불요	2017년 11월 23일	고시 900
15	케냐	대한민국 정부와 케냐공화국 정부 간의 과학기술인 건립사업을 위한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94,697,000	2017년 11월 20일	불요	2017년 11월 20일	고시 903
16	베트남	대한민국 정부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 간의 2016년-2020년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기본약정	1,500,000,000	2017년 11월 08일	불요	2017년 11월 08일	고시 899
17	인도	대한민국 정부와 인도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협정	없음	2017년 06월 14일	불요	2017년 06월 14일	조약 2356
18	니카라과	대한민국 정부와 니카라과공화국 정부 간의 마나과 우회도로 건설사업을 위한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70,590,000	2017년 03월 30일	불요	2017년 03월 30일	고시 897

연번	채결대상 국가	국문	차관금액 (\$)	서명일/각서 교환일	국회 동의	발효일	조약 번호
19	가나	대한민국 정부와 가나공화국 정부 간의 2017-2019년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기본약정	200,000,000	2017년 03월 29일	불요	2017년 03월 29일	고시 896
20	볼리비아	대한민국 정부와 볼리비아국민족국 정부 간의 2015년~2019년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기본약정	250,000,000	2015년 03월 27일	불요	2017년 02월 01일	고시 891
21	캄보디아	대한민국 정부와 캄보디아왕국 정부 간의 2016-2018년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기본약정	350,000,000	2017년 01월 31일	불요	2017년 01월 31일	고시 893
22	캄보디아	대한민국 정부와 캄보디아왕국 정부 간의 캄보디아 48번국도 개보수사업을 위한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67,434,000	2017년 01월 31일	불요	2017년 01월 31일	고시 894
23	이집트	대한민국 정부와 이집트아랍공화국 정부 간의 이집트 나흐마디-룩소르 구간 철도 신호시스템 현대화사업을 위한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114,978,000	2016년 03월 03일	불요	2017년 01월 09일	고시 892
24	인도네시아	대한민국 정부와 인도네시아공화국 정부 간의 2016-2020년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기본약정	600,000,000	2016년 12월 30일	불요	2016년 12월 30일	고시 890
25	이집트	대한민국 정부와 이집트아랍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기본협정	없음	2016년 03월 03일	불요	2016년 12월 29일	조약 2340
26	우즈베키스탄	대한민국 정부와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 간의 2016-2018년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기본약정	400,000,000	2016년 12월 21일	불요	2016년 12월 21일	고시 889
27	스리랑카	대한민국 정부와 스리랑카민주사회주의공화국 정부 간의 2016년~2018년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기본약정	300,000,000	2016년 07월 13일	불요	2016년 07월 13일	고시 887
28	잠비아	대한민국 정부와 잠비아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협정	없음	2016년 06월 21일	불요	2016년 06월 21일	조약 2294

연번	채결대상 국가	국문	차관금액 (\$)	서명일/각서 교환일	구회 등의	발효일	조약 번호
29	잠비아	대한민국 정부와 잠비아공화국 정부 간의 공공안전정보화 시스템 구축사업을 위한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41,532,000	2016년 06월 21일	불요	2016년 06월 21일	고시 886
30	에티오피아	대한민국 정부와 에티오피아연방민주공화국 정부 간의 2016년~2018년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기본약정	500,000,000	2016년 05월 26일	불요	2016년 05월 26일	고시 885
31	필리핀	대한민국 정부와 필리핀공화국 정부 간의 팜유햄만 교량 사업을 위한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100,132,000	2016년 04월 28일	불요	2016년 04월 28일	고시 883
32	니카라과	대한민국 정부와 니카라과공화국 정부 간의 지방 재생에너지 개발사업을 위한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33,380,000	2016년 04월 08일	불요	2016년 04월 08일	고시 880
33	세네갈	대한민국 정부와 세네갈공화국 정부 간의 제2차 세네갈 해상인프라 구축사업을 위한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88,190,000	2016년 04월 05일	불요	2016년 04월 05일	고시 879
34	몽골	대한민국 정부와 몽골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2011~2015년)에 관한 기본약정의 개정에 관한 교환각서	300,000,000	2015년 12월 16일 / 2015년 12월 16일	불요	2015년 12월 16일	고시 873
35	요르단	대한민국 정부와 요르단왕국 정부 간의 나우르 폐수처리사업을 위한 대외경제협력기금 보충용자 차관에 관한 약정	30,000,000	2015년 12월 14일	불요	2015년 12월 14일	고시 870
36	라오스	대한민국 정부와 라오인민민주공화국 정부 간의 2016~2019년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기본약정	300,000,000	2015년 12월 14일	불요	2015년 12월 14일	고시 872
37	가나	대한민국 정부와 가나공화국 정부 간의 2014~2016년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기본약정	200,000,000	2015년 12월 10일	불요	2015년 12월 10일	고시 869

연번	채결대상 국가	국문	차관금액 (\$)	서명일/각서 교환일	국회 동의	발효일	조약 번호
38	방글라데시	대한민국 정부와 방글라데시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2015~2017년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기본약정	350,000,000	2015년 11월 19일	불요	2015년 11월 19일	고시 868
39	모잠비크	대한민국 정부와 모잠비크공화국 정부 간의 구급차 공급사업을 위한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5,000,000	2015년 11월 05일	불요	2015년 11월 05일	고시 866
40	모잠비크	대한민국 정부와 모잠비크공화국 정부 간의 소방설비 공급사업을 위한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5,000,000	2015년 11월 05일	불요	2015년 11월 05일	고시 867
41	요르단	대한민국 정부와 요르단왕국 정부 간의 요르단 연구용원자로 건설사업을 위한 대외경제협력기금 보충 차관에 관한 약정	12,804,000	2015년 10월 28일	불요	2015년 10월 28일	고시 864
42	파키스탄	대한민국 정부와 파키스탄이슬람공화국 정부 간의 2015년~2017년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기본약정	500,000,000	2015년 10월 02일	불요	2015년 10월 02일	고시 862
43	마다가스카르	대한민국 정부와 마다가스카르공화국 정부 간의 마다가스카르 국가재해관리센터 구축사업을 위한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30,000,000	2015년 07월 08일	불요	2015년 07월 08일	고시 865
44	니카라과	대한민국 정부와 니카라과공화국 정부 간의 니카라과 후이갈파 하수처리사업을 위한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66,349,000	2015년 03월 28일	불요	2015년 03월 28일	고시 856
45	탄자니아	대한민국 정부와 탄자니아합중국 정부 간의 2014년~2016년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기본약정	200,000,000	2015년 03월 25일	불요	2015년 03월 25일	고시 855
46	카메룬	대한민국 정부와 카메룬공화국 정부 간의 기루아 종합병원 건립사업을 위한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57,457,000	2014년 12월 23일	불요	2014년 12월 23일	고시 851

연번	채결대상 국가	국문	차관금액 (\$)	서명일/각서 교환일	구회 등의	발효일	조약 번호
47	모잠비크	대한민국 정부와 모잠비크공화국 정부 간의 켈리만 중앙병원 건립사업을 위한 대외경제협력기금 보충 차관에 관한 약정	25,000,000	2014년 12월 10일	불요	2014년 12월 10일	고시 848
48	르완다	대한민국 정부와 르완다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협정	없음	2014년 11월 14일	불요	2014년 11월 14일	조약 2212
49	르완다	대한민국 정부와 르완다공화국 정부 간의 르완다 국립대학교 기반시설 조성사업을 위한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51,248,000	2014년 11월 14일	불요	2014년 11월 14일	고시 846
50	미얀마	대한민국 정부와 미얀마연방공화국 정부 간의 2014-2017년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기본약정	500,000,000	2014년 07월 24일	불요	2014년 07월 24일	고시 839
51	우즈베키스탄	대한민국 정부와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 간의 2014-2017년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기본약정	250,000,000	2014년 06월 17일	불요	2014년 06월 17일	고시 834
52	모잠비크	대한민국 정부와 모잠비크공화국 정부 간의 남플라-나메틸 도로 건설사업을 위한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75,441,000	2014년 05월 23일	불요	2014년 05월 23일	고시 831
53	모잠비크	대한민국 정부와 모잠비크공화국 정부 간의 마푸토 및 마틀라 위생매립장 건설사업을 위한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48,621,000	2014년 05월 23일	불요	2014년 05월 23일	고시 832
54	에티오피아	대한민국 정부와 에티오피아연방민주공화국 정부 간의 모조-하와사 고속도로 건설사업을 위한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100,000,000	2014년 04월 29일	불요	2014년 04월 29일	고시 830
55	이제르바이잔	대한민국 정부와 이제르바이잔공화국 정부 간의 직업훈련센터 건립사업을 위한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22,000,000	2014년 04월 11일	불요	2014년 04월 11일	고시 828

연번	체결대상 국가	국문	차관금액 (\$)	서명일/각서 교환일	국회 동의	발효일	조약 번호
56	아제르바이잔	대한민국 정부와 아제르바이잔공화국 정부 간의 피르사기 하수처리장 건설사업을 위한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43,500,000	2014년 03월 11일	불요	2014년 03월 11일	고시 827
57	인도네시아	대한민국 정부와 인도네시아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2010~2013년)에 관한 기본약정의 연장을 위한 교환각서	600,000,000	2014년 01월 30일 / 2014년 02월 07일	불요	2014년 02월 07일	고시 825
58	라오스	대한민국 정부와 라오인민민주공화국 정부 간의 2014-2017년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200,000,000	2013년 11월 22일	불요	2013년 11월 22일	고시 815
59	니카라과	대한민국 정부와 니카라과공화국 정부 간의 재생에너지 송변전 사업 2단계를 위한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48,000,000	2013년 10월 29일	불요	2013년 10월 29일	고시 810
60	온두라스	대한민국 정부와 온두라스공화국 정부 간의 지속 가능한 농촌 개발을 위한 재생에너지 사업을 위한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44,746,000	2013년 10월 14일	불요	2013년 10월 14일	고시 809
61	시에라리온	대한민국 정부와 시에라리온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협정	없음	2013년 10월 08일	불요	2013년 10월 08일	조약 2161
62	시에라리온	대한민국 정부와 시에라리온공화국 정부 간의 프리타운시 복합행정센터 사업을 위한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54,986,000	2013년 10월 08일	불요	2013년 10월 08일	고시 808
63	아제르바이잔	대한민국 정부와 아제르바이잔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협정	없음	2013년 06월 18일	불요	2013년 09월 05일	조약 2157
64	스리랑카	2012년 12월 31일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스리랑카민주사회주의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2012년-2015년)에 관한 기본약정의 특권, 면제 및 혜택에 관한 보충의정서	없음	2013년 08월 26일	불요	2013년 08월 26일	고시 803

연번	채결대상 국가	국문	차관금액 (\$)	서명일/각서 교환일	구회 등의 불요	발효일	조약 번호
65	캄보디아	대한민국 정부와 캄보디아왕국 정부 간의 2013~2016년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기본약정	200,000,000	2013년 07월 10일	불요	2013년 07월 10일	고시 800
66	에콰도르	대한민국 정부와 에콰도르공화국 정부 간의 산토도밍고시 하수도 확장사업을 위한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공여에 관한 이행 약정	67,977,000	2013년 07월 03일	불요	2013년 07월 03일	고시 799
67	콩고민주 공화국	대한민국 정부와 콩고민주공화국 정부 간의 롬바임부 상수도 사업을 위한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67,914,000	2013년 06월 10일	불요	2013년 06월 10일	고시 797
68	방글라데시	대한민국 정부와 방글라데시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2012~2014년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기본약정	300,000,000	2013년 06월 06일	불요	2013년 06월 06일	고시 796
69	요르단	대한민국 정부와 요르단왕국 정부 간의 암만 남부 폐수처리시설 사업을 위한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보증약정	28,895,000	2013년 05월 14일	불요	2013년 05월 14일	고시 794
70	앙골라	대한민국 정부와 앙골라공화국 정부 간의 산업고등기술센터 사업을 위한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34,825,000	2013년 01월 15일	불요	2013년 01월 15일	고시 787
71	앙골라	대한민국 정부와 앙골라공화국 정부 간의 치안 쇄신 사업을 위한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44,038,000	2013년 01월 15일	불요	2013년 01월 15일	고시 788
72	스리랑카	대한민국 정부와 스리랑카민주사회주의 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2012-2015)에 관한 기본약정	290,000,000	2012년 12월 31일	불요	2012년 12월 31일	고시 786
73	베트남	대한민국 정부와 베트남사회주의 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2012-2015)에 관한 기본약정	1,200,000,000	2012년 12월 21일	불요	2012년 12월 21일	고시 783
74	도미니카 공화국	대한민국 정부와 도미니카공화국 정부 간의 산토도밍고시 지능형교통시스템 구축사업을 위한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36,062,000	2012년 07월 30일	불요	2012년 07월 30일	고시 776

연번	체결대상 국가	국문	차관금액 (\$)	서명일/각서 교환일	국회 동의	발효일	조약 번호
75	도미니카 공화국	대한민국 정부와 도미니카공화국 정부 간의 출입국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을 위한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25,000,000	2012년 07월 30일	불요	2012년 07월 30일	고시 777
76	모잠비크	대한민국 정부와 모잠비크공화국 정부 간의 기술/직업교육 강화 사업을 위한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18,100,000	2012년 07월 12일	불요	2012년 07월 12일	고시 775
77	라오스	대한민국 정부와 라오인민민주공화국 정부 간의 조세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을 위한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28,500,000	2012년 07월 04일	불요	2012년 07월 04일	고시 773
78	에티오피아	대한민국 정부와 에티오피아연방민주공화국 정부 간의 솔루타-게브레구라차 송전 사업을 위한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78,400,000	2012년 05월 25일	불요	2012년 05월 25일	고시 771
79	가나	대한민국 정부와 가나공화국 정부 간의 와 상수도 건설사업을 위한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55,500,000	2012년 04월 30일	불요	2012년 04월 30일	고시 768
80	가나	대한민국 정부와 가나공화국 정부 간의 프레스티아-쿠마시 전력강화 사업을 위한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67,234,000	2012년 04월 30일	불요	2012년 04월 30일	고시 769
81	우간다	대한민국 정부와 우간다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협정	없음	2012년 04월 13일	불요	2012년 04월 13일	조약 2164
82	우간다	대한민국 정부와 우간다공화국 정부 간의 교육 4차 사업을 위한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26,802,355	2012년 04월 13일	불요	2012년 04월 13일	고시 813
83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대한민국 정부와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각료이사회 간의 평원현대화사업(3차)을 위한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30,000,000	2012년 04월 10일	불요	2012년 04월 10일	고시 766

연번	채결대상 국가	국문	차관금액 (\$)	서명일/각서 교환일	구회 등의	발효일	조약 번호
84	온두라스	대한민국 정부와 온두라스공화국 정부 간의 출루테카 남부지역병원 건립을 위한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33,022,000	2012년 01월 25일	불요	2012년 01월 25일	고시 763
85	몽골	대한민국 정부와 몽골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2011~2015년)에 관한 기본약정	300,000,000	2011년 12월 02일	불요	2011년 12월 02일	고시 757
86	니카라과	대한민국 정부와 니카라과공화국 정부 간의 재생에너지 송변전 사업을 위한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27,227,000	2011년 11월 30일	불요	2011년 11월 30일	고시 756
87	필리핀	대한민국 정부와 필리핀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2011~2013년)에 관한 기본약정	500,000,000	2011년 11월 21일	불요	2011년 11월 21일	고시 755
88	세네갈	대한민국 정부와 세네갈공화국 정부 간의 해상인프라 구축사업을 위한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48,794,000	2011년 09월 29일	불요	2011년 09월 29일	고시 753
89	모잠비크	대한민국 정부와 모잠비크공화국 정부 간의 태양광 발전소 사업을 위한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35,000,000	2011년 09월 22일	불요	2011년 09월 22일	고시 752
90	모잠비크	대한민국 정부와 모잠비크공화국 정부 간의 재난관리정보화시스템 사업을 위한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25,000,000	2011년 09월 22일	불요	2011년 09월 22일	고시 751
91	필리핀	대한민국 정부와 필리핀공화국 정부 간의 라퀸단강 공항 항법지원설비 공급사업을 위한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13,293,000	2011년 09월 07일	불요	2011년 09월 07일	고시 754
92	탄자니아	대한민국 정부와 탄자니아합중국 정부 간의 무힘빌리 의과대학병원 의료기자재 공급 및 설치 사업을 위한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27,000,000	2011년 07월 30일	불요	2011년 07월 30일	고시 745

연번	체결대상 국가	국문	차관금액 (\$)	서명일/각서 교환일	국회 동의	발효일	조약 번호
93	탄자니아	대한민국 정부와 탄자니아합중국 정부 간의 이렇가-신양가 송전망 투자 사업을 위한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36,416,000	2011년 07월 30일	불요	2011년 07월 30일	고시 744
94	탄자니아	대한민국 정부와 탄자니아합중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2011~2013년)에 관한 기본약정	140,000,000	2011년 07월 30일	불요	2011년 07월 30일	고시 743
95	말리	대한민국 정부와 말리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정부행정망 개발사업)	39,645,000	2011년 07월 21일	불요	2011년 07월 21일	고시 742
96	말리	대한민국 정부와 말리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협정	없음	2011년 07월 21일	불요	2011년 07월 21일	조약 2053
97	말리	대한민국 정부와 말리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관개개발 프로그램 1단계 사업)	21,584,000	2011년 07월 21일	불요	2011년 07월 21일	고시 741
98	에티오피아	대한민국 정부와 에티오피아연방민주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협정	없음	2011년 07월 08일	불요	2011년 07월 08일	조약 2052
99	콩고민주 공화국	대한민국 정부와 콩고민주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협정	없음	2011년 07월 07일	불요	2011년 07월 07일	조약 2051
100	블리비아	대한민국 정부와 블리비아다민족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2010년~2014년)에 관한 기본약정	250,000,000	2010년 08월 26일	불요	2011년 06월 01일	고시 739
101	인도네시아	대한민국 정부와 인도네시아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2010년~2013년)에 관한 기본약정	600,000,000	2010년 12월 27일	불요	2010년 12월 27일	고시 736
102	파키스탄	대한민국 정부와 파키스탄회교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2010~2012년)에 관한 기본약정	180,000,000	2010년 12월 09일	불요	2010년 12월 09일	고시 735

연번	채결대상 국가	국문	차관금액 (\$)	서명일/각서 교환일	구회 등의	발효일	조약 번호
103	앙골라	대한민국 정부와 앙골라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농업현대화사업)	18,500,000	2010년 12월 02일	불요	2010년 12월 02일	고시 734
104	모잠비크	대한민국 정부와 모잠비크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기자수 송배전망 확충사업)	49,082,000	2010년 09월 14일	불요	2010년 09월 14일	고시 727
105	모잠비크	대한민국 정부와 모잠비크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켈리만 중앙병원 건설사업)	45,000,000	2010년 09월 14일	불요	2010년 09월 14일	고시 726
106	모잠비크	대한민국 정부와 모잠비크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나칼리연결도로개보수사업)	20,000,000	2010년 09월 14일	불요	2010년 09월 14일	고시 728
107	모잠비크	대한민국 정부와 모잠비크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협정	없음	2010년 09월 14일	불요	2010년 09월 14일	조약 2023
108	콜롬비아	대한민국 정부와 콜롬비아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정보통신기술 교육역량강화사업)	30,000,000	2010년 07월 27일	불요	2010년 08월 23일	고시 723
109	콜롬비아	대한민국 정부와 콜롬비아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정보통신기술연구개발센터건설사업)	10,000,000	2010년 07월 27일	불요	2010년 08월 23일	고시 724
110	탄자니아	대한민국 정부와 탄자니아합중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도도마시상수도확충사업)	49,623,000	2010년 08월 06일	불요	2010년 08월 06일	고시 719
111	탄자니아	대한민국 정부와 탄자니아합중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무힘빌리의대병원건설사업)	49,500,000	2010년 08월 06일	불요	2010년 08월 06일	고시 720

연번	채결대상 국가	국문	차관금액 (\$)	서명일/각서 교환일	국회 동의	발효일	조약 번호
112	탄자니아	대한민국 정부와 탄자니아합중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송전망확충사업)	25,000,000	2010년 08월 06일	불요	2010년 08월 06일	고시 721
113	콜롬비아	대한민국 정부와 콜롬비아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협정	없음	2010년 07월 27일	불요	2010년 07월 27일	조약 2017
114	요르단	대한민국 정부와 요르단왕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70,000,000	2010년 07월 26일	불요	2010년 07월 26일	고시 718
115	스리랑카	대한민국 정부와 스리랑카민주사회주의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2009년-2012년)에 관한 기본약정	200,000,000	2010년 07월 13일	불요	2010년 07월 13일	고시 717
116	니카라과	대한민국 정부와 니카라과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직업훈련소 2단계사업)	23,020,000	2010년 06월 25일	불요	2010년 06월 25일	고시 716
117	방글라데시	대한민국 정부와 방글라데시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2010년-2012년)에 관한 기본약정	200,000,000	2010년 05월 18일	불요	2010년 05월 18일	고시 715
118	라오스	대한민국 정부와 라오인민민주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비엔티엔 소방설비 공급사업)	2,994,000	2010년 04월 02일	불요	2010년 04월 02일	고시 711
119	라오스	대한민국 정부와 라오인민민주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109병원 의료기자재 공급사업)	2,994,000	2010년 04월 02일	불요	2010년 04월 02일	고시 712
120	라오스	대한민국 정부와 라오인민민주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5개공항 소방설비 공급사업)	2,994,000	2010년 04월 02일	불요	2010년 04월 02일	고시 710

연번	채결대상 국가	국문	차관금액 (\$)	서명일/각서 교환일	구회 등의	발효일	조약 번호
121	우즈베키스탄	대한민국 정부와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2008~2011년)에 관한 기본약정에 대한 보충약정	200,000,000	2010년 02월 11일	불요	2010년 02월 11일	고시 708
122	카메룬	대한민국 정부와 카메룬공화국정부간 대외경제협력기금차관에 관한 약정	35,000,000	2009년 12월 17일	불요	2009년 12월 17일	고시 701
123	카메룬	대한민국 정부와 카메룬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협정	없음	2009년 11월 25일	불요	2009년 11월 25일	조약 1977
124	라오스	대한민국 정부와 라오인민민주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북부송전사업)	37,884,000	2009년 10월 30일	불요	2009년 10월 30일	고시 696
125	캄보디아	대한민국 정부와 캄보디아왕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2009년~2012년)에 관한 기본약정	200,000,000	2009년 10월 22일	불요	2009년 10월 22일	고시 694
126	에멘	대한민국 정부와 에멘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2009~2012년)에 관한 기본약정	100,000,000	2009년 06월 15일	불요	2009년 06월 15일	고시 688
127	케냐	대한민국 정부와 케냐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10,742,000	2009년 03월 31일	불요	2009년 03월 31일	고시 682
128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대한민국 정부와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각료회의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50,000,000	2009년 01월 29일	불요	2009년 01월 29일	고시 681
129	에멘	대한민국 정부와 에멘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고등기술훈련소사업)	15,380.29	2009년 01월 12일	불요	2009년 01월 12일	고시 680
130	캄보디아	대한민국 정부와 캄보디아왕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2008년~2011년)에 관한 기본약정	120,000,000	2008년 12월 30일	불요	2008년 12월 30일	고시 679

연번	채결대상 국가	국문	차관금액 (\$)	서명일/각서 교환일	국회 동의	발효일	조약 번호
131	방글라데시	대한민국 정부와 방글라데시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2008년~2009년)에 관한 기본약정	200,000,000	2008년 12월 18일	불요	2008년 12월 18일	고시 677
132	요르단	대한민국 정부와 요르단왕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74,585,000	2008년 12월 02일	불요	2008년 12월 02일	고시 675
133	앙골라	대한민국 정부와 앙골라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2008-2009년)에 관한 기본약정	130,000,000	2008년 11월 24일	불요	2008년 11월 24일	고시 674
134	앙골라	대한민국 정부와 앙골라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49,000,000	2008년 11월 24일	불요	2008년 11월 24일	고시 673
135	파키스탄	대한민국 정부와 파키스탄회교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2008-2011년)에 관한 기본약정	160,000,000	2008년 11월 20일	불요	2008년 11월 20일	고시 672
136	파키스탄	대한민국 정부와 파키스탄회교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45,000,000	2008년 11월 20일	불요	2008년 11월 20일	고시 678
137	네팔	대한민국 정부와 네팔연방민주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45,000,000	2008년 10월 23일	불요	2008년 10월 23일	고시 671
138	마다가스카르	대한민국 정부와 마다가스카르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협정	없음	2008년 10월 18일	불요	2008년 10월 18일	조약 1914
139	마다가스카르	대한민국 정부와 마다가스카르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14,120,000	2008년 10월 18일	불요	2008년 10월 18일	고시 670
140	니카라과	대한민국 정부와 니카라과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후이갈파상수도망확장사업 2단계)	15,943,000	2008년 09월 19일	불요	2008년 09월 19일	고시 667
141	스리랑카	대한민국 정부와 스리랑카민주사회주의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2008년)에 관한 기본약정	140,000,000	2008년 08월 19일	불요	2008년 08월 19일	고시 664

연번	채결대상 국가	국문	차관금액 (\$)	서명일/각서 교환일	구회 등의	발효일	조약 번호
142	베트남	대한민국 정부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2008-2011년)에 관한 기본약정	1,000,000,000	2008년 08월 14일	불요	2008년 08월 14일	고시 663
143	세네갈	대한민국 정부와 세네갈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전자정부사업)	25,000,000	2008년 06월 23일	불요	2008년 06월 23일	고시 659
144	방글라데시	대한민국 정부와 방글라데시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철도기관차 3차 구매사업)	28,000,000	2008년 06월 16일	불요	2008년 06월 16일	고시 658
145	과테말라	대한민국 정부와 과테말라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교육정보화사업)	23,600,000	2007년 07월 02일	불요	2008년 06월 03일	고시 657
146	세네갈	대한민국 정부와 세네갈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협정	없음	2008년 05월 16일	불요	2008년 05월 16일	조약 1898
147	우즈베키스탄	대한민국 정부와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2008-2011년)에 관한 기본약정	120,000,000	2008년 05월 12일	불요	2008년 05월 12일	고시 655
148	라오스	대한민국 정부와 라오인민민주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메콩강변 중합관리사업)	37,213,000	2008년 03월 27일	불요	2008년 03월 27일	고시 651
149	라오스	대한민국 정부와 라오인민민주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주정기장연결도로사업)	3,000,000	2008년 03월 27일	불요	2008년 03월 27일	고시 652
150	인도네시아	대한민국 정부와 인도네시아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마나도 우회도로사업 2차)	160,000,000	2008년 03월 18일	불요	2008년 03월 18일	고시 649
151	라오스	대한민국 정부와 라오인민민주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북부도로 개신사업)	22,439,000	2008년 03월 14일	불요	2008년 03월 14일	고시 648

연번	체결대상 국가	국문	차관금액 (\$)	서명일/각서 교환일	국회 동의	발효일	조약 번호
152	니카라과	대한민국 정부와 니카라과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직업훈련원 확충사업)	12,600,000	2008년 03월 13일	불요	2008년 03월 13일	고시 647
153	탄자니아	대한민국 정부와 탄자니아합중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25,000,000	2008년 02월 26일	불요	2008년 02월 26일	고시 645
154	필리핀	대한민국 정부와 필리핀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2007-2009년)에 관한 기본약정	300,000,000	2007년 12월 21일	불요	2007년 12월 21일	고시 638
155	필리핀	대한민국 정부와 필리핀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보충용차관 공여에 관한 약정	8,200,000	2007년 12월 13일	불요	2007년 12월 13일	고시 637
156	인도네시아	대한민국 정부와 인도네시아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2007-2009년)에 관한 기본약정	370,000,000	2007년 11월 19일	불요	2007년 11월 19일	고시 629
157	앙골라	대한민국 정부와 앙골라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국가전산망구축)	35,000,000	2007년 10월 12일	불요	2007년 10월 12일	고시 626
158	파키스탄	대한민국 정부와 파키스탄회교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20,000,000	2007년 09월 27일	불요	2007년 09월 27일	고시 625
159	에콰도르	대한민국 정부와 에콰도르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차관에 관한 약정 (산토도밍고상수도사업)	43,630,000	2007년 09월 18일	불요	2007년 09월 18일	고시 624
160	베트남	대한민국 정부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2007-2009)에 관한 기본 약정	440,000,000	2007년 07월 24일	불요	2007년 07월 24일	고시 618
161	몽골	대한민국 정부와 몽골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지능형교통신사업)	12,800,000	2007년 05월 28일	불요	2007년 05월 28일	고시 613

연번	채결대상 국가	국문	차관금액 (\$)	서명일/각서 교환일	구회 등의	발효일	조약 번호
162	몽골	대한민국 정부와 몽골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긴급구난정보방송사업)	13,500,000	2007년 05월 28일	불요	2007년 05월 28일	고시 612
163	인도네시아	대한민국 정부와 인도네시아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정보통신교육원)	21,000,000	2007년 05월 15일	불요	2007년 05월 15일	고시 610
164	인도네시아	대한민국 정부와 인도네시아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바탐전자정부)	16,000,000	2007년 05월 15일	불요	2007년 05월 15일	고시 611
165	캄보디아	대한민국 정부와 캄보디아왕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3반국도개보수 2차)	39,600,000	2007년 05월 08일	불요	2007년 05월 08일	고시 609
166	방글라데시	대한민국 정부와 방글라데시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재난구조선 구매사업)	26,000,000	2007년 04월 30일	불요	2007년 04월 30일	고시 607
167	방글라데시	대한민국 정부와 방글라데시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인터넷 정보망 확충사업)	25,000,000	2007년 04월 30일	불요	2007년 04월 30일	고시 606
168	스리랑카	대한민국 정부와 스리랑카민주사회주의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골 상수도 2차사업)	6,440,000	2007년 04월 26일	불요	2007년 04월 26일	고시 604
169	스리랑카	대한민국 정부와 스리랑카민주사회주의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직업훈련원 개선사업)	8,780,000	2007년 04월 26일	불요	2007년 04월 26일	고시 605
170	인도네시아	대한민국 정부와 인도네시아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교육병원강화사업)	24,000,000	2007년 04월 09일	불요	2007년 04월 09일	고시 600
171	중국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제7차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개정을 위한 교환각서	2,700,000	2007년 02월 01일 / 2007년 02월 01일	불요	2007년 02월 01일	고시 598

연번	체결대상 국가	국문	차관금액 (\$)	서명일/각서 교환일	국회 동의	발효일	조약 번호
172	캄보디아	대한민국 정부와 캄보디아왕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지방행정정보망확충사업)	30,973,000	2006년 11월 20일	불요	2006년 11월 20일	고시 592
173	요르단	대한민국 정부와 요르단왕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20,800,000	2006년 09월 06일	불요	2006년 09월 06일	고시 584
174	온두라스	대한민국 정부와 온두라스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이틀란피다 병원건설사업)	24,200,000	2006년 08월 16일	불요	2006년 08월 16일	고시 583
175	도미니카 공화국	대한민국 정부와 도미니카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23,000,000	2006년 08월 14일	불요	2006년 08월 14일	고시 582
176	적도기니	대한민국 정부와 적도기니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협정	없음	2006년 07월 16일	불요	2006년 07월 16일	조약 1797
177	적도기니	대한민국 정부와 적도기니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20,000,000	2006년 07월 16일	불요	2006년 07월 16일	고시 577
178	도미니카 공화국	대한민국 정부와 도미니카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협정	없음	2006년 06월 30일	불요	2006년 06월 30일	조약 1792
179	스리랑카	대한민국 정부와 스리랑카민주사회주의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함판토타행정단지사업)	20,000,000	2006년 05월 29일	불요	2006년 05월 29일	고시 574
180	베트남	대한민국 정부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19,504,000	2006년 04월 11일	불요	2006년 04월 11일	고시 570
181	우즈베키스탄	대한민국 정부와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30,000,000	2006년 03월 29일	불요	2006년 03월 29일	고시 569

연번	채결대상 국가	국문	차관금액 (\$)	서명일/각서 교환일	구회 등의	발효일	조약 번호
182	캄보디아	대한민국 정부와 캄보디아왕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수자원개발사업)	26,700,000	2006년 03월 21일	불요	2006년 03월 21일	고시 565
183	중국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제6차 제1기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개정을 위한 교황각서	4,950,000	2006년 01월 05일 / 2006년 01월 10일	불요	2006년 01월 10일	고시 560
184	중국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제7차)	4,900,000	2005년 12월 30일	불요	2005년 12월 30일	고시 559
185	필리핀	대한민국 정부와 필리핀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GSO도로화장 및 준설사업)	22,300,000	2005년 12월 15일	불요	2005년 12월 15일	고시 555
186	앙골라	대한민국 정부와 앙골라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31,440,000	2005년 12월 09일	불요	2005년 12월 09일	고시 554
187	탄자니아	대한민국 정부와 탄자니아합중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18,000,000	2005년 10월 12일	불요	2005년 10월 12일	고시 547
188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대한민국 정부와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협정	없음	2005년 10월 05일	불요	2005년 10월 05일	조약 1746
189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대한민국 정부와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20,000,000	2005년 10월 05일	불요	2005년 10월 05일	고시 545
190	니카라과	대한민국 정부와 니카라과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후이갈파 상수도망 확장사업)	17,200,000	2005년 09월 11일	불요	2005년 09월 11일	고시 538
191	온두라스	대한민국 정부와 온두라스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치안강화사업)	2,477,000	2005년 08월 25일	불요	2005년 08월 25일	고시 536

연번	체결대상 국가	국문	차관금액 (\$)	서명일/각서 교환일	국회 동의	발효일	조약 번호
192	스리랑카	대한민국 정부와 스리랑카민주사회주의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전자정부구축사업)	15,000,000	2005년 08월 22일	불요	2005년 08월 22일	고시 535
193	에멘	대한민국 정부와 에멘공화국 정부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전기통신망확장사업)	30,000,000	2005년 08월 03일	불요	2005년 08월 03일	고시 542
194	탄자니아	대한민국 정부와 탄자니아합중국 정부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협정	없음	2005년 08월 01일	불요	2005년 08월 01일	조약 1742
195	인도네시아	대한민국 정부와 인도네시아공화국 정부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20,200,000	2005년 07월 11일	불요	2005년 07월 11일	고시 530
196	스리랑카	대한민국 정부와 스리랑카민주사회주의공화국 정부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물광역시 상수도사업(2단계))	14,800,000	2005년 05월 11일	불요	2005년 05월 11일	고시 528
197	에멘	대한민국 정부와 에멘공화국 정부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협정	없음	2003년 10월 07일	불요	2005년 05월 11일	조약 1734
198	케냐	대한민국 정부와 케냐공화국 정부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25,000,000	2005년 05월 10일	불요	2005년 05월 10일	고시 526
199	케냐	대한민국 정부와 케냐 정부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협정	없음	2005년 04월 15일	불요	2005년 04월 15일	조약 1727
200	라오스	대한민국 정부와 라오인민민주공화국 정부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22,700,000	2005년 04월 07일	불요	2005년 04월 07일	고시 524
201	몽골	대한민국 정부와 몽골 정부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23,900,000	2005년 03월 28일	불요	2005년 03월 28일	고시 523
202	파푸아 뉴기니	대한민국 정부와 파푸아뉴기니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6,325,000	2005년 01월 25일	불요	2005년 01월 25일	고시 514

연번	채결대상 국가	국문	차관금액 (\$)	서명일/각서 교환일	구회 등의	발효일	조약 번호
203	미얀마	대한민국 정부와 미얀마연방 정부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12,501,000	2004년 12월 31일	불요	2004년 12월 31일	고시 513
204	파푸아 뉴기니	대한민국 정부와 파푸아뉴기니 정부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협정	없음	2004년 12월 09일	불요	2004년 12월 09일	조약 1699
205	베트남	대한민국 정부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20,970,000	2004년 10월 10일	불요	2004년 10월 10일	고시 509
206	알제리	대한민국 정부와 알제리민주인민공화국 정부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공여에 관한 협정	없음	2003년 12월 09일	불요	2004년 09월 13일	조약 1685
207	알바니아	대한민국 정부와 알바니아공화국 정부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25,000,000	2004년 05월 26일	불요	2004년 09월 03일	고시 507
208	알바니아	대한민국 정부와 알바니아공화국 정부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협정	없음	2004년 05월 26일	불요	2004년 09월 03일	조약 1684
209	요르단	대한민국 정부와 요르단왕국 정부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24,000,000	2004년 07월 24일	불요	2004년 07월 24일	고시 502
210	우즈베키스탄	대한민국 정부와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27,000,000	2004년 07월 02일	불요	2004년 07월 02일	고시 501
211	중국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간의 제6차 제3기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10,000,000	2004년 04월 08일	불요	2004년 04월 08일	고시 489
212	방글라데시	대한민국 정부와 방글라데시인민공화국 정부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20,000,000	2004년 02월 05일	불요	2004년 02월 05일	고시 484
213	필리핀	대한민국 정부와 필리핀공화국 정부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35,000,000	2004년 01월 29일	불요	2004년 01월 29일	고시 482

연번	체결대상 국가	국문	차관금액 (\$)	서명일/각서 교환일	국회 동의	발효일	조약 번호
214	중국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간의 제6차 제2기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25,000,000	2003년 12월 26일	불요	2003년 12월 26일	고시 480
215	스리랑카	대한민국 정부와 스리랑카민주사회주의공화국 정부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17,635,000	2003년 08월 01일	불요	2003년 08월 01일	고시 471
216	필리핀	대한민국 정부와 필리핀공화국 정부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협정	없음	2003년 06월 03일	불요	2003년 06월 03일	조약 1638
217	가나	대한민국 정부와 가나공화국 정부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협정	없음	2003년 05월 29일	불요	2003년 05월 29일	조약 1639
218	가나	대한민국 정부와 가나공화국 정부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38,200,000	2003년 05월 29일	불요	2003년 05월 29일	고시 470
219	에콰도르	대한민국 정부와 에콰도르공화국 정부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38,200,000	2003년 04월 28일	불요	2003년 04월 28일	고시 463
220	에콰도르	대한민국 정부와 에콰도르공화국 정부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협정	없음	2003년 04월 28일	불요	2003년 04월 28일	조약 1630
221	중국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간의 제6차 제1기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4,950,000	2003년 01월 28일	불요	2003년 01월 28일	고시 462
222	인도네시아	대한민국 정부와 인도네시아공화국 정부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공여에 관한 약정 종료에 관한 교환각서	없음	2003년 01월 02일 / 2003년 01월 02일	불요	2003년 01월 02일	고시 460
223	방글라데시	대한민국 정부와 방글라데시인민공화국 정부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철도기관차구매사업)	28,000,000	2002년 11월 09일	불요	2002년 11월 09일	고시 455

연번	채결대상 국가	국문	차관금액 (\$)	서명일/각서 교환일	구회 등의	발효일	조약 번호
224	방글라데시	대한민국 정부와 방글라데시인민공화국 정부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디지털전환기초시설사업)	30,000,000	2002년 11월 09일	불요	2002년 11월 09일	고시 454
225	과테말라	대한민국 정부와 과테말라공화국 정부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농촌개발사업)	25,000,000	2002년 03월 19일	불요	2002년 11월 07일	고시 456
226	캄보디아	대한민국 정부와 캄보디아왕국 정부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17,050,000	2002년 11월 06일	불요	2002년 11월 06일	고시 453
227	엘살바도르	대한민국 정부와 엘살바도르공화국 정부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아포파병원 기차제 및 건설사업)	25,600,000	2002년 09월 23일	불요	2002년 09월 23일	고시 450
228	엘살바도르	대한민국 정부와 엘살바도르공화국 정부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호세인토니오살다나병원 의료기차제 구매사업)	1,900,000	2002년 09월 23일	불요	2002년 09월 23일	고시 451
229	과테말라	대한민국 정부와 과테말라공화국 정부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협정	없음	2002년 03월 19일	불요	2002년 08월 09일	조약 1605
230	엘살바도르	대한민국 정부와 엘살바도르공화국 정부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협정	없음	2001년 11월 30일	불요	2002년 06월 20일	조약 1600
231	캄보디아	대한민국 정부와 캄보디아왕국 정부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27,665,000	2002년 06월 05일	불요	2002년 06월 05일	고시 443
232	캄보디아	대한민국 정부와 캄보디아왕국 정부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20,000,000	2001년 11월 08일	불요	2001년 11월 08일	고시 427
233	인도네시아	대한민국 정부와 인도네시아공화국 정부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공여에 관한 1991년 교환각서 및 2000년 교환각서의 개정을 위한 교환각서	없음	2001년 10월 08일 / 2001년 10월 08일	불요	2001년 10월 08일	고시 430

연번	체결대상 국가	국문	차관금액 (\$)	서명일/각서 교환일	국회 동의	발효일	조약 번호
234	인도네시아	대한민국 정부와 인도네시아공화국 정부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공여에 관한 1988년 교환각서 및 2000년 교환각서의 개정을 위한 교환각서	없음	2001년 10월 08일 / 2001년 10월 08일	불요	2001년 10월 08일	고시 429
235	중국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간의 제5차 제2기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24,500,000	2001년 09월 03일	불요	2001년 09월 03일	고시 424
236	베트남	대한민국 정부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 제공에 관한 약정	19,616,000	2001년 08월 23일	불요	2001년 08월 23일	고시 422
237	스리랑카	대한민국 정부와 스리랑카민주사회주의공화국 정부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2,600,000	2001년 07월 04일	불요	2001년 07월 04일	고시 419
238	중국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간의 제5차 제1기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41,930,000	2001년 06월 15일	불요	2001년 06월 15일	고시 417
239	온두라스	대한민국 정부와 온두라스공화국 정부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시행약정	6,000,000	2000년 07월 25일	불요	2001년 05월 02일	고시 416
240	캄보디아	대한민국 정부와 캄보디아왕국 정부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협정	없음	2001년 04월 10일	불요	2001년 04월 10일	조약 1557
241	블리비아	대한민국 정부와 블리비아공화국 정부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협정	없음	2001년 03월 15일	불요	2001년 03월 15일	조약 1555
242	블리비아	대한민국 정부와 블리비아공화국 정부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23,000,000	2001년 03월 15일	불요	2001년 03월 15일	고시 414
243	스리랑카	대한민국 정부와 스리랑카민주사회주의공화국 정부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공여에 관한 약정	26,667,000	2001년 02월 20일	불요	2001년 02월 20일	고시 413
244	크로아티아	대한민국 정부와 크로아티아공화국 정부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협정	없음	2001년 01월 16일	불요	2001년 01월 16일	조약 1548

연번	채결대상 국가	국문	차관금액 (\$)	서명일/각서 교환일	구회 등의	발효일	조약 번호
245	크로아티아	대한민국 정부와 크로아티아공화국 정부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시행약정	34,540,000	2001년 01월 16일	불요	2001년 01월 16일	고시 410
246	루마니아	대한민국 정부와 루마니아 정부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13,000,000	2000년 10월 11일	불요	2001년 01월 04일	고시 435
247	베트남	대한민국 정부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보충차관에 관한 약정	8,009,000,000 원	2000년 12월 07일	불요	2000년 12월 07일	고시 405
248	요르단	대한민국 정부와 요르단왕국 정부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공여에 관한 협정	없음	2000년 11월 12일	불요	2000년 11월 12일	조약 1537
249	요르단	대한민국 정부와 요르단왕국 정부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공여에 관한 약정	7,622,000,000 원	2000년 11월 12일	불요	2000년 11월 12일	고시 403
250	미얀마	대한민국 정부와 미얀마연방 정부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12,600,000	2000년 10월 31일	불요	2000년 10월 31일	고시 402
251	인도네시아	대한민국 정부와 인도네시아공화국 정부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30,000,000	2000년 10월 05일	불요	2000년 10월 05일	고시 400
252	베트남	대한민국 정부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28,460,000	2000년 09월 29일	불요	2000년 09월 29일	고시 399
253	온두라스	대한민국 정부와 온두라스공화국 정부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협정	없음	2000년 07월 25일	불요	2000년 07월 25일	조약 1530
254	파나마	대한민국 정부와 파나마공화국 정부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협정	없음	2000년 07월 24일	불요	2000년 07월 24일	조약 1531
255	파나마	대한민국 정부와 파나마공화국 정부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20,000,000	2000년 07월 24일	불요	2000년 07월 24일	고시 395

연번	체결대상 국가	국문	차관금액 (\$)	서명일/각서 교환일	국회 동의	발효일	조약 번호
256	베트남	대한민국 정부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보충차관의 공여를 위한 약정	41,516,000,000 KRW	2000년 06월 29일	불요	2000년 06월 29일	고시 390
257	몽골	대한민국 정부와 몽골 정부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보충차관 공여에 관한 약정	865,000	2000년 06월 29일	불요	2000년 06월 29일	고시 391
258	몽골	대한민국 정부와 몽골 정부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정부통신망 개선사업)	5,300,000	2000년 06월 14일	불요	2000년 06월 14일	고시 389
259	몽골	대한민국 정부와 몽골 정부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지방통신망 현대화사업)	14,300,000	2000년 06월 14일	불요	2000년 06월 14일	고시 388
260	중국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간의 제3차 제1기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공여에 관한 약정 개정을 위한 교환각서	23,707,000,000 KRW	2000년 05월 17일 / 2000년 05월 17일	불요	2000년 05월 17일	고시 384
261	중국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간의 제3차 제2기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공여에 관한 약정 개정을 위한 교환각서	22,399,000,000 KRW	2000년 05월 17일 / 2000년 05월 17일	불요	2000년 05월 17일	고시 385
262	중국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공여에 관한 교환각서 개정을 위한 교환각서	33,841,000,000 KRW	2000년 05월 17일 / 2000년 05월 17일	불요	2000년 05월 17일	고시 383
263	니카라과	대한민국 정부와 니카라과공화국 정부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5,700,000	2000년 05월 15일	불요	2000년 05월 15일	고시 382
264	니카라과	대한민국 정부와 니카라과공화국 정부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협정	없음	2000년 05월 15일	불요	2000년 05월 15일	조약 1524
265	파키스탄	대한민국 정부와 파키스탄 회교공화국 정부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17,903,000,000 KRW	2000년 05월 11일	불요	2000년 05월 11일	고시 386

연번	채결대상 국가	국문	차관금액 (\$)	서명일/각서 교환일	구회 등의	발효일	조약 번호
266	인도네시아	대한민국 정부와 인도네시아공화국 정부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공여에 관한 1991년 교환각서 개정을 위한 교환각서	없음	2000년 04월 24일 / 2000년 04월 24일	불요	2000년 04월 24일	고시 380
267	인도네시아	대한민국 정부와 인도네시아공화국 정부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공여에 관한 1988년 교환각서 개정을 위한 교환각서	없음	2000년 04월 24일 / 2000년 04월 24일	불요	2000년 04월 24일	고시 379
268	우즈베키스탄	대한민국 정부와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35,000,000	2000년 03월 01일	불요	2000년 03월 01일	고시 375
269	파키스탄	대한민국 정부와 파키스탄회교공화국 정부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공여에 관한 협정	없음	2000년 02월 29일	불요	2000년 02월 29일	조약 1513
270	중국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15,000,000	1999년 12월 27일	불요	2000년 02월 28일	고시 377
271	앙골라	대한민국 정부와 앙골라공화국 정부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9,500,000	2000년 02월 14일	불요	2000년 02월 14일	고시 374
272	앙골라	대한민국 정부와 앙골라공화국 정부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협정	없음	2000년 02월 14일	불요	2000년 02월 14일	조약 1511
273	인도네시아	대한민국 정부와 인도네시아공화국 정부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40,000,000	2000년 02월 10일	불요	2000년 02월 10일	고시 373
274	카자흐스탄	대한민국 정부와 카자흐스탄공화국 정부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협정	없음	1999년 08월 24일	불요	1999년 12월 29일	조약 1503
275	카자흐스탄	대한민국 정부와 카자흐스탄공화국 정부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16,269,000,000 KRW	1999년 08월 24일	불요	1999년 12월 29일	고시 372

연번	체결대상 국가	국문	차관금액 (\$)	서명일/각서 교환일	국회 동의	발효일	조약 번호
276	우즈베키스탄	대한민국 정부와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12,486,000,000 KRW	1999년 07월 08일	불요	1999년 07월 08일	고시 363
277	우즈베키스탄	대한민국 정부와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협정	없음	1999년 07월 08일	불요	1999년 07월 08일	조약 1489
278	코트디부아르	대한민국 정부와 코트디부아르공화국 정부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공여에 관한 협정	없음	1999년 01월 29일	불요	1999년 01월 29일	조약 1479
279	키르기즈	대한민국 정부와 키르기즈공화국 정부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 공여에 관한 협정	없음	1998년 12월 09일	불요	1998년 12월 09일	조약 1471
280	키르기즈	대한민국 정부와 키르기즈공화국 정부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시행약정	16,114,000,000 KRW	1998년 12월 09일	불요	1998년 12월 09일	고시 357
281	루마니아	대한민국 정부와 루마니아 정부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24,882,000,000 KRW	1998년 02월 11일	불요	1998년 02월 11일	고시 335
282	인도네시아	대한민국 정부와 인도네시아공화국 정부간의 칼리만탄 지방병원 개선사업을 위한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공여에 관한 약정	27,534,000,000 KRW	1998년 01월 08일	불요	1998년 01월 08일	고시 332
283	베트남	대한민국 정부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공여에 관한 약정 (바리아 북함화발전소 설비 구매사업)	41,516,000,000 KRW	1997년 12월 16일	불요	1997년 12월 16일	고시 330
284	중국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간의 제3차 제2기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공여에 관한 약정	48,418,000,000 KRW	1997년 11월 21일	불요	1997년 11월 21일	고시 327
285	루마니아	대한민국 정부와 루마니아공화국 정부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공여에 관한 협정	없음	1997년 11월 20일	불요	1997년 11월 20일	조약 1434

연번	채결대상 국가	국문	차관금액 (\$)	서명일/각서 교환일	구회 등의	발효일	조약 번호
286	인도네시아	대한민국 정부와 인도네시아공화국 정부간의 마나도 우회도로 건설사업을 위한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공여에 관한 약정	15,442,000,000 KRW	1997년 11월 17일	불요	1997년 11월 17일	고시 329
287	인도네시아	대한민국 정부와 인도네시아공화국 정부간의 이살-2 수력발전소 건설사업을 위한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공여에 관한 약정	2,703,000,000	1997년 11월 17일	불요	1997년 11월 17일	고시 328
288	인도네시아	대한민국 정부와 인도네시아공화국 정부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공여에 관한 약정	없음	1997년 11월 17일	불요	1997년 11월 17일	조약 1439
289	미얀마	대한민국 정부와 미얀마연방 정부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공여에 관한 약정	16,588,000,000 KRW	1997년 10월 31일	불요	1997년 10월 31일	고시 325
290	투니지	대한민국 정부와 투니지공화국 정부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공여에 관한 약정	26,854,000,000 KRW	1997년 10월 25일	불요	1997년 10월 25일	고시 324
291	투니지	대한민국 정부와 투니지공화국 정부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공여에 관한 약정	없음	1997년 10월 25일	불요	1997년 10월 25일	조약 1432
292	미얀마	대한민국 정부와 미얀마연방 정부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공여에 관한 약정	없음	1997년 10월 24일	불요	1997년 10월 24일	조약 1430
293	필리핀	대한민국 정부와 필리핀공화국 정부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 공여에 관한 교환각서	25,000,000	1997년 10월 24일	불요	1997년 10월 24일	조약 1431
294	라오스	대한민국 정부와 라오스인민민주공화국 정부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공여협정	없음	1997년 10월 08일	불요	1997년 10월 08일	조약 1426
295	네팔	대한민국 정부와 네팔왕국 정부간의 모디콜라 수력발전소 건설사업을 위한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공여에 관한 약정	12,441,000,000 KRW	1997년 09월 16일	불요	1997년 09월 16일	고시 323

연번	채결대상 국가	국문	차관금액 (\$)	서명일/각서 교환일	국회 동의	발효일	조약 번호
296	네팔	대한민국 정부와 네팔 왕국 정부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공여 협정	없음	1997년 09월 16일	불요	1997년 09월 16일	조약 1425
297	방글라데시	대한민국 정부와 방글라데시인민공화국 정부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공여에 관한 약정	27,294,000,000 KRW	1997년 06월 02일	불요	1997년 06월 02일	고시 313
298	방글라데시	대한민국 정부와 방글라데시인민공화국 정부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공여에 관한 협정	없음	1997년 06월 02일	불요	1997년 06월 02일	조약 1407
299	중국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간의 제3차 제1기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공여에 관한 협정	48,261,000,000 KRW	1997년 05월 30일	불요	1997년 05월 30일	고시 314
300	미얀마	대한민국 정부와 미얀마연방 정부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공여에 관한 교환각서	없음	1997년 05월 06일 / 1997년 05월 06일	불요	1997년 05월 06일	조약 1402
301	몽골	대한민국 정부와 몽골 정부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공여에 관한 약정	6,290,000,000 KRW	1997년 03월 18일	불요	1997년 03월 18일	고시 302
302	몽골	대한민국 정부와 몽골 정부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공여에 관한 협정	없음	1996년 12월 06일	불요	1996년 12월 06일	조약 1359
303	스리랑카	대한민국 정부와 스리랑카민주사회주의공화국 정부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공여에 관한 약정	40,854,000,000 KRW	1996년 08월 12일	불요	1996년 08월 12일	고시 288
304	파라과이	대한민국 정부와 파라과이공화국 정부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공여에 관한 협정	없음	1996년 07월 09일	불요	1996년 07월 09일	조약 1343
305	에콰도르	대한민국 정부와 에콰도르공화국 정부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공여에 관한 교환각서	11,467,000,000 KRW	1996년 05월 22일	불요	1996년 05월 22일	조약 1338
306	스리랑카	대한민국 정부와 스리랑카민주사회주의공화국 정부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공여에 관한 약정	39,748,000,000 KRW	1996년 05월 06일	불요	1996년 05월 06일	고시 287

연번	채결대상 국가	국문	차관금액 (\$)	서명일/각서 교환일	구회 등의	발효일	조약 번호
307	중국	대한민국정부와중화인민공화국정부간의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공여에관한교환각서	56,914,000,000 KRW	1996년 03월 15일 / 1996년 03월 15일	불요	1996년 03월 15일	고시 285
308	스리랑카	대한민국 정부와 스리랑카민주사회주의공화국 정부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협정	없음	1995년 12월 27일	불요	1995년 12월 27일	조약 1326
309	헝가리	대한민국 정부와 헝가리공화국 정부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협정	19,205,000,000 KRW	1995년 12월 14일	불요	1995년 12월 14일	조약 1316
310	중국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협정	없음	1995년 11월 14일	불요	1995년 11월 14일	조약 1312
311	베트남	대한민국 정부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38,240,000,000 KRW	1995년 10월 09일	불요	1995년 10월 09일	고시 278
312	가나	대한민국 정부와 가나공화국 정부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공여에 관한 교환각서	6,400,000,000 KRW	1995년 10월 04일 / 1995년 10월 04일	불요	1995년 10월 04일	조약 1309
313	인도네시아	대한민국 정부와 인도네시아공화국 정부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공여에 관한 교환각서	8,110,000,000 KRW	1995년 07월 05일	불요	1995년 07월 05일	조약 1296
314	필리핀	대한민국 정부와 필리핀공화국 정부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공여에 관한 교환각서	28,216,000,000 KRW	1995년 05월 12일 / 1995년 05월 12일	불요	1995년 05월 12일	조약 1288
315	베트남	대한민국 정부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협정	없음	1995년 04월 12일	불요	1995년 04월 12일	조약 1284
316	중국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공여에 관한 교환각서	34,508,000,000 KRW	1994년 12월 13일 / 1994년 12월 13일	불요	1994년 12월 13일	조약 1261

연번	채결대상 국가	국문	차관금액 (\$)	서명일/각서 교환일	국회 동의	발효일	조약 번호
317	미얀마	대한민국 정부와 미얀마연방 정부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공여에 관한 교환각서	13,587,000,000 KRW	1994년 12월 13일 / 1994년 12월 13일	불요	1994년 12월 13일	조약 1262
318	파푸아 뉴기니	대한민국 정부와 파푸아뉴기니 정부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공여에 관한 교환각서	9,080,000,000 KRW	1994년 10월 12일 / 1994년 11월 07일	불요	1994년 11월 07일	조약 1256
319	루마니아	대한민국 정부와 루마니아 정부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공여에 관한 교환각서	39,468,000,000 KRW	1993년 12월 07일 / 1993년 12월 07일	불요	1993년 12월 07일	조약 1205
320	방글라데시	대한민국 정부와 방글라데시 인민공화국 정부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공여에 관한 교환각서	11,072,000,000 KRW	1993년 11월 27일 / 1993년 11월 27일	불요	1993년 11월 27일	조약 1202
321	몽골	대한민국 정부와 몽골 정부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공여에 관한 교환각서	4,123,000,000 KRW	1993년 07월 09일 / 1993년 07월 09일	불요	1993년 07월 09일	조약 1183
322	터키	대한민국 정부와 터키공화국 정부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공여에 관한 교환각서	11,600,000,000 KRW	1993년 05월 25일 / 1993년 05월 25일	불요	1993년 05월 25일	조약 1176
323	케냐	대한민국 정부와 케냐공화국 정부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공여에 관한 교환각서	10,994,000,000 KRW	1993년 04월 30일 / 1993년 04월 30일	불요	1993년 04월 30일	조약 1171
324	미얀마	대한민국 정부와 미얀마연방 정부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공여에 관한 교환각서	5,726,000,000 KRW	1993년 02월 15일 / 1993년 02월 15일	불요	1993년 02월 15일	조약 1164

연번	채결대상 국가	국문	차관금액 (\$)	서명일/각서 교환일	구회 등의	발효일	조약 번호
325	폴란드	대한민국 정부와 폴란드공화국 정부간의 대폴란드공화국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공여에 관한 교환각서	없음	1993년 02월 11일 / 1993년 02월 11일	불요	1993년 02월 11일	조약 1163
326	파키스탄	대한민국 정부와 파키스탄회교공화국 정부간의 대파키스탄회교공화국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공여에 관한 교환각서	7,189,000,000 KRW	1993년 02월 04일 / 1993년 02월 04일	불요	1993년 02월 04일	조약 1162
327	나이지리아	대한민국 정부와 나이지리아연방공화국 정부간의 대나이지리아연방공화국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공여에 관한 교환각서	10,930,000,000 KRW	1992년 09월 15일 / 1992년 09월 15일	불요	1992년 09월 15일	조약 1102
328	요르단	대한민국 정부와 요르단하쉬미트왕국 정부간의 대요르단하쉬미트왕국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공여에 관한 각서교환	7,235,000,000 KRW	1992년 06월 07일	불요	1992년 06월 07일	조약 1095
329	우간다	대한민국 정부와 우간다공화국 정부간의 대우간다공화국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공여에 관한 각서교환	5,406,000,000 KRW	1992년 01월 03일 / 1992년 01월 03일	불요	1992년 01월 03일	조약 1076
330	인도네시아	대한민국 정부와 인도네시아공화국 정부간의 대인도네시아공화국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공여에 관한 각서교환	18,181,000,000 KRW	1991년 12월 30일 / 1991년 12월 30일	불요	1991년 12월 30일	조약 1075
331	스리랑카	대한민국 정부와 스리랑카민주사회주의공화국 정부간의 대스리랑카 민주사회주의공화국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공여에 관한 각서교환	18,181,000,000 KRW	1991년 08월 02일 / 1991년 02월 08일	불요	1991년 02월 08일	조약 1039
332	필리핀	대한민국 정부와 필리핀공화국 정부간의 대필리핀공화국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공여에 관한 각서교환	10,370,000,000 KRW	1991년 01월 30일	불요	1991년 01월 30일	조약 1028

연번	체결대상 국가	국문	차관금액 (\$)	서명일/각서 교환일	국회 동의	발효일	조약 번호
333	가나	대한민국 정부와 가나공화국 정부간의 대가나공화국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공여에 관한 각서교환	8,997,000,000 KRW	1991년 01월 29일 / 1991년 01월 29일	불요	1991년 01월 29일	조약 1029
334	일본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간의 제7차 일본 '해외경제협력기금(OECF)' 차관에 관한 교환각서	99,590,000,000 JPY	1990년 09월 11일 / 1990년 09월 11일	완료 1989년 12월 16일제147회 국회 (정기회) 제16차 본회의	1990년 09월 11일	조약 1016
335	피지	대한민국 정부와 휘지공화국 정부간의 대휘지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공여에 관한 각서교환	4,195,000,000 KRW	1990년 05월 01일 / 1990년 05월 01일	불요	1990년 05월 01일	조약 1001
336	일본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간 제6차 일본해외경제협력기금(OECF) 차관에 관한 교환각서	7,634,000,000 JPY	1989년 06월 16일 / 1989년 06월 16일	불요	1989년 06월 16일	조약 979
337	나이지리아	대한민국 정부와 나이제리아공화국 정부간의 대나이제리아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공여에 관한 각서교환	8,051,000,000 KRW	1988년 12월 09일	불요	1988년 12월 09일	조약 965
338	인도네시아	대한민국 정부와 인도네시아공화국 정부간의 대인도네시아대 외경제협력기금차관공여에관한각서교환	10,466,000,000 KRW	1988년 11월 10일	불요	1988년 11월 10일	조약 963
339	일본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간 제5차 일본해외경제협력기금(OECF) 차관에 관한 교환각서	27,262,000,000 JPY	1988년 04월 15일	완료 1986년 12월 17일제131회 국회 (정기회) 제20차 본회의	1988년 04월 15일	조약 949

연번	채결대상 국가	국문	차관금액 (\$)	서명일/각서 교환일	국회 등의	발효일	조약 번호
340	일본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간의 85년도분 일본차관에 관한 교환각서	44,633,000,000 JPY	1987년 03월 28일 / 1987년 03월 28일	불요 1985년 12월 17일제131회 국회(정기회) 제20차 본회의	1987년 03월 28일	조약 918
341	일본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간의 ' 84년도 엔차관 도입에 관한 교환각서	54,400,000,000 JPY	1985년 09월 18일 / 1985년 09월 18일	완료 1984년 12월 14일	1985년 09월 18일	조약 869
342	일본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간의 ' 83년도 엔차관 도입에 관한 각서교환	49,500,000,000 JPY	1984년 06월 25일 / 1984년 06월 25일	완료 1984년 03월 16일제121회 국회(임시회) 제9차 본회의	1984년 06월 25일	조약 844
343	일본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간의 ' 82년도 엔차관 도입에 관한 각서교환	45,100,000,000 JPY	1983년 10월 07일 / 1983년 10월 07일	완료 1983년 09월 28일제119회 국회(정기회) 제4차 본회의	1983년 10월 07일	조약 819
344	일본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간의 민간지역 병원 의료장비보강 및 교육시설 확충 사업을 위한 차관에 관한 각서교환	19,000,000,000 JPY	1981년 01월 31일 / 1981년 01월 31일	완료 1980년 12월 16일제103회 국회(임시회) 제10차 본회의	1981년 01월 31일	조약 735

연번	채결대상 국가	국문	차관금액 (\$)	서명일/각서 교환일	국회 동의	발효일	조약 번호
345	일본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간의 교육시설 확충, 국립의료 및 보건연구기관 장비현대화 및 도시하수처리시설 사업을 위한 차관에 관한 각서교환	19,000,000,000 JPY	1980년 01월 18일 / 1980년 01월 18일	완료 1979년 12월 01일제103회 국회(임시회) 제9차 본회의	1980년 01월 18일	조약 698
346	일본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간의 농촌개발 사업 및 대청매 건설사업을 위한 차관협정에 따른 차관의 인출 마감일 연장을 위한 각서교환	없음	1979년 12월 27일 / 1979년 12월 27일	불요	1979년 12월 27일	고시 53
347	일본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간의 농업개발 및 의료시설 확장을 위한 차관에 관한 각서교환	140,000,000,000 JPY	1978년 12월 20일 / 1978년 12월 20일	완료 1978년 11월 14일제100회 국회(임시회) 제13차 본회의	1978년 12월 20일	조약 664
348	일본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간의 농업개발·초고암 송전시설 및 총주댐 건설을 위한 차관에 관한 각서교환	60,000,000,000 JPY	1977년 08월 31일 / 1977년 08월 31일	완료 1976년 12월 16일제96회 국회(정기회) 제17차 본회의	1977년 08월 31일	조약 603
349	일본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간의 농업개발 사업을 위한 차관에 관한 각서교환	126,000,000,000 JPY	1977년 02월 10일 / 1977년 02월 10일	완료 1976년 03월 23일제95회 국회(임시회) 제6차 본회의	1977년 02월 10일	조약 588

연번	채결대상 국가	국문	차관금액 (\$)	서명일/각서 교환일	국회 등의	발효일	조약 번호
350	일본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간의 통신시설 확장 및 중복선 복선화 사업에 관한 차관에 관한 각서교환	66,000,000,000 JPY	1976년 11월 13일 / 1976년 11월 13일	완료 1974년 12월 01일제90회 국회(정기회) 제15차 본회의	1976년 11월 13일	조약 584
351	일본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간의 북평항의 개발 및 농업생산증진 차관에 관한 각서교환	12,420,000,000 JPY	1975년 08월 29일 / 1975년 08월 29일	완료 1974년 12월 01일제90회 국회(정기회)제15차 본회의	1975년 08월 29일	조약 544
352	일본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간의 농촌개발사업 및 대청댐 건설사업을 위한 차관에 관한 각서교환	31,320,000,000 JPY	1974년 10월 25일 / 1974년 10월 25일	불요	1974년 10월 25일	조약 517
353	일본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간의 농수산 개발을 위한 2천만불 엔 차관 협정의 개정 협정 (각서교환)	없음	1974년 02월 16일 / 1974년 02월 16일	불요	1974년 02월 16일	조약 493
354	일본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간의 216억 ' ' 엔 ' ' 제2차 상품차관 및 수출산업육성 차관에 관한 각서교환	154,000,000,000 JPY	1973년 12월 24일 / 1973년 12월 24일	완료 1972년 07월 31일제82회 국회(임시회) 제17차 본회의	1973년 12월 24일	조약 488
355	일본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간의 농수산 개발을 위한 2천만불 ' 엔 ' 차관협정 (1971)의 개정 협정 (교환각서)	없음	1973년 02월 16일 / 1973년 02월 16일	불요	1973년 02월 16일	조약 472

연번	채결대상 국가	국문	차관금액 (\$)	서명일/각서 교환일	국회 동의	발효일	조약 번호
356	일본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간의 통신시설 확장을 위한 차관에 관한 각서교환	62,000,000,000 JPY	1973년 01월 24일 / 1973년 01월 24일	완료 1973년 01월 29일제5회 비상국무회의	1973년 01월 29일	조약 468
357	아시아 개발은행	대한민국 정부와 ADB간의 차관협정(상수도 취수장 이설을 위한)	25,600,000	1972년 12월 28일	완료 1972년 12월 29일제12회 비상국무회의	1973년 01월 27일	조약 465
358	국제부흥 개발은행	대한민국 정부와 IBRD간의 차관협정(철도시설 확장을 위한)	없음	1972년 11월 22일	완료 1972년 12월 29일제12회 비상국무회의	1973년 01월 27일	조약 464
359	아시아 개발은행	대한민국 정부와 ADB간의 차관 협정(수산 개발 사업을 위한)	13,300,000	1972년 10월 10일	완료 1972년 12월 29일제12회 비상국무회의	1973년 01월 27일	조약 466
360	국제개발 협회	대한민국 정부와 IDA간의 차관협정(농업육성 사업을 위한)	10,500,000	1972년 09월 29일	완료 1972년 11월 24일제5회 비상국무회의	1972년 12월 29일	조약 452
361	아시아 개발은행	대한민국 정부와 ADB간의 차관협정(민간 기업 육성을 위한)	20,000,000	1972년 12월 15일	완료 1972년 11월 24일제5회 비상국무회의	1972년 12월 29일	조약 453

연번	채결대상 국가	국문	차관금액 (\$)	서명일/각서 교환일	국회 등의 등기	발효일	조약 번호
362	국제개발처	대한민국 정부와 AID간의 차관협정(교육개발을 위한)	2,500,000	1972년 09월 13일	완료 1972년 07월 31일제82회 국회 제17차 본회의	1972년 09월 13일	조약 451
363	미국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현미도입을 위한) AID개발차관협정(No. 489-H-084)	1,700,000	1972년 03월 16일	완료 1972년 07월 31일제82회 국회 제17차 본회의	1972년 08월 05일	조약 436
364	미국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의) 타당성 조사를 위한 AID 차관협정	200,000,000	1972년 01월 20일	완료 1972년 07월 31일제82회 국회 제17차 본회의	1972년 08월 05일	조약 435
365	국제개발 협회	영산강 개발을 위한 IDA 융자협정 및 IBRD 차관 보증협정	33,000,000	1972년 02월 02일	완료 1972년 07월 31일제82회 국회 제17차 본회의	1972년 08월 05일	조약 434
366	아시아 개발은행	[대한민국과 아시아개발은행(ADB)간의] 안동댐의 다목적 개발을 위한 ADB차관협정	22,000,000	1971년 12월 29일	완료 1972년 07월 31일제82회 국회 제17차 본회의	1972년 08월 05일	조약 438

연번	채결대상 국가	국문	차관금액 (\$)	서명일/각서 교환일	국회 동의	발효일	조약 번호
367	미국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AID 개발차관협정(No. 489-H-086)	5,000,000	1972년 06월 27일	완료 1972년 07월 31일제82회 국회 제17차 본회의	1972년 08월 05일	조약 437
368	아시아 개발은행	(대한민국과 아시아개발은행간의) 부산 및 대구시 상수도 확장을 위한 ADB 차관협정	5,700,000	1972년 07월 10일	완료 1972년 07월 31일제82회 국회 제17차 본회의	1972년 08월 05일	조약 440
369	일본	한-일본 엔 차관협정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간의 산업원자재 및 기계장비 도입을 위한 차관에 관한 각서교환)	15,400,000,000 JPY	1972년 07월 01일 / 1972년 07월 01일	완료 1972년 07월 31일제82회 국회 제17차 본회의	1972년 08월 05일	조약 441
370	아시아 개발은행	(대한민국과 아시아개발은행간의) 공공직업 훈련시설을 위한 ADB 차관협정	3,700,000	1972년 05월 19일	완료 1972년 07월 31일제82회 국회 제17차 본회의	1972년 08월 05일	조약 439
371	아시아 개발은행	대한민국과 아세아개발은행간의 민간기업 육성을 위한 차관보증협정	15,000,000	1971년 09월 03일	완료 1971년 12월 21일제78회 국회 제34차 본회의	1971년 12월 30일	조약 406

연번	채결대상 국가	국문	차관금액 (\$)	서명일/각서 교환일	국회 등의 동의	발효일	조약 번호
372	일본	서울지하철 및 수도권 전철화사업을 위한 차관에 대한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간의 각서교환	27,240,000,000 JPY	1971년 12월 30일 / 1971년 12월 30일	불요	1971년 12월 30일	조약 408
373	아시아개발 은행	대한민국과 아세아개발은행간의 농어촌 전회용 시설 도입을 위한 차관 보증협정	10,600,000	1971년 09월 03일	완료 1971년 12월 21일제78회 국회 제34차 본회의	1971년 12월 30일	조약 407
374	미국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의 한국과학원 설립에 관한 차관(AID차관) 협정	없음	1971년 08월 31일	완료 1971년 12월 03일제78회 국회 제29차 본회의	1971년 12월 27일	조약 405
375	미국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의 농업개발을 위한 차관(AID차관) 협정	14,000,000	1971년 06월 24일	완료 1971년 12월 03일제78회 국회 제29차 본회의	1971년 12월 27일	조약 404
376	아시아개발 은행	서울시 상수도 확장을 위한 대한민국 정부와 아세아개발은행간의 차관협정	8,800,000	1971년 04월 02일	완료 1971년 10월 28일제78회 국회 제25차 본회의	1971년 11월 10일	조약 402

연번	채결대상 국가	국문	차관금액 (\$)	서명일/각서 교환일	국회 동의	발효일	조약 번호
377	국제부흥 개발은행	고속도로 건설을 위한 대한민국과 국제부흥개발은행간의 차관협정	3,500,000	1971년 06월 29일	완료 1971년 10월 28일제78회 국회 제25차 본회의	1971년 11월 10일	조약 401
378	일본	수출산업 진흥 및 증소기업은행과 일본 수출입 은행간의 차관 계약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간의 각서교환	10,800,000,000 JPY	1971년 06월 29일 / 1971년 06월 29일	불요	1971년 06월 29일	조약 390
379	국제부흥 개발은행	민간기업 육성을 위한 대한민국과 IBRD간의 차관보증협정	30,000,000	1971년 05월 17일	완료 1970년 12월 22일제75회 국회(정기회) 제20차 본회의	1971년 05월 17일	조약 388
380	미국	현미도입을 위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차관 협정	35,000,000	1971년 03월 16일	완료 1970년 12월 23일제75회 국회(정기회) 제21차 본회의	1971년 03월 16일	조약 372
381	일본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간의 농수산업 개발을 위한 차관계약에 관한 협정	7,200,000,000 KRW	1971년 02월 18일	완료 1970년 12월 22일제75회 국회(정기회) 제20차 본회의	1971년 02월 18일	조약 368

연번	채결대상 국가	국문	차관금액 (\$)	서명일/각서 교환일	국회 등의	발효일	조약 번호
382	아시아개발 은행	카프롤라탐 공장건설을 위한 대한민국과 아시아개발은행간의 차관보증협정	25,000,000	1971년 01월 07일	완료 1970년 12월 22일제75회 국회(정기회) 제20차 본회의	1971년 02월 06일	조약 367
383	아시아개발 은행	민간생산기업 육성을 위한 대한민국과 아시아개발은행간의 차관보증협정	없음	1970년 11월 23일	완료 1970년 12월 22일제75회 국회(정기회) 제20차 본회의	1971년 01월 19일	조약 364
384	아시아개발 은행	송배전 시설 도입을 위한 대한민국과 아세아 개발은행간의 차관 보증협정	9,500,000	1970년 11월 23일	완료 1970년 12월 22일제75회 국회(정기회) 제20차 본회의	1971년 01월 13일	조약 363
385	아시아개발 은행	안동 다목적 댐 건설 기술 조사를 위한 대한민국과 아시아개발은행간의 차관협정	150,000	1970년 10월 26일	완료 1970년 12월 22일제75회 국회(정기회) 제20차 본회의	1971년 01월 13일	조약 362
386	아시아개발 은행	수송 및 하역장비도입을 위한 대한민국과 아세아 개발은행간의 차관 지불보증 협정	7,500,000	1969년 09월 17일	완료 1969년 12월 23일제72회	1970년 12월 18일	조약 359

연번	채결대상 국가	국문	차관금액 (\$)	서명일/각서 교환일	국회 동의	발효일	조약 번호
387	국제부흥개발은행	대한민국과 국제부흥개발은행간의 차관협정	15,000,000	1970년 05월 14일	완료 1970년 07월 16일 제74회 국회(임시회) 제7차	1970년 08월 04일	조약 348
388	미국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차관협정	10,000,000	1970년 06월 03일	완료 1970년 07월 16일 제74회 국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	1970년 08월 04일	조약 350
389	아시아개발은행	(대한민국과 아시아개발은행간의)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ADB차관 보증협정	10,000,000	1969년 12월 19일	완료 1969년 12월 23일 제72회 국회 제18차 본회의	1969년 12월 19일	조약 324
390	덴마크	한. 덴마크 간의 개발차관협정	20,000,000 DKK	1969년 12월 04일	완료 1969년 04월 28일 제67회 국회 제13차 본회의	1969년 12월 04일	조약 326
391	미국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A.N.Monomer 공장 건설을 위한 AID 차관협정	5,000,000	1969년 10월 20일	완료 1969년 07월 10일 제70회 국회 제18차 본회의	1969년 10월 20일	조약 316

연번	채결대상 국가	국문	차관금액 (\$)	서명일/각서 교환일	국회 등의	발효일	조약 번호
392	미국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Ammonia Center 건설을 위한 AID 차관협정	5,000,000	1969년 09월 25일	완료 1969년 07월 10일 제70회 국회(임시회) 제18차 본회의	1969년 09월 25일	조약 315
393	국제부흥개발은행	전천후 농업용수개발 차관을 위한 대한민국과 IBRD간의 보증협정 (평택-금강지구 수리사업)	45,000,000	1969년 05월 23일	완료 1969년 04월 29일 제69회 국회(임시회) 제14차 본회의	1969년 08월 21일	조약 301
394	미국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수출입은행간의 마이크로 웨이브 통신시설 확장을 위한 동은행 차관협정	2,900,000	1969년 07월 18일	완료 1968년 05월 01일 제65회 제12차 본회의	1969년 08월 12일	조약 306
395	아시아개발은행	대한민국과 아세아개발은행간의 냉동냉장 시설을 위한 ADB 차관지불 보증협정	7,000,000	1969년 03월 22일	완료 1969년 07월 10일 제70회 제18차 본회의	1969년 08월 01일	조약 305
396	국제부흥개발은행	대한민국과 국제부흥개발은행간의 제2차 개발금융회사 사업계획을 위한 IBRD 차관지불보증협정	20,000,000	1969년 06월 26일	완료 1969년 07월 10일 제70회 제18차 본회의	1969년 08월 01일	조약 304
397	미국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한국과학기술연구소 시설도입을 위한 AID차관 협정	2,000,000	1968년 11월 07일	완료 1968년 07월 01일 제66회 국회(임시회) 제10회 본회의	1968년 11월 07일	조약 289

연번	채결대상 국가	국문	차관금액 (\$)	서명일/각서 교환일	국회 동의	발효일	조약 번호
398	아시아개발은행	(대한민국과 아시아개발은행간의) 경인고속도로의 건설을 위한 ADB차관 협정	6,800,000	1968년 09월 16일	원료 1968년 07월 01일제66회 국회(임시회) 제10회 본회의	1968년 10월 08일	조약 286
399	미국	위성통신지구국 건설을 위한 대한민국과 미국수출입은행간의 차관협정	4,620,000	1968년 07월 25일	불요	1968년 07월 25일	조약 282
400	국제개발협회	(대한민국과 국제개발협회간의) 고속도로 타당성 및 기술조사를 위한 IDA차관협정	3,500,000	1968년 07월 24일	원료 1968년 07월 01일제66회 국회(임시회) 제10차 본회의	1968년 07월 24일	조약 281
401	미국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AID차관 협정	15,000,000	1968년 06월 26일	원료 1967년 10월 07일제62회 국회(정기회) 제7차 본회의	1968년 07월 15일	조약 277
402	독일	대한민국을 대표한 채신부와 독일연방공화국 재건은행간의 1967년 9월 14일 차관협정	18,000,000 DM	1967년 09월 14일	원료 1968년 02월 26일제63회 국회(임시회) 제15차 본회의	1968년 03월 20일	조약 269

연번	채결대상 국가	국문	차관금액 (\$)	서명일/각서 교환일	국회 등의	발효일	조약 번호
403	미국	대한민국, 한국개발금융주식회사 및 미합중국 간의 차관협정	5,000,000	1968년 01월 31일	완료 1967년 10월 17일 제62회 국회(정기회) 제7차 본회의	1968년 01월 31일	조약 266
404	캐나다	대한민국 정부와 캐나다 정부간의 낙농차관에 관한 협정	1,000,000 CAD	1967년 09월 15일	완료 1967년 03월 08일 제60회 국회(임시회) 제17차 본회의	1967년 10월 04일	조약 258
405	미국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인천시 상수도 확장을 위한 AID차관 협정	3,000,000	1967년 06월 30일	완료 1965년 03월 26일 제48회 국회(임시회) 제18차 본회의	1967년 06월 30일	조약 253
406	미국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영남화전 제1호건설을 위한 AID차관 협정	17,500,000	1967년 06월 29일	완료 1966년 11월 25일 제58회 국회(정기회) 제18차 본회의	1967년 06월 29일	조약 251
407	미국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제2차 송배선 시설을 위한 AID차관 협정	12,700,000	1967년 06월 17일	완료 1966년 11월 25일 제58회 국회(정기회) 제19차 본회의	1967년 06월 17일	조약 250

연번	채결대상 국가	국문	차관금액 (\$)	서명일/각서 교환일	국회 동의	발효일	조약 번호
408	미국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미합중국)간의 중기업육성을 위한 AID차관협정	없음	1966년 11월 09일	완료 1965년 03월 26일제48회 국회(임시회) 제18차	1966년 11월 09일	조약 225
409	미국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AID차관 협정	5,000,000	1966년 08월 11일	완료 1965년 03월 26일제48회 국회(임시회) 제18차 본회의	1966년 08월 11일	조약 214
410	미국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의) 제2차 AID 원자재 차관협정	15,000,000	1966년 07월 30일	완료 1966년 07월 14일제57회 국회(임시회) 제24차 본회의	1966년 07월 30일	조약 210
411	미국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서울시 청계천 하수처리장 건설을 위한 AID차관 협정	35,000,000	1966년 07월 13일	완료 1996년 04월 09일제56회 국회(임시회) 제6차 본회의	1966년 07월 13일	조약 208
412	미국	대한민국 한국 나이론 주식회사와 아메리카합중국(미합중국)간의 나이론 공장 확장(한국)을 위한 차관협정	5,810,000	1966년 06월 15일	완료 1965년 03월 26일제48회 국회(임시회) 제18차 본회의	1966년 07월 09일	조약 205

연번	채결대상 국가	국문	차관금액 (\$)	서명일/각서 교환일	국회 등의 완료	발효일	조약 번호
413	미국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디젤 기관차, 크레인차 및 기관차 수리기구도입을 위한 AID 차관협정	18,600,000	1966년 06월 29일	완료 1965년 03월 26일제48회 국회(임시회) 제18차 본회의	1966년 06월 29일	조약 207
414	미국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항공시설 개선을 위한 AID 차관협정	4,200,000	1966년 06월 22일	완료 1966년 04월 09일제56회 국회(임시회) 제6차 본회의	1966년 06월 22일	조약 206
415	미국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서울특별시 상수도 건설을 위한 AID차관 협정	3,760,000	1966년 06월 02일	완료 1965년 03월 26일제48회 국회(임시회) 제18차 본회의	1966년 06월 02일	조약 204
416	미국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포리에스텔 섬유공장 건설을 위한 AID 차관협정	1,650,000	1966년 05월 14일	완료 1965년 03월 26일제48회 국회(임시회) 제18차 본회의	1966년 05월 14일	조약 202
417	미국	현대 씨멘트공장 확장을 위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AID차관 협정	3,000,000	1966년 04월 13일	완료 1965년 06월 10일제50회 국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	1966년 04월 13일	조약 195

연번	체결대상 국가	국문	차관금액 (\$)	서명일/각서 교환일	국회 동의	발효일	조약 번호
418	미국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서울 화전건설을 위한 AID차관 협정	22,500,000	1966년 02월 05일	완료 1966년 04월 19일사후동의	1966년 02월 05일	조약 194
419	독일	중소기업육성을 위한 서독재건은행(KfW)과의 재정차관협정	20,000,000 DM	1966년 01월 24일	완료 1965년 03월 26일제48회 국회(임시회) 제18차 본회의	1966년 01월 24일	조약 191
420	독일	(대한민국과) 서독 KfW와의 부산시 상수도 확장사업을 위한 재정차관 협정	15,000,000 DM	1966년 01월 24일	완료 1965년 03월 26일임시국회(제18차)	1966년 01월 24일	조약 188
421	일본	대한민국과 일본국 해외경제협력기금간의 차관계약의 중재규칙에 관한 협정	없음	1965년 12월 18일	불요	1965년 12월 18일	조약 189
422	미국	대한민국 정부와 아메리카합중국(미합중국)간의 AID 원자재 차관협정	10,000,000	1965년 12월 14일	완료 1965년 09월 14일제53회 국회 제4차 본회의	1965년 12월 14일	조약 186
423	독일	대한민국과 서독 KfW와의 통신문 확장사업을 위한 재정차관협정	54,000,000 DM	1965년 11월 04일	완료 1965년 03월 26일제48회 국회(임시회) 제18차 본회의	1965년 11월 04일	조약 160

연번	채결대상 국가	국문	차관금액 (\$)	서명일/각서 교환일	국회 등의	발효일	조약 번호
424	독일	MRO 자체도입을 위한 (대한민국과) 서독 KFW와의 제정차관협정	15,000,000 DM	1965년 09월 17일	완료 1965년 03월 26일 제48회 국회(임시회) 제18차 본회의	1965년 09월 17일	조약 158
425	미국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미합중국) 간에 체결된 타당성 조사를 위한 AID 차관협정	2,000,000	1965년 09월 09일	완료 1965년 09월 14일 사후동의 제53회 국회(정기회) 제4차 본회의	1965년 09월 09일	조약 155
426	미국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미합중국) 간의 제3 및 제4비료공장 건설을 위한 AID 차관협정	24,200,000	1965년 06월 24일	완료 1965년 01월 30일 제47회 국회(임시회) 제11차 본회의	1965년 06월 24일	조약 152
427	미국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의 스-다회공장 건설을 위한 AID 차관 수정협정	없음	1965년 06월 03일	완료 1963년 12월 10일(최고회의) 제10회 제138차	1965년 06월 03일	조약 150
428	미국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의 제2차 디젤(디젤)기관차 도입을 위한 차관 협정	11,000,000	1965년 03월 12일	완료 1963년 12월 10일(최고회의)	1965년 03월 12일	조약 143

연번	채결대상 국가	국문	차관금액 (\$)	서명일/각서 교환일	국회 동의	발효일	조약 번호
429	미국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송배신 시설에 관한 AID차관 협정(1차)	7,750,000	1964년 12월 14일	완료 1963년 12월 10일(최고회의) 제10회 제138차	1964년 12월 14일	조약 137
430	미국	대한민국, 대한민국 채신부 및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통신망 확장 및 개선에 관한 차관협정	8,400,000	1964년 12월 08일	완료 1963년 12월 10일(최고회의) 제10회 제138차	1964년 12월 08일	조약 135
431	미국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대구시 상수도 시설확장에 관한 차관협정	2,400,000	1964년 11월 27일	완료 1963년 12월 10일(최고회의) 제10회 제138차	1964년 11월 27일	조약 136
432	영국	한국과 영국간의 1964년 차관협정	500,000 GBP	1964년 08월 04일	불요	1964년 08월 04일	조약 130
433	미국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의 군산화전 건설을 위한 AID 차관협정	12,800,000	1964년 03월 09일	완료 1963년 12월 11일(1963.12.10) (최고회의) 제10회 제138차	1964년 03월 09일	조약 122
434	미국	대한민국 정부 및 대한석탄공사와 미합중국간의 장성탄광개발을 위한 차관협정	9,500,000	1963년 12월 07일	완료 1963년 12월 10일(최고회의) 제10회 제138차	1963년 12월 07일	조약 140
435	미국	한국산업은행 대한민국 정부 및 아메리카합중국(미합중국) 정부기관인 개발차관기금간의 차관협정	5,000,000	1960년 04월 12일	완료 1960년 01월 19일제33회 제34차	1960년 04월 12일	조약 60

연번	채결대상 국가	국문	차관금액 (\$)	서명일/각서 교환일	구회 등의	발효일	조약 번호
436	미국	대한민국 한국건설력과 미합중국 DLF간의 총주수력발전소 설계를 위한 DLF 차관협정	1,500,000	1959년 05월 26일	완료 1960년 01월 19일사후동의 제33회 제34차	1959년 05월 26일	조약 54
437	미국	대한민국정부와 미합중국간 정부기관인 개발자관기금과의 차관협정	3,500,000	1959년 04월 08일	완료 1959년 12월 09일사후동의 제33회 제18차	1959년 04월 08일	조약 53

현안분석 19-02

국제협정 체결·비준시 국회 동의 대상 및
기준에 대한 연구
- 관세·무역협정 위주로 -

2019년 11월 13일 인쇄
2019년 11월 15일 발행

발행인 | 김계홍

발행처 | 한국법제연구원
세종특별자치시 국책연구원로 15
(반곡동, 한국법제연구원)
전화 : (044)861-0300

등록번호 | 1981.8.11. 제2014-000009호

홈페이지 | <http://www.klri.re.kr>

값 8,000원

1. 본원의 승인없이 전재 또는 역재를 금함. ©
2. 이 보고서의 내용은 본원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

ISBN : 978-89-6684-973-4 93360

정명운(책임)

학 력

일본 메이조(名城)대학교 법학박사
(현) 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연구실적 및 논문

신성장분야 규제법제개선연구(I)
신성장분야 규제법제개선연구(II)
민자고속도로 공공성 강화를 위한 법제
연구
통합채산제평가를 통한 현 요금제도
개선방안연구(I·II)

조소영(공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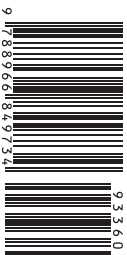
학 력

연세대학교 법학박사
(현)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연구실적 및 논문

기본권 규범구조에서의 '인간의 존엄성'의
지위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 실현 가능한가
-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과 그 실현을
위한 법적 과제-
기업의 정치자금기부 규제에 관한 헌법적
검토
한-EU FTA에 대한 헌법적 고찰과 담론
한미 FTA에 대한 헌법적 쟁점의 검토

KLRI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원 8,000

ISBN 978-89-6684-973-4 93360